



발 간 사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7년 설립 이후 퇴직공제사업, 복지지원, 건설기능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공제회는 가입 건설근로자 625만 명, 운용자산 3조 7천억에 이르는 고용·복지 전담기관으로서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 라는 비전을 실현시키기위해 건설근로자의 친근한 벗이자 꿈과 희망을 전하는 전령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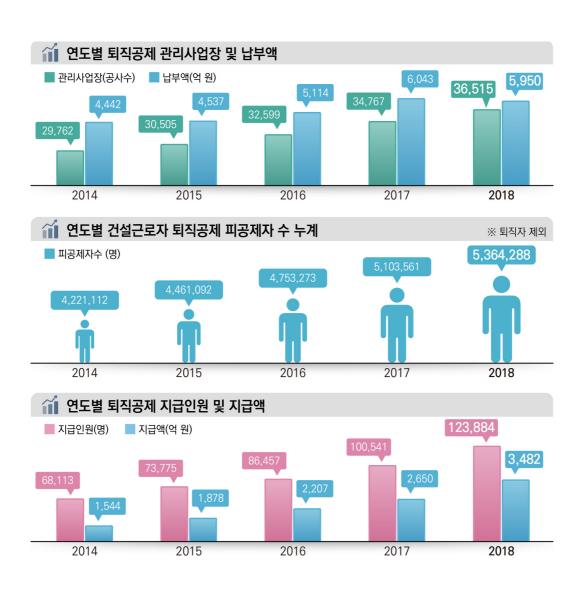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는 건설근로자 DB 허브기관으로서 공제회가 2013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는 상세자료로 공제회의 설립목적 및 기능, 퇴직공제사업, 복지지원사업, 고용지원사업 등의 주요사업과 자산운용 현황, 그리고 건설경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건설근로자 동향, 공제부금 납부 및 지급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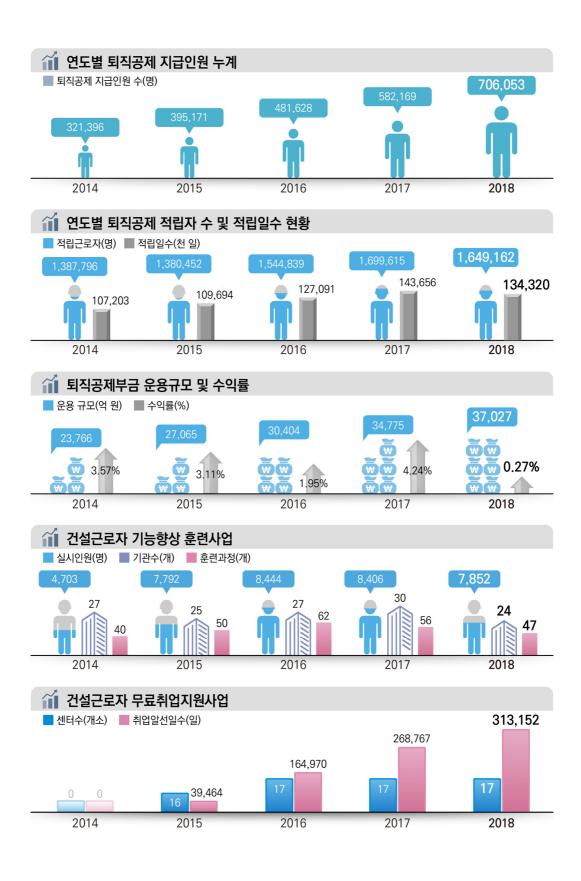
이번에 발간되는 『2018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에는 퇴직공제제도 시행초기부터 2018년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20년간의 건설근로자 현황과관련된 통계자료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18년도 주요사업 실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계정보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포틸(data.go.kr)과 함께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하는 종합고용·복지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연보』가 퇴직공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발굴과 정책수립에 유익한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6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송인회

공제회 사업 주요 통계 현황(최근 5년간)





건설근로자 복지지원사업

생활안정 대부사업	22,771명 360억원	고용이 불안정하여 시중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액의 50% 범위 내에서 주택자금, 학자금, 입원·수술비 등 긴급 필요자금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단체보험 가입	37,013명 46억원	건설현장,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 등에 대한 다양한 보장
종합 건강검진	1,902명 3.1억원	열악한 외부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
자녀 장학지원금	2,074명 17.3억원	생활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해 장학지원금 지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486명 28백만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 자녀가 재학 중 마음 편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 지원
결혼 · 출산 지원금	4,851명 14억원	청년 건설근로자의 결혼 ·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가족 힐링캠프	711명 4.3억원	건설업에 공적이 있거나 감동있는 사연을 통해 선정된 건설근로자 가족을 격려하고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개최	9회 (165점 시상)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매년 사진공모전 개최 및 수상작 전시
종합지원 이동 상담버스 운영	▶ 116,816명	건설현장 및 새벽인력시장을 직접 찾아가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및 축소신고 접수, 고용·복지사업 안내 등 상담서비스
건설유공 근로자 정부포상 수여	9회 (305명 수상)	매년 11월 22일 건설기능인의 날(국토부 지정 기념일) 기념식에서 건설업 발전에 공적이 있는 근로자를 발굴ㆍ추천하여 훈장 등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ㆍ격려

PART O L	건설근로자공제회 개관	
	제1장 조직 및 기능	····· 22 ····· 23 ···· 24 ···· 25
PART 02	주요사업 현황	
제1부	· 퇴직공제사업	32
	제1장 사업 개요	32 33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34 34 39

	제3장 추	·진현황·	41
	1	. 퇴직공제 가입 현황	· 41
	2	. 공제부금 납부 및 근로일수 신고	. 42
		.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제2부	고용지원	<u>-</u> 사업	44
	제1장 기	 능향상훈련	44
	1	. 사업 개요	- 44
		. 주요 추진 사업	
		. 추진현황	
	제2장 무	·료취업지원	49
	1	. 사업 개요	. 49
	2	. 주요 추진 사업	. 49
		. 추진현황	
	제3장 괸	년 사업	52
		.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추진 및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운영 ···································	. 52
	2	. 건설고용지수 산정······	
제3부	복지지원	실사업	55
	제1장 시	업 개요	55
	제2장 주	- -요 추진 사업 및 추진현황	58
		. 생활안정 및 금융지원 ····································	
		. 건설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3. 건설근로자 자녀교육 지원	60
		4. 건설근로자 가족친화 지원	62
		5.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63
		6. 건설근로자 직업 이미지 개선	64
제4부	자산원	2용사업	67
	제1장	사업 개요	67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68
		1.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68
		2. 효율적인 자산운용	70
		3.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72
	제3장	추진현황	73
		1. 자산운용 현황	73
		2. 운용 규모 및 수익률	74
00			
03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통계	
	제1장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81
		1. 건설경기 동향	81
		2. 건설노동시장 동향	88

	제2장 퇴직공제사업 운영실적	91
	1. 개요 ·····	91
	2. 공제부금 적립일수	95
	3. 공제부금 납부	17
	4. 퇴직공제금 지급1	26
PART 04	부록	
	퇴직공제사업 세부 통계1	39

표 차례

〈표 1〉 주요 연혁	· 22
〈표 2〉 주요 기능	· 23
〈표 3〉 직급별 정원	· 25
〈표 4〉 2018년도 부금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 26
〈표 5〉 2018년도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 26
〈표 6〉 2018년도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 27
〈표 7〉 2018년도 외부수탁사업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 27
〈표 8〉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 32
〈표 9〉 전자인력관리 현황	. 36
〈표 10〉 전자카드 발급 및 계좌 현황	. 36
〈표 1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현황	· 41
〈표 12〉 공제부금 납부 및 근로일수 신고 현황	· 42
〈표 13〉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 42
〈표 14〉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 43
〈표 15〉고용노동부 위탁 훈련사업 추진 실적	· 46
〈표 16〉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직종별	· 47
〈표 17〉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과정별	· 47
〈표 18〉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연령별	· 48
〈표 19〉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성별	· 48
〈표 20〉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참여유형별	· 48
〈표 21〉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 51
〈표 22〉 최근 3개년 건설고용지수 점수별 업체분포 현황	. 54
〈표 23〉 최근 3개년 건설고용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감점 업체 현황	. 54

(丑 24	〉생활안정대부 지급현황	59
〈丑 25	S)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추진 현황 ······	60
〈丑 26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추진 현황	60
〈丑 27	'〉건설근로자 협성장학금 추진 현황 ······	··· 61
〈丑 28	?〉고등학생 자녀 무료 인터넷 수강 지원 추진 현황	··· 61
〈丑 29)〉 결혼·출산 지원금 지원 추진 현황	··· 62
(丑 30)〉가족 힐링캠프 추진 현황	63
〈丑 31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현황	··· 64
〈丑 32	?〉 노무·건강 등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실시 현황 ······	··· 64
〈丑 33	8〉건설기능인의 날"정부포상"수여 현황	··· 65
〈丑 34	〉사진공모전 추진 현황	66
(丑 35	s) 사진전시회 실시 현황······	66
〈丑 36	🖒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안 대비 이행 현황(2018.12 기준)	70
〈丑 37	'〉 공제부금 자산운용 현황	··· 74
(丑 38	8)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75
〈丑 39)〉특별회계 운용 규모 추이 ······	75
⟨丑 40)〉건설투자 추이	85
〈丑 41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최근 10년간	89
〈丑 42	·) 퇴직공제사업 운영 현황(1998~2018) ······	92
⟨丑 43	8〉연도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7~2018)	96
〈丑 44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98
〈丑 45	i)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99
〈丑 46	>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0
〈丑 47	〉 적립일수 규모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1
〈丑 48	3)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3
〈丑 49)) 월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	105

⟨丑	50>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일수10)6
⟨丑	51>	신규 가입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10)7
⟨丑	52>	신규 가입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10)8
⟨丑	53>	신규 가입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9
⟨丑	54>	신규 가입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11	1
⟨丑	55>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11	2
⟨丑	56>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11	3
⟨丑	57>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11	5
⟨丑	58>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11	6
⟨丑	59>	연도별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9~2018)11	8
⟨丑	60>	공사유형별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20
⟨丑	61>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12	21
⟨丑	62>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12	23
⟨丑	63>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12	<u>2</u> 4
⟨丑	64>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12	26
⟨丑	65>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18)12	27
⟨丑	66>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12	<u> 19</u>
⟨丑	67>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13	30
⟨丑	68>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13	}1
⟨丑	69>	적립일수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13	33
⟨丑	70>	지급액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35
⟨₩	71>	지급사유볔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13	36

그림 차례

〈그림	1> 3	조직도(2017. 1. 1 시행) : 3본부 1실 10팀, 6지사 9센터	24
〈그림	2> /	사업 개요	28
〈그림	3> -	To-Be 모델 : 전자카드로 근로자 근로내역 확인 및 실시간 출입관리 병행 …	37
〈그림	4>	To-Be 모델 :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정보보호 기술기준(안) ······	38
〈그림	5> 2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체계	45
〈그림	6> =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74
〈그림	7> =	국내 건설수주 중장기 추이	83
〈그림	8> 1	발주 부문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83
〈그림	9> =	국내 건설 세부 수주 중장기 추이 : 공공수주 공종별 추이	84
〈그림	10>	국내 건설 세부 수주 중장기 추이 : 민간수주 공종별 추이	84
〈그림	11>	건설투자와 건설기성 증감률 추이	86
〈그림	12>	건설수주 및 건설기성 순환 변동치	86
〈그림	13>	건설투자 순환 변동치 추이	87
〈그림	14>	건설경기 선행 및 동행 지표의 경기순환주기 중 현재 위치	87
〈그림	15>	건설투자 및 건설업취업자 추이	88
〈그림	16>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90
〈그림	17>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추이(1998~2018)	93
〈그림	18>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지 추이(1998~2018)	94
〈그림	19>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6~2018)	96
〈그림	20>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97
〈그림	21>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97
〈그림	22>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98
〈그림	23>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98

〈그림	24>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0
〈그림	25>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0
〈그림	26>	적립일수 규모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1
〈그림	27>	적립일수 규모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1
〈그림	28>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2
〈그림	29>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2
〈그림	30>	월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4
〈그림	31>	월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4
〈그림	32>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6
〈그림	33>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6
〈그림	34>	성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07
〈그림	35>	성별 신규 적립일수	107
〈그림	36>	연령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08
〈그림	37>	연령별 신규 적립일수	108
〈그림	38>	직종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09
〈그림	39>	직종별 신규 적립일수	109
〈그림	40>	지역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10
〈그림	41>	지역별 신규 적립일수	110
〈그림	42>	성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2
〈그림	43>	성별 외국인 적립일수	112
〈그림	44>	연령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3
〈그림	45>	연령별 외국인 적립일수	113
〈그림	46>	직종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4
〈그림	47>	직종별 외국인 적립일수	114
〈그림	48>	지역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6
〈그림	49>	지역별 외국인 적립일수	116

〈그림 50〉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18)	118
〈그림 51〉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0
〈그림 52〉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액	120
〈그림 53〉	납부액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1
〈그림 54〉	납부액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121
〈그림 55〉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2
〈그림 56〉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122
〈그림 57〉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4
〈그림 58〉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액	124
〈그림 59〉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6
〈그림 60〉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액	126
〈그림 61〉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18)	127
〈그림 62〉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29
〈그림 63〉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29
〈그림 64〉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0
〈그림 65〉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0
〈그림 66〉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1
〈그림 67〉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1
〈그림 68〉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3
/==1 00\		
〈그림 69〉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3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	
〈그림 70〉		134
〈그림 70〉 〈그림 71〉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 134 · 134

부표 차례

〈부표 1〉 연도별 신규 피공제자수
〈부표 2〉 연도별 연령별 신규 피공제자수
〈부표 3〉 연도별 시도별 신규 피공제자수
〈부표 4〉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피공제자수
〈부표 5〉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피공제자수
〈부표 6〉 연도별 성별 신규 피공제자수
〈부표 7〉 연도별 내외국인 신규 피공제자수
〈부표 8〉 연도별 시도별 피공제자수
〈부표 9〉 연도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부표 10〉 연도별 적립일수별 피공제자수
〈부표 11〉 연도별 성별 피공제자수154
〈부표 12〉 연도별 연령별 피공제자수
〈부표 13〉 연령별 시도별 누적 피공제자수
〈부표 14〉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부표 15〉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부표 16〉 연령별 성별 누적 피공제자수186
〈부표 17〉 연령별 내외국인 누적 피공제자수188
〈부표 18〉 시도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부표 19〉 시도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부표 20〉 시도별 성별 누적 피공제자수210
〈부표 21〉 성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부표 22〉 성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214
〈부표 23〉 월별 연도별 피공제자수
〈부표 24〉 월별 연도별 적립일수217

〈부표	25>	연도별	연령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18
〈부표	26>	연도별	시도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20
〈부표	27>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22
〈부표	28>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24
〈부표	29>	연도별	성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26
〈부표	30>	연도별	시도별 외국인 피공제자수	227
〈부표	31>	연도별	연령별 외국인 피공제자수	228
〈부표	32>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 피공제자수 및 금액	229
〈부표	33>	연도별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230
〈부표	34>	연도별	시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232
〈부표	35>	연도별	지급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234
〈부표	36>	연도별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236
〈부표	37>	연도별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238
〈부표	38>	연도별	퇴직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239
〈부표	39>	연령별	시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240
〈부표	40>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242





PART

건설근로자공제회 개관

제1장 조직 및 기능 **제2장** 주요사업

제 권 장

조직 및 기능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퇴직공제사업,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사업 등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공제회는 설립 당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공제부금 규모 증가와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표 1⟩ 주요 연혁

시기	내용
1996.12.3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97.12. 9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노동부장관 인가)
1998. 1. 1	업무 개시(퇴직공제사업 시작)
2003. 7. 1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기관명 변경
2006. 1. 1	전국 광역권 7개 지부 개소
2011.10.26	기능훈련, 취업지원, 복지사업 시작(건설근로자법 개정)
2013. 1.31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4. 4.25	건설근로자 종합지원상담센터 개소
2017. 1. 1	직제 개편(3본부 1실 10팀, 6지사 9센터)
2018. 1. 1	퇴직공제부금 인상(4,200원 → 5.000원)

2. 기능

공제회의 기능은 건설근로자법과 공제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 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피공제 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 한 사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위의 사업에 딸린 사업 등이다.

건설근로자법 1차 개정(2002.12.30 법률 제6848호)을 통해 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 자퇴직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법률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를 신설해 퇴직공제제도 이외에 공제회가 수행할 다양한 사업을 열거했다. 공제회의 명칭을 변경한 취지는 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퇴직 이후'의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업 인 퇴직공제 이외에, '재직 중'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 및 복지사업을 수행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각종 제도로부터 소외됐던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들은 보다 강화된 고용지원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회는 건설근 로자를 위한 고용복지종합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표 2〉 주요 기능

구 분	건설근로자법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공제회 정관 제36조(사업)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2. 공제부금의 수납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3.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지급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주 요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5.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에 관련된 간행물의 발행 및 홍보사업
요 기 능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6.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7.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3. 조직 및 인원

2017년에는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했다. 이것은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국무회의, '15.8.4)」에 따라 확대된 공제회의 역할을 성공적으로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서별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지원기능과 사업기능을 묶어 2개 본부를 신설하고 자산 운용실은 본부로 승격시켜, 기존 5부 2실 3팀에서 3본부 1실 10팀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본회에서 수행하던 일선 고용복지업무(훈련·취업서비스 안내 및 위탁기관 지도, 학자금·보조금 지급 업무 등)를 지사로 이관하여. 민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다원화했다.

기획조정본부에는 기획관리팀, 경영지원팀, 전산정보팀, 리스크관리팀, 사업운영본부에는 공제사업팀, 고용지원팀, 회원복지팀, 자산운용본부에는 투자전략팀, 증권운용팀, 대체투자팀이 배치되었다. 소속기관은 6지사(서울, 경인, 광주, 부산, 대구, 대전)와 9센터(구로, 원주, 인천, 의정부, 전주, 제주, 창원, 안동, 청주)로 편제됐다. 그중 안동센터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17.1월 개소됐다.

2017년의 12명 증원에 이어 2018년에는 6명을 증원했는데,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인력 4명과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위한 인력 2명을 충원했다. 그 결과 정원은 128명에서 134명으로 증가했다.



(그림 1) 조직도(2017. 1. 1 시행) : 3본부 1실 10팀, 6지사 9센터

〈표 3〉 직급별 정원

('18.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타
정원	134	3	5	9	15	23	33	36	10	_
현원	131	3	4	10	14	22	32	38	8	_
과부족	∆3	_	△1	1	△1	△1	△1	2	△2	_

4. 회계

공제회의 회계는 부금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외부수탁회계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 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하루 일할 때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5,000원 중 4,800원은 부금회계로서 근로자 몫인 퇴직공제금으로 전액 적립되어 관리·지 급되고, 200원은 공제회의 기관운영비 등인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적립·운영되고 있다.

특별회계는 2006년 1월 퇴직공제금 신고 납부방식의 변경(증지부착방식→전산신고방식) 으로 인한 미회수공제증지 판매대금과 그 운영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부금 회계에서 분리됐다. 외부수탁사업회계는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받는 정부 위탁사업(훈련, 취 업지원) 관리를 위해 별도로 구분하는 회계다.

가. 부금회계

부금회계 수입은 579.648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19.785백만 원 감소했고, 지출은 총 370.054백만 원인데, 퇴직공제금 348.298백만 원, 특별퇴직공제금 2.602백만 원, 대부금 19.153백만 원 등이었다.

수입 측면에서 공제부금은 예산대비 74,009백만 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공제부금 일액인 상(4,200원 → 5,000원), 누락방지 대책 추진을 통한 사업장 관리강화 등의 성과였고, 지출 측면에서도 퇴직공제금이 예산대비 12,160백만 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법정 고지와 고령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안내 등 적극적인 청구 안내의 결과였다.

⟨표 4⟩ 2018년도 부금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계	599,433	579,648	△19,785
수입	공제부금	492,226	566,235	74,009
	이자수입 등	107,207	13,413	△93,794
	계	361,423	370,054	8,631
	퇴직공제금	336,138	348,298	12,160
지출	특별퇴직공제금	2,483	2,602	119
	대부금	22,800	19,153	△3,647
	일반관리비	2	1	△1
	지불준비금	238,010	209,594	△28,416

나. 특별회계

특별회계 수입은 이자수입 △31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6,653백만 원 감소했고, 지출은 퇴직 공제금 476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548백만 원 감소했다.

이자수입의 감소 요인은 국내외 증시 부진 등이었고, 지출감소 요인은 복지수첩의 반납 감소였다.

〈표 5〉 2018년도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수입	계	6,622	△31	△6,653
十首	이자수입	6,622	∆31	△6,653
TIĀ	계	6,622	476	△548
지출	퇴직공제금	1,024	476	△548
지불준비금		5,598	△507	△6,105

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수입은 28,317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284백만 원이 증가했고, 지출은 26,779백만 원으로 사업비 8,527백만 원, 인건비 11,600백만 원, 경상운영비 6,652백만 원이며, 예산대비 1,254백만 원 절감했다. 부가금은 적용단가 인상효과 반영 등으로 3,257백만 원 증가했고, 잡수입은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161백만 원 증가했다.

^{1 &#}x27;12.4월에 인상된 부가금 200원의 적용률은 '17년에는 97.5% 그리고 '18년에는 99%로 추정된다.

⟨표 6⟩ 2018년도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계	28,033	28,317	284
수입	부 가 금	24,488	27,745	3,257
一十首	잡 수 입	411	572	161
	재산조성적립금	3,134	_	△3,134
	계	28,033	26,779	△1,254
	사 업 비 ¹⁾	9,262	8,527	△735
지출	인 건 비 ²⁾	11,973	11,600	△373
	경상운영비	6,630	6,652	22
	예비비	168	_	△168

주: 1) 퇴직공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용역입찰 시 예산절감

라. 외부수탁사업회계

외부수탁사업회계의 총수입은 고용보험기금 10,222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31백만 원 증가(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잡수입 증가)했고, 총지출은 9,972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219백만 원이 감소했다.

〈표 7〉 2018년도 외부수탁사업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계	10,191	10,222	31
	훈련 위탁사업비	6,807	6,807	_
수입	잡수입	1	28	27
	취업 위탁사업비	3,382	3,382	_
	잡수입	1	5	4
	계	10,191	9,972	△219
지출	훈련 위탁사업비	6,808	6,738	△70
	취업 위탁사업비	3,383	3,234	△149

²⁾ 정원대비 현원 축소 운영 등으로 불용 발생

제 2 장

주요사업

공제회의 사업은 크게 공제부금 수납, 공제부금 운용,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복지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공제부금 수납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으로부터 피공제자인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수납하는 과정이고, 공제부금 운용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을 더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적립된 공제부금을 불리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부금을 활용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거나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각 피공제자별로 적립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관리해야 하고, 퇴직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고용·복지 서비스는 건설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여주는 기능훈련사업, 무료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개하는 취업지원사업,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2〉 사업 개요



첫째, 퇴직공제사업이란 퇴직공제제도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말한다.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사업주는 소속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가 매월 근로한 일수만큼 근로내역 신고와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고, 건설근로자는 건설업을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998년에 시행된

퇴직공제제도는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건설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고용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실시와 직업소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무료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정부위탁사업을 통한 고용보험기금이다.

셋째, 복지지원사업이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사기 진작, 직업이미지 제고 등 건설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생활자금 대부,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장학지원금 지급,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결혼·출산지원 금 지급, 가족 힐링캠프 운영,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자산운용사업은 퇴직공제금 지급, 복지증진 사업,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수납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을 효과적으로 증식시키는 사업이다.





02

PART

주요사업 현황

제1부 퇴직공제사업

제1장 사업 개요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제3장 추진현황

제2부 고용지원사업

제1장 기능향상훈련

제2장 무료취업지원

제3장 관련 사업

제3부 복지지원사업

제1장 사업 개요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현황

제4부 자산운용사업

제1장 사업 개요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제3장 추진현황

제 1 장

사업 개요

퇴직공제사업은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와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적립금액 등의 관리를 통해 퇴직공제금 및 대부금을 지급하는 공제회의 핵심 사업이다. 공제가입 사업장 및 피공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1. 가입 범위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는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쳐 확대되어 왔는데, 2018년 현재 공공공사 3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100억 원 이상이다.

〈표 8〉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공사종류	1998.1.1	2001.9.1	2004.1.1	2008.1.1	2010.9.30
국가·지자체 발주공사	10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정부출자·출연법인 발주공사	10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시행공사	_	_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오피스텔공사	500호 이상	500호 이상	300호 이상	200호 이상	200호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_	-	-	-	100억 원 이상

- 주: 1. 근거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임.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의2(2003.6.25)의 개정으로 2003. 7. 1 이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등이 포함됨.
 - 2.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함.
 -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제외)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피공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다. 적용제외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이다.

2. 퇴직공제 이행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 시작일로부터 당연 가입되고,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공제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퇴직공제가입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당해 가입공사에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적립일수를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부금은 발주자가 부담(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 하는데, 소요비용은 '직접노무비×2.3%'(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2015-610호, '15.8.20.)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제부금은 근로자 몫인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비에 쓰이는 부가금으로 구성된다. 공제부금은 네 차례 인상되었는데, 공제부금액의 인상이 세 차례 그리고 부가금의 인상이 한 차례 있었다.

특히 2008년부터 10년째 동결됐던 퇴직공제금이 2017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어 2018년 이후 신규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되었다. 즉,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일액이 기존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공제부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퇴직공제제도 출범 이후 2006년 말까지 2,100원이었고, 2007년에는 3,100원, 2008년부터 4,100원, 2012년 4월부터 2017년까지 4,200원, 2018년부터 5,000원이다.

3.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은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252일)이고,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건설근로자다.

퇴직공제금 지급액은 본인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과 매월 복리로 적립된 이자(공제회가 매년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고시)의 합계액이다. 7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특별퇴직공제금이 추가 지급되는데, 7년 이상 30만 원, 10년 이상 50만 원, 15년 이상 100만 원이다.

제 2 장

주요 추진 사업

2018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퇴직공제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제가입 사업장 관리 강화,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및 퇴직공제금 등 지급업무의 편의성 제고, 피공제자 정보 관리 및 공제부금 수납처리 강화 등이다.

1. 공제가입 사업장 관리 강화

가. 공사 이행단계별 퇴직공제 관리체계 개선 및 제도이행 촉진

2018년에는 공제부금 납부기반 강화 및 제도이행 촉진을 위해 건설현장 생애주기(Life Cycle)별 퇴직공제 관리체계 강화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증진 등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가입단계에서는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을 개설('18.6)해 사업주가 직접 성립신고 또는 정보수정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퇴직공제 가입 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성립신고 관련 서면을 접수하면 공제회에서 수기로 전산입력 처리했다. '18.12월말 현재 온라인을 통한 가입률은 20.5% 수준으로 향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신고·납부단계에서는 공제부금 누락방지를 위해 다양한 이행촉진방안을 시행했다. 퇴직공제 이행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체계를 일원화(고용노동부 본청-공제회 본회)해 효율적인 행정조치 체계를 구축했고, 부진사업장 이행지도 감독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과 협력해 특별점검을 실시(98개소, 13.5억 원 이행)했으며, 전년대비 26개소를 확대(100개소→126개소)하여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사업장별 퇴직공제 출력인원 조사대상 사업장을 확대(4,000개소→14,000개소)하여 누락일수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준공 단계에서는 미납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점검도 체계화했다. 미납사업장 법적조치 대상을 기존 준공 미납사업장 및 준공예정공사 중 미납 공제부금 5천만 원 이상 사업장에서 시공 중 미납 공제부금 1천만 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지급명령 등을 통한 법적조치로 4억 원을 징수(전년 2.8억원 대비 43% 증가)했다. 또한, 건설사업주의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16.2월 도입한 기업 경영상태 상시분석시스템 업체정보를 최신화(49,843건, 전년대비 9.9% 증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급순위 100위 이하 경영상태 하락 사업장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실시했다(1개사, 8개 현장, 166백만 원 해소).

나. 퇴직공제 이행 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업무협업 강화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 Needs와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요소를 발굴하고 퇴직공 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상생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지역별 특화·맞춤형 서비 스를 발굴하였다.

첫째, 사업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핵심 요구사항을 발굴하여 주요 정책에 반영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하였다. 건설사업주와 소통 확대와 의견수렴을 위해 약 두 달간('18.11월~12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78개 사업장에서 응답하였다. 주요 요구사항은 현장 중심의 교육 실시, 협력업체 교육 강화, 근로내역 신고 간소화, 현장점검 방법 일원화 등이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사업주 교육을 확대하고 특화교육을 신설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도록 '19년도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지역·단체 특성에 맞게 각종 퇴직공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인식과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각 지역별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노무법인 등 유관기관과 53회에 걸쳐 협력교육을 실시하여 총 2,221명이 참석하였으며, 지역단위 유관기관 협의체 간담회를 12회 개최하여 각 지역별로 사회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별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시와 협업으로 무상 홍보(지하철, 버스정류장 등)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와 협업으로 수원역 민원센터를 활용한 고객 상담(주1회)을 실시하였다.

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및 정보 인프라 구축

2018년에는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관련 정보 연계와 단말기 시장 개방을 위한 개방형 표준인증제 도입 준비에 주력하였다.

첫째, 정부 및 지자체 등 주요 발주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자카드제 확대를 추진해, 서울시 또는 부산시가 발주한 50억 원 이상 공사와 국토부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300억 원 이상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용토록 하였다. 그 결과, '15년 시범사업을 통해 6개소 로 시작한 전자카드 적용 현장이 '18년에는 74개소로 확대 되었고, 현장 출력인원 대비 제도 이용률이 95%이상을 기록하였다.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적용 확대 추진	• 시범사업 시작 • 서울시 MOU 체결	• 제2단계 시범사업	• 시범사업 성과평과	• 서울시 현장 확대 • 국토부, 부산시 MOU 체결
적용 현장	6개소	36개소	36개소	74개소
제도 이용률	81.5%	85.9%	94.6%	96.5%

사업장 방문교육과 홍보물 배포 등 전자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전체 관리 연인원 1.540.258명 중 카드 태그 연인원이 897,783명으로 58.3%를 차지하였다.

⟨표 9⟩ 전자인력관리 현황

('18.12.31 기준, 단위: 명)

고니스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인원		
공사수	계	전자카드	지문
74개소	1,540,258	897,783(58.3%)	642,475(41.7%)

또한, 전자카드 및 전용 통장(건설근로자 전용 급여통장(KEB하나은행)) 발급 매수(좌수)는 전자카드 75,355매와 통장 75,177좌이며, 건설근로자 전용 급여통장(건설愛통장)의 1인당 평균 계좌잔고는 288천원으로 '15년 9월의 39천원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 전자카드의 활용성이 건설근로자의 출력확인기능 뿐 아니라 금융활동 측면에서도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 전자카드 발급 및 계좌 현황

('18.12.31 기준)

					(10112101 127
구분	건설愛카드 (매수)	건설愛통장			급여계좌
		발급좌수	계좌잔액	1인당 계좌잔액	확인(좌수)
KEB하나은행	75,355	75,177	21,644백만원	288천원	3,525

구분	통장 발급매수	1인 평균 계좌잔고(원)
15년 09월	1,081	38,853
15년 12월	2,400	44,167
16년 12월	12,085	115,455
17년 12월	42,954	263,189
18년 12월	75,177	287,907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전자인력관리 사용률 실적 확인 자료 참조

둘째, 전자카드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 기관의 건설근로자 관리정보와 연계를 추진하였다. 발주처 대금지급시스템, 외국인 고용허가시스템(EPS), LH 건설사업관리시스템, 기상청 시스템 등을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카드의 범용성을 확보하였고, 건설관련 각종 정보 및 경력 확인 등이 가능토록 정보관리 일원화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관리 기관	연계 시스템 (연계내용)	기대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 고용허가시스팀(EPS) (건설업 취업인정교육 이수정보)	• 외국인 근로자(H-2) 현장 출입 가능 여부 등 필요 정보 즉시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사업관리시스템 (근로자 전자카드 태그 정보)	• 사업주의 현장 근로자 관리 효율화 제고
서울시	대금e-바로 (공제부금 납부 정보)	• 퇴직공제금 납부 누락 및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기상청	기상청 시스템 (현장 날씨 정보	• 상세 근로환경 정보 제공

셋째, 개방형 표준 인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표준 인증이란 다양한 단말기가 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고 이에부합하는 단말기를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 연구용역을 통해 인증 받은 제품들이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배하지 않고 퇴직공제부금 신고 등 사업주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구축하였다.

먼저, 인증제도 도입방향 및 추진전략으로 개방형 표준 인증기준을 고려한 전자카드 사업 To-Be 모델을 개발하고, 특성 분석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준의 범위를 결정한 후, 전자카드 호환성,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성, 표준 인증기준 등을 개발하였다.

<u></u>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증범위 퇴직공제 근로자 관리 부금신고 보안서버 카드서버 카드번호 + 출퇴근 + 일시 -❖ 단말기ID 단말기ID(현장ID + 단말기ID) ❖ 근로자 정보 근로자이름/ 근로자 ❖ 근로 내역 Reject 기본정보 ❖ 실시간 제공 근로지 민간IT 시스템 출퇴근 단말기 (서약 및 동의) ❖ 출입관리 (인증대상) 근로자 ❖ 출입관리 사업주 추가정보 출역 관리 안전 관리 노임 관리 기타

〈그림 3〉 To-Be 모델 : 전자카드로 근로자 근로내역 확인 및 실시간 출입관리 병행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 등 국내외 유사 표준과 인증제도 운영방식을 조사·참고하여 개 방형 표준 인증 필요 요소를 분석하고, 전자카드와의 호환성, 민감 정보 보안성, 운영환경의 보안성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정보보호 기술기준(안)을 검토하였다.

(그림 4) To-Be 모델: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정보보호 기술기준(안)

〈기술기준(안)〉	〈주	〈주요 보안기능 요구사항-일부발췌〉			
	구분	정보보호 요구사항	세부항목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전자카드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	2개 항목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기본 요구사항 (제2절)	근로자정보 및 출역시간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4개 항목		
정보보호 기술기준(안)	(===)	전자카드 단말기 관리자 비밀번호에 대한 요구사항	4개 항목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3개 항목		
		암호화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4개 항목		
	기술적 요구사항 (제3절)	자체보호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3개 항목		
	(== 2)	접근제어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2개 항목		
		업데이트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7개 항목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2개 항목		
		초기 <u>암호킨</u> 주입에 대한 요구사항	3개 항목		
	관리적 요구사항	보안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1개 항목		
	(제4절)	형상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3개 항목		
		안전한 운영환경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4개 항목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대한 요구사항	3개 항목		
건 설 근 로 자 공 제 회	성능 요구사항	운영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2개 항목		
	(제5절)	하드웨어 성능 요구사항	2개 항목		

결론적으로 개방형 표준 인증제도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카드 사업 확대에 따른 건설현장 의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실현되고, 특히, 관련 기술 개발 유도를 통해 민간 IT 업체의 참여 를 유도해 신규 시장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카드제 적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 제도 운영기반을 마련하였고, 건설관련 각종 정보, 교육여부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인력관리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방형 표준 인증제도 구축 연구용역을 통해 전자카드제 제도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전자카드제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 제도 연계 강화와 개방형 표준인증제도 도입 그리고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을 통해 전자 카드제 정보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2. 피공제자 권익 보호 및 지급업무의 편의성 제고

가. 수급권 보호 강화를 통한 퇴직공제금 청구 사각지대 해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주소지 정보제 공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피공제자에게 퇴직 공제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함으로써 피공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켰다.

첫째, 금융감독원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구축하여 사망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 가입내역을 직접 안내함으로써 퇴직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였다. '18년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총 21,569명 중 367명에게 지급가능 사실을 안내하였으며, 91명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229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둘째, 산업재해 발생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체계를 구축하였다.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 및 중증장해 건설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사망자 및 장해 1~3급 판정자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18년 12월 중증장해자 252명, 유족급여 대상자 194명에게 퇴직공제금 청구가능사실을 안내하여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주민등록주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한 고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퇴직 공제금 청구가능사실 고지를 실시하였으나, 청구하지 않은 피공제자 중 주민등록주소 확인이 가능한 피공제자 총 124,659명에게 퇴직공제금 청구사실 및 청구방법을 재차 안내 ('18.12~'19.1)하였다. 또한, 연 2회 실시하던 '고령자 수급권 찾아주기'를 '18 12월부터 매월 실시하였으며, 법정고지 대상자 중 정보미비자 9만 3천명의 정보를 다시 파악한 후 안내함으로써 피공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각종 고지 시, 압류방지통장 발급가능기관을 안내하였고 공제회 및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압류방지통장 개설 및 이용안내를 홍보하였다. 이로 인해 2018년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건수는 5,546건으로 전년대비 39%가 증가하였다.

나. 고객 만족형 업무 개선

퇴직공제금, 대부, 복지서비스 신청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

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편의성을 증진시켰다. 모바일 앱 개 편을 통해 고령사유의 퇴직공제금 및 건강검진 단체보험 복지서비스의 모바일 신청기능을 추가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푸시설정을 통해 매월 퇴직공제 적립내역에 대한 자동 알림이 가능한 기능을 신설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퇴직공제금 신청 등을 위 한 방문 접수 시, 서명패드, 신분증 스캐너 등을 활용한 종이 없는 스마트 상담창구를 개설 하여 업무 효율성 및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이로 인해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은 전년 대비 52% 상승하였으며 경력증명서 발급건수 또한 전년대비 344% 가까이 상승하였고, 2018년 퇴직공제금 평균 지급처리일은 2.32일로 전년대비 0.2일이 단축되었다.

또한, 고객제안 및 혁신제안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상 장해등급 1~3 급 판정을 받은 피공제자가 부상·질병사유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수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를 추 가하여 민원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3. 피공제자 정보관리 및 공제부금 수납처리 강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피공제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피공제자 정보 관리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하였다.

첫째, 근로내역 신고 항목별 수집 방법을 개선하였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피공제자 전화번 호를 입력하도록 독려하였고, 각 지사 내방 및 전화민원 응대 시 업무담당자가 바로 피공제 자 확인 후 전산에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개편을 추진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올바른 경력 산정을 위하여 전자카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420개의 직종을 전체 사업 장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둘째, 실명오류 피공제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명확인 처리를 실시하였다. 전체 실명인 증 오류자 중 기 지급내역이 있는 피공제자의 경우 청구과정에서 확인된 실명으로 일괄 정 정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자동실명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일 주민등록번호의 피공제자 간 신고입력 항목별 정보 분석을 통하여 실명 매칭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올 바른 정보 수집을 위하여 영문이름 필수사항 안내 및 영문명 입력 강제화를 실시하여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다.

제 3 장

추진현황

1. 퇴직공제 가입 현황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신규 가입한 공사는 26,728개소로 전년대비 2.5%(684개소) 감소 하였으며, 공사금액과 공제부금 반영액 역시 7.0%(112,587억 원), 2.9%(205억 원) 감소하 였다.

신규 가입공사의 감소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전체 건설수주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건설투자 역시 감소(△4.0%)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체 신규가입공사 대비 원가미반영공사의 비율은 전년대비 0.2%p(104개소)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현황

('18.12.31 기준, 단위: 개소, 억 원, %)

	구분	2017	2018	증감	증감률
	계	27,412	26,728	△684	△2.5
신	공공공사	24,751	24,154	△597	△2.4
규	민간공사	1,627	1,519	△108	△6.6
가	임의	1,034	1,055	21	2.0
입	공사금액	1,600,340	1,487,753	△112,587	△7.0
	공제부금 반영액	7,099	6,894	△205	△2.9
원가 미반영공사	1,486	1,382	△104	△7.0	
	(미반영률)	5.4%	5.2%	△0.2%p	△3.7

2. 공제부금 납부 및 근로일수 신고

2018년 공제부금 납부액은 5,950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93억 원(1.5%) 감소했다. 신고 받은 근로일수는 총 134,320천 일로 전년대비 9,336천일(6.5%) 감소했다. 2017년에 비해 공공공사의 실적은 약간 늘고, 민간공사의 실적은 소폭 감소했다. 임의가입 역시 전년 대비 공제부금은 7.9%, 근로일수는 5.8%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건설투자의 감소에 기인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사 이행단계별 퇴직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제부금 누락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8년 연간 목표금액(5,167억원)에 비해 15.2% 초과달성한 것이었다.

〈표 12〉 공제부금 납부 및 근로일수 신고 현황

('18.12.31 기준, 단위: 천 일, 억 원, %)

구분	!	2017	2018	증감	증감률
	계	6,043	5,950	△93	△1.5
공제부금	공공	1,703	1,729	26	1.5
납부	민간	4,239	4,129	△110	△2.6
	임의	101	92	△8	△7.9
	계	143,656	134,320	△9,336	△6.5
근로일수	공공	40,570	39,177	△1,393	△3.4
신고	민간	100,758	92,951	△7,807	△7.7
	임의	2,328	2,192	△136	△5.8

3.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2018년 말 현재 퇴직공제 가입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는 5,364천 명으로서, 전년 대비 260천 명이 늘어 5.1% 증가하였다. 신규가입 근로자는 364천 명으로 전년 대비 15.2%(65천 명) 감소했고, 퇴직 근로자는 12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2.8%(23천 명) 증가했다.

〈표 13〉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18.12.31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2017	2018	증감	증감률
피공제자수 누계	5,104	5,364	260	5.1
신규 피공제자수	429	364	△65	△15.2
퇴직 피공제자수	101	124	23	22.8

4.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2018년도의 퇴직공제금 지급건수는 123,884건이고, 지급액은 3,482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지급건수는 23.2% 증가했고, 지급액은 31.4% 늘었다.

한편, 특별퇴직공제금은 7,056건에 대해 26억 원을 지급하였다. 전년 대비 지급건수가 41.3% 늘었고, 지급액은 45.4% 증가했다. 특별퇴직공제금은 장기적립자를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7년 이상자에게는 30만 원, 10년 이상자에게는 50만 원, 15년 이상자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표 14〉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8.12.31 기준, 단위: 건, 억 원, %)

구분		2017	2018	증감	증감률
	지급건수	100,541	123,884	23,343	23.2
퇴직공제금	지 급 액	2,650	3,482	832	31.4
트병티지고레그	지급건수	4,989	7,056	2,067	41.3
특별퇴직공제금	지 급 액	18	26	8	45.4

기능향상훈련

1. 사업 개요

고용지원사업 중 기능향상훈련이란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취업능 력을 배양하려는 사업이다. 일과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특수성을 고려하 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향상 및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자 했 다. 현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건축시공 직종을 훈련직종으로 선정했고, 훈련과정은 주간과정 과 야간과정으로 나누어 개설했으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했다.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서, 고용보험에 건설현장 근로내역이 있는 자.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자.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건설업 기초안전 교육을 이수한 자, 직업안정기관에 건설직종으로 구직 신청한 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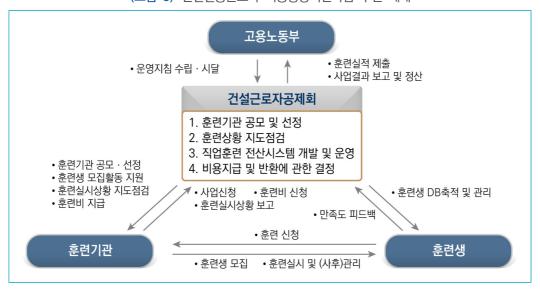
사업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데, 고용노동부가 공제회에 위탁하면 공제회가 민간 훈련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재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시행지침을 수립・시달하 고, 위탁계약 체결 및 선정된 훈련기관의 재위탁 승인, 분기별 예산 배정, 매월 추진실적 관리 등을 담당한다.

공제회는 약정 체결, 훈련 목표인원의 달성 유도, 훈련기관 공모·선정, 훈련생 모집활동 지원, 훈련생 출결관리 등 전산시스템 운영, 훈련 실시상황 지도점검, 훈련비 등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결정, 체계적인 홍보 활동 등을 담당한다.

훈련기관은 공제회와의 훈련약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안전교육 및 철저 한 과정관리 등을 통해 훈련의 내실화를 추구하며, 무료취업지원센터와 협업 등을 통해 훈 련수료자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한다.

〈그림 5〉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체계



2. 주요 추진 사업

2018년에는 기능향상 훈련과정 다양화 및 훈련생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숙련인력 및 다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본과정을 단일직종 및 혼합직종으로 구분해 운영하였고, 별도의 심화과정 운영을 통해 수준별로 맞춤 훈련을 실시했다. 기본과정(단일 및 혼합)은 공급부족 규모가 큰 12개 직종으로 공모하되 직무연관성이 크고 현장수요가많은 직종을 대상으로 하나의 과정에서 두 가지 직종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적+타일', '배관+일반용접' 등의 혼합과정을 운영했다. 공급이 부족한 건축(일반)목공과 타일 2개 직종에 대해서는 심화과정을 운영했다.

둘째, 연간 공백 없이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 적기인 동절기에 훈련을 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훈련과정 공모를 2017년 12월에 실시하고 2018년 1월까지 훈련기관과 과정을 선정함으로써, 1월부터 공백 없는 안정적인 훈련공급체계를 마련하였다.

셋째,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훈련생이 건전한 환경에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넷째, 취업률 향상을 위해 훈련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성화하였다. 훈련생에 대한 사후관리기간(3개월→6개월)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다.

3. 추진현황

가.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고용노동부 위탁훈련에는 총 59,205명이 참여하고 47,994명이 수료했는데, 조기취업자 제외하면, 85.0%의 수료율을 기록했다. 참여한 훈련 인원과 수료인원은 2009년에 11,297명과 8,8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료율과 취업률은 2018년에 각각 95.4%와 72.1%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취업률은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훈련 취업률인 2013년의 45.5%, 2014년의 48.6%, 2015년의 52.6%, 2016년의 48.8% 등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17년판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표 15〉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사업 추진 실적

('18.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훈련기간	훈련인원	수료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2009	'09.07~'09.12	11,297	8,894	78.7	2,100	38.4
2010	'10.02~'10.12	6,041	3,815	63.2	2,538	50.8
2013	'13.05~'14.01	4,670	3,608	82.2	1,593	41.1
2014	'14.03~'15.01	4,703	3,670	86.3	2,312	56.1
2015	'15.03~'15.12	7,792	6,478	89.7	3,453	49.0
2016	'16.03~'17.01	8,444	7,184	90.9	4,289	55.5
2017	`17.01~`17.12	8,406	7,317	93.5	5,645	71.5
2018	`18.01~`18.12	7,852	7,028	95.4	5,416	72.1

주: '11년, '12년은 위탁훈련 미실시(고용노동부 사업예산 미편성), 조기취업자수는 생략

수료율(%) = 수료자/(훈련인원-조기취업자)

취업률(%) = (취업자+조기취업자)/(훈련인원+조기취업자)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요 특성별 훈련 인원 분포의 변화 중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 면, 매년 타일과 건축목공이 각각 1위와 2위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 운영된 혼합과정은 2018년에 7개 직종으로 확대되었다.

(표 16)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직종별

('18.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건축	도장	미장	방수	배관	용접	조적	철근	타일
十正	/1	목공	工分	u(3	 	메인	81	조역	설근	니글
2013	4,670	1,229	139	404	76	126	301	151	154	2,090
	(100.0)	(26.3)	(3.0)	(8.7)	(1.6)	(2.7)	(6.4)	(3.2)	(3.3)	(44.8)
2014	4,703	1,180	395	215	88	422	640	248	162	1,353
	(100.0)	(25.1)	(8.4)	(4.6)	(1.9)	(9.0)	(13.6)	(5.3)	(3.4)	(28.8)
2015	7,792 (100.0)	2,145 (27.6)	539 (6.9)	669 (8.6)	_	425 (5.5)	719 (9.3)	870 (11.2)	103 (1.3)	2,322 (29.8)
2016	8,444 (100.0)	2,240 (26.5)	486 (5.8)	664 (7.9)	174 (2.1)	527 (6.2)	397 (4.7)	439 (5.2)	_	2,277 (27.0)
2017	8,406	1,925	579	383	269	492	703	213	165	2,801
	(100.0)	(22.9)	(6.9)	(4.6)	(3.2)	(5.9)	(8.4)	(2.5)	(2.0)	(33.3)
2018	7,852	1,927	560	126	311	388	347	140	127	1,951
	(100.0)	(24.5)	(7.1)	(1.6)	(4.0)	(4.9)	(4.4)	(1.8)	(1.6)	(24.8)

구분	조적 +타일	형틀 +철근	배관 +방수	배관 +용접	타일 +미장	타일 +조적	타일 +방수	미장 +조적
2016	1,033 (12.2)	147 (1.7)	-	60 (0.7)	_	-	_	_
2017	823 (9.8)	_	-	53 (0.6)	_	-	_	_
2018	384 (4.9)	_	203 (2.6)	114 (1.5)	238 (3.0)	475 (6.0)	274 (3.5)	287 (3.7)

과정별 분포의 경우 대체로 주간 과정이 약 87% 정도를 차지하는데 2018년에는 주 간 과정의 비중이 91.3%까지 높아졌다.

〈표 17〉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과정별

('18.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주간	야간
2013	4,670 (100.0)	3,876 (83.0)	794 (17.0)
2014	4,703 (100.0)	3,570 (75.9)	1,133 (24.1)
2015	7,792 (100.0)	6,565 (84.3)	1,227 (15.7)
2016	8,444 (100.0)	7,532 (89.2)	912 (10.8)
2017	8,406 (100.0)	7,591 (90.3)	815 (9.7)
2018	7,852 (100.0)	7,166 (91.3)	686 (8.7)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50대와 40대가 각각 1위와 2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5년에는 60대가 2위를 차지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주목할 것은 30대 이하의참여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으로서 2013년에 15.8%에서 2018년에는 23.0%로 증가했다.

〈표 18〉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연령별

('18.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13	4,670 (100.0)	28 (0.6)	162 (3.5)	547 (11.7)	1,234 (26.4)	1,915 (41.0)	784 (16.8)
2014	4,703 (100.0)	14 (0.3)	193 (4.1)	529 (11.2)	1,229 (26.1)	1,735 (36.9)	1,003 (21.3)
2015	7,792 (100.0)	45 (0.6)	404 (5.2)	823 (10.6)	1,784 (22.9)	2,907 (37.3)	1,829 (23.5)
2016	8,444 (100.0)	80 (1.0)	656 (7.8)	1,032 (12.2)	1,826 (21.6)	3,322 (39.3)	1,528 (18.1)
2017	8,406 (100.0)	172 (2.0)	889 (10.6)	1,041 (12.4)	1,812 (21.6)	3,139 (37.3)	1,353 (16.1)
2018	7,852 (100.0)	69 (0.9)	773 (9.8)	966 (12.3)	1,687 (21.5)	2,756 (35.1)	1,601 (20.4)

성별 분포의 경우 해가 거듭되면서 남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3년 에는 79.8%이던 것이 2018년에는 91.2%로 높아졌다.

〈표 19〉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성별

('18.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남성	여성
2013	4,670 (100.0)	3,725 (79.8)	945 (20.2)
2014	4,703 (100.0)	4,026 (85.6)	677 (14.4)
2015	7,792 (100.0)	6,699 (86.0)	1,093 (14.0)
2016	8,444 (100.0)	7,358 (87.1)	1,086 (12.9)
2017	8,406 (100.0)	7,401 (88.0)	1,005 (12.0)
2018	7,852 (100.0)	7,163 (91.2)	689 (8.8)

참여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해가 거듭되면서 경력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2013년에는 59.9%이던 것이 2018년에는 90.4%로 높아졌다.

⟨표 20⟩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참여유형별

('18.12.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경력자	구직자
2013	4,670 (100.0)	2,799 (59.9)	1,871 (40.1)
2014	4,703 (100.0)	2,951 (62.7)	1,752 (37.3)
2015	7,792 (100.0)	5,619 (72.1)	2,173 (27.9)
2016	8,444 (100.0)	7,071 (83.7)	1,373 (16.3)
2017	8,406 (100.0)	7,322 (87.1)	1,084 (12.9)
2018	7,852 (100.0)	7,099 (90.4)	753 (9.6)

제 2 장

무료취업지원

1. 사업 개요

무료취업지원사업이란 건설현장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구직자)와 건설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주(구인자)에게 무료로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취업지원서비스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8월에는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전산망인 '건설일드림넷'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른 취업정보 관련 사이트와 달리 건설일용근로자 중심의 건설현장 관련 일자리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2017년 2월에는 건설일드림넷의 '모바일 앱'을 오픈하였고, 2018년 5월부터 건설일드림넷 기능 고도화를 진행하여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 밖에도,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지원 전담직원 역량강화, 유관기관 협업, 무료노무상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 주요 추진 사업

2018년도에는 건설일드림넷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취업지원 전산망 및 모바일 앱 기능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취업지원센터 전담직원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유관기관(LH, 훈련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구인·구직 개척을 강화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라디오 방송 등 홍보 방법 다각화를 통해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노력

1)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모바일 앱(건설일드림넷) 고도화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일드림넷' 홈페이지('16.8월)와 모바일앱('17.2월)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일드림넷은 언제 어디서나 건설현장 일자리 및 인재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인·구직 정보, 취업알선 기능 등을 제공하는서비스이다.

2018년도에는 회원가입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오프라인에서 구직신청서 작성 시 건설일 드림넷 회원가입 동시 진행)하여 건설일드림넷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퇴직공제 EDI 시스템 연계를 통한 근로자 경력확인 기능과 퇴직공제 건설현장 조회 기능 등을 신설하여 보다 정확한 경력확인을 통한 근로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알선을 실시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개척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 취업지원센터 역량 강화

보다 나은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상담 기법, 취업알선 노하우 등취업지원센터 전담직원의 업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첫째,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 취업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도모하였다. 둘째, 공제회 지사·훈련기관·취업지원센터의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 기관간 원활한 취업지원업무협조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취업지원센터 직원 워크숍, 센터장 간담회 등을개최해 취업지원사업 성공·실패사례, 직업상담 기법, 취업알선 노하우 등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직무능력향상 기회를 제공하였다.



고용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취업지원센터직원 워크숍

3)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 권역별로 취업지원 담당자를 지정해 구인개척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역별 고용개선협의체를 운영해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

둘째,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건설근로자 대상 무료 노무상담서비스를 확대 시행('17년 9개소→'18년 17개소)하여 취업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였다.

셋째, '기능향상지원사업' 운영기관과 연계하여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능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수료생에 대한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병행함으로써 훈련·취업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였다.

4) 취업지원사업 홍보 다양화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합동 홍보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첫째, LH 현장 안전교육 시 취업지원사업을 홍보(홍보 영상 상영, 홍보물 배포 등)하고, 공제회 종합지원이동반의 전국순회서비스를 소개하고 일정을 공유함으로써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합동 홍보를 실시하였다.

둘째, 인터넷 및 공중파 라디오 홍보, 언론 광고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 대국민 홍보, 건설현장·훈련기관·고용센터 등 타겟 홍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병행 실시하였다.

3. 추진현황

취업지원 전산망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기능 고도화, 유관기관(LH, 훈련기관, 공인노무사회 등)과의 협업, 취업지원센터 역량 강화, 홍보 다각화 추진 등을 통해 취업지원사업 인프라를 확충한 결과, 취업알선 실적이 2017년도의 약 27만일에서 2018년도에는 약 31만일로 16.5% 증가하였다.

〈표 21〉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18.12.31 기준, 단위: 일, %)

구분	목표 근로일수(A)	추진실적(B)	달성율(B/A)
2015	16,980	39,464	232.4
2016	82,954	164,970	198.9
2017	154,700	268,767	173.7
2018	223,560	313,152	140.1

제 3 장

관련 사업

1.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추진 및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운영

정부는 건설기능인력의 직업전망 제시를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고, 숙련도에 따른 처우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의 핵심은 산업차원에서 건설기능인별 현장 근로경력, 교육·훈련 이수, 자격증 취득 및 포상 수상 결과 등을 종합 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숙련도에 따른 기능등급을 설정하여, 그에 상응하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2017년 11월에 정부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시행근거가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12월에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건설산업일자리 개선대책' 발표를 통해 제도 도입방안 및 제도시행 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담아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혔다. 2019년 3월 현재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도 도입 및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에 국토부가 주관하여, 고용부, 건설노·사 단체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추진 TF」를 구성·운영하였다. 총 6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에 적용할 60개 통합직종(안) 및 현장경력 인정 방안(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건설기능인 DB를 사전 분석하여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고자, 총 6차례의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산업차원의 체계적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2016년도 9월에 출범한 건설 인적자원개발 위원회(ISC^*)는 2018년도까지 건설 ISC 구성원 간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표성을 강화하여 Sector Council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 ISC(Industrial Skills Council) :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협의체

2018년도 건설 ISC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조사 및 기능수준별 훈련과정 표준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능인력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분석 및 청년층 진입 촉진 방안 연구를 통해 고령화의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청년층 진입 촉진을 위한 단기적 제도 개선 및 중장기적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전략분야 발굴 조사로서, 건설업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을 통해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넷째, NCS 조적미장시공 개선사업,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개발지원 및 특성화고 현장 교육훈련 표준모델 개발지원 등 개별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기 개발된 NCS 조적미장시공 내용을 환경변화에 따라 통·폐합하였고, 건설산업의 일·학습병행제 확 산을 위해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의 개발을 지원하였다.

2. 건설고용지수 산정

공제회는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 중 건 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한다. 2018년에는 종합건설업체 8,347개 사에 대해 '2018년도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 발표했다(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종합심사낙찰제란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발 생하는 저임금, 산재,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도에 도입됐다.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산정되는데, 건설인력 고용지수는 고용창 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에 최대 0.4점의 가점을 부여(발주기관마다 가점은 상이)토록 설계되어 있다.

공제회는 매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실적 및 고용보험 신고 피보험자수, 임금체불 횟수 등 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취합된 자료를 기초로 하 여 업체별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고용탄력성'(=고용 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기성총액 증감률)을 구한 다음 6등급으로 나누어 0점~0.4점까지 차 등 점수를 부여하고, 최근 3년간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최대 0.4점까지 감점하여 최종 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지수의 등급이 높을수록 고용이 많이 증가하고 임금체불은 감소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지수의 등급이 낮을수록 고용은 감소하고 임금체불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결과, 8,347개사 중 상위 825개사(9.9%)는 만점(0.4점)을 받은 반면, 하위 853개사(10.2%)는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최근 3개년 건설고용지수 점수별 업체분포 현황

(단위: 개사, 0.4만점 기준)

구분	계	0.4점	0.32점	0.24점	0.16점	0.08점	0점
2018년도	8,347	825	1,257	2,073	2,083	1,256	853
2017년도	8,297	824	1,238	2,062	2,077	1,243	853
2016년도	8,212	808	1,219	2,035	2,057	1,245	848

2018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대상 업체 수는 2017년도의 8.297개사에서 8.347개사로 50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평균 점수는 0.199점으로 동일했다.

한편,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전년도에 34%가 감소(156개사 →103개사)하였으나 올해는 다시 24%가 증가(103개사→128개사)하였다.

〈표 23〉 최근 3개년 건설고용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감점 업체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감점업체	387	156	103	128
증감률	_	_	△34	24

300억 이상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업서비스(건설인력고용지수 코너)를 통해 해당 업체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 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제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3월부터 개정된 계약예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인력고용지수는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 시 사회적 책임지수라는 '가점 항목'에서 공사수행능력 중 일자리 부분의 '배점 항목'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 **그** 장 사업 개요

복지지원사업이란 건설근로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직업인으로 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첫째,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수입이 불안정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본인 앞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의 일부를 대부받아 전·월세 보증금, 자녀 결혼자금, 입원·수술비 마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다. 생활자금 대부사업은 1차 사업 ('09.3.2~'12.6.30), 2차 사업('12.11.1~'13.4.30) 그리고 3차 사업('16.10~'18년 현재)으로 구분되며, 건설근로자 본인 앞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 원금의 최대 50%까지 신청할 수 있고, 무이자로 지원된다. 대부기간은 대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은 일시·분할·조기상환 등이 가능하다.

둘째,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직업특성 상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부담 없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연중 가입신청 등을 통해 선정된 근로자 5천 명이고,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사망, 상해후유장해, 암진단비, 암수술급여, 암입원급여,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골절진단, 깁스치료비 등 15개 항목이다.

셋째, 종합건강검진은 건설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높고 근로환경이 열악해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에 착안해 2017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복지서비스다. 검진항목은 일반X선 촬영 및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검진항목 뿐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내시경 등 8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은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장학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서비스로서 2014년부터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이상인 적립 근로자 중에서 2년제 대학생자녀를 둔 경우로 하였고, 대학생 자녀의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지원금액은 100만 원이며,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후 근로자의 적립일수, 자녀의 성적 등을 토대로 선정하여 지급한다.

다섯째,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종합건강검진과 더불어 2017년 부터 추진 중인 복지서비스로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자녀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실시하였다. 지원대상은 한국장학 재단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대출의 직전학기에 발생한 이자 금액이다.

여섯째, 결혼·출산 지원금은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정책에 맞춰 실시하는 복지서비스로서, 2010년에 시작됐다.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나아가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을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혼(혼인신고일 기준) 및 출산(출생신고일 기준)한 피공제자 중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에 100일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다. 결혼지원금은 40만 원이고, 출산지원금은 첫째의 경우 20만원, 둘째의 경우 30만원, 셋째의 경우 40만원으로 각각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일곱째,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공근로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건설 기능인의 사기 진작 및 직업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건설기능인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공제회에서 2009년에 발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2차 기본계획 세부 과제의 효과적 추진 방안」보고서에서 처음 제안한 것을 당시 국토해양부가 받아들여 2010년에 기념일로 지정했다. 기념일은 '11월 22일'로 정해졌는데, 그 이유는 '11'은 '서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고, '22'는 '허리를 굽혀 앉아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직업훈련교사 등의 개인분야 그리고 퇴직공제 이행우수 사업주 등단체분야로 나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여기에서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게 훈장, 포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2010년 제1회 기념식에서는 25명에게 표창이수여됐으나, 2011년부터는 훈장 및 포장이 추가됐고, 2018년에는 34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여덟째, 건설근로자 가족힐링캠프는 건설현장의 작업 특성 상 상대적으로 가족여행 기회가 적은 건설근로자에게 가족 1인을 동반한 2박 3일의 여행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서,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지원대상은 사연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설근로자다. 동 사업이시작됐던 초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립 근로자 중 8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 접수하고 노동단체 추천 근로자의 경우 건설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근래에는 사업취지를 살려 공모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연이담긴 참가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여행 중 공제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근로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고 있다.

아홉째, 2010년부터 사진공모전 및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직업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 및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를 주제로 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 후, '건설기능인 사진전시회'를 통해 수상작을 전시한다.

제 2 장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현황

2018년도에 추진한 복지지원사업의 주안점은 복지신청 자격을 일원화하여 수혜자가 예측 가능한 복지를 실현함과 동시에 복지 수혜대상을 기존 장기적립자 중심에서 현업자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또한 건설근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지원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환류활동을 진행하였다.

1. 생활안정 및 금융지원

가.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대부사업은 1차('09.3.2~'12.6.30)와 2차('12.11.1~'13.4.30) 그리고 3차 사업('16.10~'18년)으로 구분된다. 3차 대부사업은 동절기 일자리 감소와 임시·일용 고용형태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다시 시작되었다. 기존 대부사업의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통해 '신청사유'를 선정하여 목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신청 사유에는 ① 자녀결혼자금 지원, ②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③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④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주거 목적의 전·월세 보증금, ⑤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⑥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한 생활안정 대부의 사유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771건에 대해 36,014백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대부신청 사유는 주택구입·전월세, 입원·수술, 대학생 자녀학자금 순이었다.

〈표 24〉 생활안정대부 지급현황

('18.12.31 기준, 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건 수	22,771	2,408	8,809	11,554
지급액	36,014	3,499	13,362	19,153
평균지급액	1,582	1,453	1,517	1,658

나. 건설근로자 맞춤형 금융상품

건설근로자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고정적으로 소속된 회사가 없어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기존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을 중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상품(전북은행 체인지업론, 2016년)과 별도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서가 없어 도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만으로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상품(하나은행 새희 망홀씨, 2017년)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대환대출상품은 551건(6.049백만 원), 신용대출상품은 476건(2.695백 만 원)을 제공하였다.

2. 건설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가.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직업특성 상 위험도가 높아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특성에 맞는 보험 상품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부담 없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단체 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다. 가입 희망신청 등을 통해 피보험자를 선발하여 단체보험에 가입 시키고 골절, 상해,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장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1년에 3,000명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8년간 피보험자 37.013명 을 가입시켰고 2,127건에 대해 약 29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가입방식을 변경하여 피보험자 5.013명 전원을 신청자로 가입시켰고, 전년대비 수혜율이 증가하였다.

〈표 25〉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추진 현황

('18.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총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피보험자	37,013	3,000	5,000	6,000	1,000	5,000	6,000	6,000	5,013
보험료	4,632	360	549	600	197	697	839	730	660
보험기간	_	'11. 3. 1 ~'12. 2.29	'12. 3. 1 ~'13. 2.28	'13. 3. 1 ~'14. 2.28	'14. 3. 1 ~'15. 2.28		'16. 3. 1 ~'17. 2.28	'17. 3.31 ~'18. 3.30	분기별 가입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험금 지급실적	2,127건 (2,899백만 원)	132건 (132백만 원)	266건 (538백만 원)	361건 (743백만 원)	102건 (251백만 원)	296건 (292백만 원)	242건 (317백만 원)	440건 (339백만 원)	288건 (229백만 원)

나.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산업 특성상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며, 분진·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조기 질병관리의 필요가 절실한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의 기회를 주기 위해 2017년에 신규로 발굴하여 시행된 복지서비스다. 전국에 16개 검진센터를 운영 중인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 2018년 944명을 포함하여 총 1,902명에게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내시경 등이 포함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했다.

3. 건설근로자 자녀교육 지원

가.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장학지원금'

건설근로자의 자녀에게 학습보조비 성격의 장학금을 지급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복지서비스다.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후 근로자의 적립일수, 자녀의 성적 등을 토대로 선발하여 장학지원금을 지급하였다. 1인당금액은 2014년과 2015년에는 2백만 원이었는데, 2016년부터 1인당 금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지급인원을 늘렸다. 5년간 지급인원은 총 770명이었고 지급금액은 총 8억 6천만 원이었다.

〈표 26〉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추진 현황

('18.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총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급인원	770	30	60	160	220	300
1인당 금액	_	2	2	1	1	1
총 지급금액	860	60	120	160	220	300

주: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고등학생 자녀 1,304명을 대상으로 872백만 원을 지급하였음.

나.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자녀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직전 학기에 발생한 대출등록금의 이자 발생액을 한국장학재단에 지급했다. 동 사업은 2017년에 신규로 발굴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업을 위하여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동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2017. 3.17)했다. 지난 2년 간 총 486명에게 약 2천8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며, 2018년에는 178명에게 1,604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였다.

다.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협성장학금' 추천

동 장학금은 (재)협성문화재단의 재원으로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소득수준과 성적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에게 (재)협성문화재단에서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학습보조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어 2018년까지 8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총 337명에게 약 17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33명에게 2억 여 원이 지급되었다.

〈표 27〉 건설근로자 협성장학금 추진 현황

('18.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총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급인원	337	48	63	57	32	29	39	36	33
1인당 금액	_		등록금 전약	†	등록	금 전액 +	학습보조금	(학기당 50)만 원)
총 지급금액	1,769	307	216	231	177	170	232	230	206

라. 건설근로자 '고교생자녀 인터넷 수강' 지원

건설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업체인 「스카이에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등학생 자녀에게 온라인 무료 수강권 2과목(100명) 및 30% 할인쿠폰 (100명)을 제공했다. 2018년에는 1,076명에게 수강권을 제공하였고, 2014년부터 총 3,951명이 참여했다.

〈표 28〉 고등학생 자녀 무료 인터넷 수강 지원 추진 현황

('18.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412	29	30	31	32	34	35	36	37	37	37	37	37
2015	578	20	21	21	22	49	58	63	64	65	65	65	65
2016	860	65	41	43	44	67	70	83	86	87	87	87	100
2017	1,025	100	14	64	64	8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8	1,076	100	44	55	7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수강인원은 매월 수강 중복인원을 포함하여 산정

4. 건설근로자 가족친화 지원

가.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나아가 청년 층의 건설업 취업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 내에 결혼(혼인신고일 기준) 및 출산(출생신고일 기준)한 피공제자 중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에 100일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다. 결혼지원금 은 40만 원이고, 출산지원금은 첫째의 경우 20만 원, 둘째의 경우 30만 원, 셋째의 경우 40만 원으로 각각 1회에 한해 지원한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결혼지원금은 1,920명에게 약 6억 3천만 원을 지급했고, 출산지 원금은 2,931명에게 약 7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1,356명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표 29〉 결혼·출산 지원금 지원 추진 현황

('18.12.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종 류				
구분	예산	겨	I	결혼지	[원금	출산지원금		
	에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756	4,851	1,403.4	1,920	632.9	2,931	770.5	
2010	300	28	8.4	8	2.4	20	6.0	
2011	30	42	12.6	13	3.9	29	8.7	
2012	18	34	10.2	9	2.7	25	7.5	
2013	255	850	255.0	232	69.6	618	185.4	
2014	127	414	124.2	174	52.2	240	72.0	
2015	180	616	180.0	278	83.4	338	96.6	
2016	180	624	179.9	278	83.4	346	96.5	
2017	210	887	196.5	359	107.7	528	88.8	
2018	456	1,356	436.6	569	227.6	787	209.0	

나. 건설근로자 '가족 힐링캠프' 운영

건설현장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가족여행 기회가 적은 건설근로자에게 가족 1인을 동반한 2박 3일의 여행기회를 제공했다. 여행 중 공제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소개하기도 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도 했으며, 참여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동 사업이 시작됐던 초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립 근로자 중 8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거나 노동단체 추천 근로자의 경우 건설노 조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근래에는 공모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연이 담긴 참가신 청을 받아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2018년에는 90명이 가족 힐링캠프에 참가했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9년 동안 참 가한 누적 인원은 총 711명이었다.

〈표 30〉 가족 힐링캠프 추진 현황

('18.12.31 기준, 단위: 명, 천 원)

구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참가인원	711명	104명	54명	109명	74명	38명	76명	86명	80명	90명
인당 소요액	610	482	422	544	528	480	536	647	835	898
행사장소	-			제주특별	별자치도			제주 (1차) 상해 (2차)	일본 규슈	일본 오사카

5.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가.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종합지원 이동상담 버스 2대를 활용하여 주중 매일 새벽인력시장과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퇴직공제 적립내역 및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2018년에는 새벽인력시장 242개소와 건설현장 349개소에서 총 15,452명의 근로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단순 적립내역 안내에서 퇴직공제 근로내역 축소신고를 받는 심층상담 으로 개선하여 총 122건의 축소신고를 접수하였다.

〈표 31〉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현황

('18.12.31 기준, 단위: 명, 개소)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용인원		116,816	5350	6,962	9,646	19,782	19,885	19,327	20,412	15,452
퇴임제 축산고 잠 간수		122	-	-	_	_	_	_	_	122
바므하자	새벽시장	2,519	160	219	249	471	462	466	250	242
방문현장	건설현장	2,412	146	175	199	380	379	380	404	349

나. 상담환경 개선 및 다양한 홍보활동

상담의 깊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담환경을 개선하였다. 전국 지사·센터에 상담전용 노트북 및 전화기를 설치하였고, 구로·원주·안동·광주·전주 5개의 지사와 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상담전용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내 전광판 및 공공게시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건설현장과 새벽인력시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명함을 배포하였다. 다양한 홍보활동 및 상담환경 개선으로, 전년 대비 43.2% 증가한 1,822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32〉 노무·건강 등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실시 현황

('18.12.31 기준, 단위: 명, %)

구 분	계	노무	건강(심리)	재무	외국인	취업
2014	158	21(13.3)	81(51.3)	_	46(29.1)	10(6.3)
2015	867	439(50.6)	229(26.4)	22(2.6)	148(17.1)	29(3.3)
2016	854	583(68.3)	132(15.4)	48(5.6)	91(10.7)	-
2017	1,272	668(54.2)	344(27.1)	39(3.1)	202(15.9)	19(1.5)
2018	1,822	989(54.3)	517(28.4)	41(2.3)	250(13.7)	25(1.3)

6. 건설근로자 직업 이미지 개선

가.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건설기능인은 주택, 공장, 사무실, 병원, 도로, 댐 등 사회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건축 및 기반시설을 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 그리고 잦은 산재 등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높았고 사기도 낮았다. 그 결과 생산물의 품질과 안전은 악화됐고, 젊은 층은 건설기능인으로의 진입을 꺼려 고령 화가 심해졌다.

따라서 건설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킬 계기가 필요했고 건설기능인이 자신 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기능인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2010년에 '건설기능인의 날'을 제정했다. 11월 22일을 건설기능인의 날로 지정하 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건설기능인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나. 정부포상 수여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정부포상 수여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 제업무 담당자, 직업훈련교사 등의 개인분야와 퇴직공제 이행우수 사업주 등 단체분야로 나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게 훈장, 포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2010년 제1회 기념식에서는 25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나, 2011년부터는 훈장 및 포장이 추가됐 고, 2018년에는 34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표 33〉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여 현황

('18.12.31 기준, 단위: 명)

총계				장 관 표 창				
		소계	산업 훈장	산업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	305	68	8	8	26	26	102	135
2010	25	6	_	_	3	3	9	10
2011	34	8	1	1	3	3	9	17
2012	36	8	1	1	3	3	12	16
2013	35	8	1	1	3	3	12	15
2014	35	8	1	1	3	3	12	15
2015	35	8	1	1	3	3	12	15
2016	36	8	1	1	3	3	12	16
2017	35	8	1	1	3	3	12	15
2018	34	6	1	1	2	2	12	16

다. 사진공모전 및 사진전시회 개최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근 로자를 주제로 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 후, 수상작을 모아 찾아가는 '사진전시회'를 개최 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접수된 사진은 총 2,471건인데 그중에서 165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2018년에는 16점의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작에 대한 사진전시회 를 4차례 열었다.

〈표 34〉 사진공모전 추진 현황

('18.12.31 기준, 단위: 건)

구분	총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접수	2,471	264	183	341	207	240	143	468	335	290
수상작	165	19	20	17	17	20	19	18	19	16

〈표 35〉 사진전시회 실시 현황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일정	9.8 ~ 9.9	10.4 ~ 10.5	10.25 ~ 10.30	11.21
장소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건설기술교육원	서울메트로 미술관	건설회관
행사전경			THE RESERVE	

제 **그** 장 사업 개요

자산운용사업이란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운용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와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공제부금을 증식하는 사업이다.

채권 위주로 자산을 구성해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산운 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로 자산운용체계를 구축해 공제부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다.

자산운용은 크게 4가지 원칙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첫째는 '안정성'으로 자산의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손실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고, 둘째는 '유동성'으로 퇴직공제금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는 '공공성'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공제부금의 설치목적과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고, 넷째, '수익성'으로서 공공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며 공제부금의 확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2010년도에 공제부금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다다른 시점에서 기금운용팀을 자산운용본 부로 확대·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했고, 계획수립, 투자실행, 리스크관리 등에 대해 각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토록 함으로써 통제시스템도 강화했다.

제 2 장

주요 추진 사업

2018년도에 추진한 자산운용사업의 주안점은 공제부금 자산 증식을 통해 퇴직공제금의 실질가치를 제고하는 것이었다. 세부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자산운용체계의 이행 및 전술적 자산배분의 활성화, 주식·채권 운용유형 다변화 및 해외투자 확대,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다변화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였다. 둘째, 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리스크 로드맵 설정 및 종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가 포함된 중장기리스크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1.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공제회는 자산운용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규정 및 자산운용지침 (IPS)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수의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 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고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 설정, 연간 부금운용계획(전략적 자산배분안 포함)의 수립 및 변경, 자산운용지침(IPS) 의 제·개정,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이다.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정해 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는 있으나, 위원회 간의 독립적 운영 을 위하여 다른 위원회와 겸임할 수는 없다.

나.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는 개별 투자건 심의, 투자상품 선정 등 투자 의사결정 전반을 담당한다. 심의·의결 사항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자산 관련 상품에 대한 결정 및 변경, 국내외 SOC 및 부동산 등 실물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국내외 M&A 관련 사모펀드 및 기타 대체투자 에 대한 결정 및 변경 등이며, 공제회 투자의 대부분은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되 어 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장 이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외부 위원 의 경우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위 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참석대상 위원을 지명하고 있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 전반에 관한 심의ㆍ의결기구로 서, 주요 심의사항은 위험관리정책 및 전략, 위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지 침 및 성과평가지침의 제·개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정책 및 기준, 자산운용 성과측정 및 평가 에 관한 사항 등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리스 크관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장은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2. 효율적인 자산운용

가.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의 이행 및 전술적 자산배분 활성화

중장기적 관점의 운용전략에 기반을 둔 효율적 자산배분과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한 적정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장기 자산배분안에 따른 전략적 자산배분안의 이행 및 전술적 자산배분의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2018년은 '17년에 수립한 중장기 자산배분안(2018년~2022년)의 첫해로서 2018년 운용계획에 따른 투자비중을 준수함으로써 전략적 자산배분안을 이행하 였다.

또한, 분기·월별*로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특히 하반 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2018년 목표수익률 달성전략"(2018.7월) 등에 따른 전술적 자산배분안을 수립·시행하여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기 존의 자산은용본부 자체 주간회의 외에, 주간 시장점검 회의를 추가 시행 운영하였다.

- * 연간 부금운용계획·세부운용전략(2회), 분기·월별 운용계획 수립(분기 4회/ 월별 12회)
- ** 주식 투자 비중 계획 변경 : 16.7%(연초) → 15.0%(18년 7월) → 12.4%(18년 10월)

〈표 36〉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안 대비 이행 현황(2018.12 기준)

자산군	'18년 계획 비중(A) (허용범위)	'18년 투자 비중(B)	계획 대비(B-A)	2022년 목표비중
주식	16.7%(±6%)	12.5%	△4.2%p	19.1%
채권	61.9%(±10%)	60.8%	△1.1%p	48.4%
대체투자	18.1%(±6%)	19.7%	+1.6%p	29.0%
단기자산	3.3%((±6%)	7.0%	+3.7%p	3.5%

한편, 신규 투자상품 발굴을 위해 내부 운용역간 브레인스토밍 및 시장조사를 실시했고, 외부전문가 제언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산은용본부 워크숍을 통해 2019년 국 내외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전망 및 자산별 은용방안 등의 토의 과정을 거쳐. 이를 기초로 2019년도 연간 부금운용계획 및 자산별 세부운용전략을 수립하였다.

나. 주식·채권·대체투자 자산별 포트폴리오 다변화

2018년도에는 주식·채권 내 운용유형 다변화와 해외투자 확대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였고, 대체투자는 신규 대체상품 발굴 및 투자 집행을 통해 사모투자, 해외 인프라 등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다.

첫째,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주식은 KOSPI200 인덱스형(ETF) 중심에서 절대수익형, 중소형주형, 기타 인덱스형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고, 해외주식은 선진국 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글로벌ETF형 신규투자 등 지역 다변화를 실시하였다.

둘째, 채권의 경우 대내외 시장금리 변화에 대응하여 금리제시형 상품 등 확정금리 채권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국내 매칭형과 글로벌 및 미국 채권 투자를 통해 분산투자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셋째, 대체투자의 경우 사모 투자(국내 절삭공구회사 인수), 해외인프라(LNG터미널, 가스파이프라인) 등 신규 대체상품 발굴 및 투자 집행을 통해 대체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2018년의 신규 투자상품은 12건이고, 기 약정상품을 포함해 총 3,581억 원의 투자를 집행했다. 대체투자 규모는 2017년 4,729억 원에서 2018년 7,290억 원으로 2,561억 원 (+54%) 증가했다.

다.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집중 사후관리로 초과 수익 창출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 점검·보고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상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2018년에는 대체자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관리 체계 운영으로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고 회수율을 극대화해 중점관리상품 수익률 35.2%를 달성했다.

버드우드의 경우 미 동의 및 공매 시 회수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전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고, 당초 채권변제금액이 40.5억 원이었으나 선순위 신탁채권자와 추가합의를 통해 46억 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아일랜드캐슬은 1심 선고결과('18.8.29) 신탁사 배당금 대부분이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대주단에게 재배당되었고, 신탁사 이의신청으로 2심이 진행 중이나, 1심 결과가 유지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경정된 배당액(약 38억원)은 투자원금 대비 15.2% 수준으로 35억 원의 추가확보가 가능하다.

일반 관리상품으로서 기 투자상품(25건) 및 신규 투자상품(12건) 7,290억 원을 원활하게 운영했으며, 중점 관리상품에 대한 상시 현황 관리, 중요권리 확보, 법적 조치 진행 등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3.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가. 자산다변화를 고려한 리스크관리 체계 개선

부동산, 사모 및 인프라 등 다양한 유형의 대체투자상품 및 해외주식 등 신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하는 등 자산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신규유형에 대한 한도설정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투자규모 증가, 자산유형 다변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배분계획을 고려하여 중장기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서 리스크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나. 투자상품 사전/사후검토 강화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팀에서 투자심의위원 전문가집단(Pool) 관리 및 위원 선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선임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업계에 종사하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대체투자의 경우 상품 투자 전·후 단계에서 외부자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개별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많은 자산 등의 경우 현황파악을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다. 자산운용 성과평가

2018년에는 투자상품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및 환류체계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성과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전문 외부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운용부서와 공유하여 투자전략 수립 및 자금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대체투자상품 공정가치 평가

대체투자자산의 경우 장기투자자산이면서 상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적절한 가치의 측정 및 부실화 가능성의 조기 인식 등이 어렵다. 이에 공제회는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 결산 시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조기에 인식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 3 장

추진현황

1. 자산운용 현황

2018년도에는 증시 급락에 따른 수익률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자산을 운용했는데, 운용 수익률은 0.27%로 BM 대비 0.41%p를 상회하였고, 9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운용 수익률은 주식시장 급락(연초대비 KOSPI 17.28%p 하락, MSCI ACWI 11.18%p 하락)의 영향으로 목표수익률 3.01%보다 2.74%p 하회한 실적을 나타냈다. 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현금 성 1.86%, 주식 $\triangle 16.14$ %, 채권 2.42%, 대체투자 7.72%를 기록했다.

투자 유형별 성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주식의 경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부각, 미중 무역 분쟁, 연준의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지며 국내 $\triangle 16.56\%$, 해외 $\triangle 8.92\%$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투자유형 내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분산투자를 통해 BM 대비 국내 0.72%p, 해외 2.92%p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채권의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내 손익변동성 축소 및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하며 2.42%의 수익률을 기록, 목표수익률(1.98%)은 초과 달성하였으나, 하반기 예상외 시장금리 하락으로 BM 대비 성과는 0.63%p 하회하였다. 그 외 단기현금성 자산의 경우 수시물 운용 기간 조정을 통해 1.86% 수익률을 기록, BM 대비 0.25%p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체투자는 신규 상품의 발굴 투자 및 기존 자산에 대한 매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률 7.72%, BM 대비 3.37%p 상회하는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

〈표 37〉 공제부금 자산운용 현황

('18.12.31 기준, 단위: 억원, %, %p)

78	ETITIAL		운용규모		투자비중	O Q A OI	ᄉᅁᄅ	
구분	투자자산	투자원금	평가액	평잔	(평가액기준)	운용수익	수익률	
	주식	5,000	4,623	5,602	12.5	△942	△16.14	
중장기	채권	21,975	22,526	22,120	60.8	532	2.42	
	대체투자	7,120	7,290	5,674	19.7	456	7.72	
	계	34,095	34,439	33,396	93.0	46	0.18	
단기	현금성	2,583	2,588	2,525	7.0	47	1.86	
근/1	계	2,583	2,588	2,525	7.0	47	1.86	
자신	난총계	36,678	37,027	35,921	100.0	93	0.27	

2. 운용 규모 및 수익률

공제회의 자산운용 규모는 설립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2년 1천억 원 달성을 시작으로 2007년 및 2008년 공제부금 일액 증가, 2010년 민간공사 등 의무가입 대상 공사 확대에 따른 부금납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09년 최초로 운용규모 1조 원을 돌파한후, 2013년 2조 원 도달에 이어 2016년 3조 원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약 3조 7천억 원의 운용 규모와 0.2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림 6〉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표 38〉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18.12.31 기준, 단위: 억원, %)

연도	운용 규모	수익률	연도	운용 규모	수익률
1998	1	7.77	2009	11,490	11.05
1999	72	7.77	2010	14,128	6.02
2000	334	8.54	2011	16,104	1.63
2001	725	6.04	2012	18,515	2.10
2002	1,172	5.02	2013	22,152	3.61
2003	1,844	4.76	2014	23,766	3.57
2004	2,885	4.52	2015	27,065	3.11
2005	4,178	5.32	2016	30,404	1.95
2006	5,539	6.27	2017	34,775	4.24
2007	7,404	6.96	2018	37,027	0.27
2008	8,624	△6.56	2010	37,027	0.27

또한, 부금회계로 운용해 온 공제부금은 「미확인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운영수익」 특별회 계가 2014년 1월 1일부로 설치됨에 따라 미회수공제증지 판매원금과 이자적립금 등을 분 리하여 특별회계로 운용하게 되었다. 2018년의 특별회계의 운용 규모는 2,180억원이다.

〈표 39〉 특별회계 운용 규모 추이

('18.12.31 기준, 단위: 억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운용 규모	2,034	2,070	2,114	2,188	2,180





0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계

제1장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제2장 퇴직공제사업 운영실적

이용자 안내

- 1. 본 자료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수행하는 퇴직공제사업으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공제회에 신고된 내용만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전체 건설현장에 대한 통계 수치로는 한계를 지니므로,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 상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가 당해연도 건설현장에서 일한 모든 날이 아니라,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만을 의미합니다.
 - (예시) 근로자 A씨가 2018년도에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50일을 일한 후 퇴직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건설현장으로 이동하여 100일을 일한 경우 2018 년도 A씨의 적립일수는 50일이 됩니다.
 - 또한, 적립일수는 근로자의 실제 작업시간을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 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인 B씨가 2018년 5월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 장에서 10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B씨의 퇴직공 제 적립일수는 하루에 1.5일로 환산하여 15일이 되며, 달력으로 하는 날짜 계산 법과는 다릅니다.

2. 자료 추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매월 EDI와 서면신고를 통해 공제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 으로 근로자의 '근로 연월' 기준으로 추출하였습니다.
- 직종은 당해연도 말 기준으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공제회에 신고한 적립일수 자료를 근로자별로 집계한 후 가장 많은 적립일수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 하나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자료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사업장의 특성은 공사 유형별, 지역별, 규모별, 공종별, 발주자별 가입 현황을 중심으로 시계열로 분류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종별 현황을 중심으로 시계열로 분류하였습니다.
- 분류가 불가능한 자료는 '기타'에 포함하여 표시하였습니다.

- 3. 동 자료집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 건설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
 - 건설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 사하는 자
 - 퇴직공제: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 도달 등의 경우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피공제자: 퇴직공제에 가입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 적립일수와 짝을 이뤄 기술할 때 '적립근로자'라고도 표기함
 - 공제부금: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할 경우 건설사업주가 1인 1일당 5,000원*씩 계산하여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 *1일 공제부금액: 5,000원(근로자 적립분 4,800원+사업·운영비 200원)
 - 퇴직공제금: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기간동안 납부된 퇴직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
 - 적립일수: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건설사업주가 적립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 그 명의로 적립된 공제부금 납부일수
 - 근무기간: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적립일수가 처음 신고된 때부터 마지막 신고된 때까지 역법에 따라 계산한 기간
 - 투입인원: 건설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그 날의 인원 수
 - 직종: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며, 그 복잡함과 책임의 정도가 다른 직무의 계열
 - 공종: 건설공사의 내역을 구성하는 주요한 공사의 종목
- 4. 퇴직공제금 청구 관련, 최소한의 요건이 되는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공제부금 납부월수는 납부 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 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은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에 해당됨

-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청구 권이 발생하지 않음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건설업에 종사한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 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해야 함

5. 자료 추출 결과 지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유량(flow) 지표에는 적립일수, 신규가입자수, 퇴직자수, 근무기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 적립일수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공제부금을 납부한 일수 기준임.
 - 신규가입자수는 당해연도에 처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의 수를, 퇴직자수는 근로자가 그 동안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더 이상 건설일을 하지 않게 된 사람의 수를 의미함.
 - 근무기간은 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적립일수가 신고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신고된 때까지의 기간 기준임.
 - 퇴직공제금 지급현황은 당해연도 1년동안 퇴직공제금을 접수한 후 지급까지 완료 한 사안을 기준으로 함.
- 저량(stock) 지표에는 피공제자 현황,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현황 및 준공사업장 현황 이 있습니다.
 - 피공제자는 당해연도에 퇴직공제 가입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현황은 당해연도에 시공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준공사업장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준공처리가 완료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6. 통계 수치는 향후 자료 보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본 사업연보는 발간과 동시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1. 건설경기 동향

고찰의 필요성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 한다)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크게 퇴직공제, 고용지원, 복지지원, 자산운용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본 공제회 사업연보는 2018년도에 공제회가 수행한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경기 및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업의 정책대상이자 출발점 그리 고 추진 실적을 좌우하는 것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규정짓는 가 장 중요한 요인은 '건설경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력의 수요를 생산물에 대한 파 생수요(derived demand)라고 부른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건설생산물에 대한 수요로부 터 파생되어 나온다는 의미다. 요컨대, 공제회의 사업이 활성화될지 여부 또는 추진 실적의 증감 은 기본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 상황에 따라 규정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은 다시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공제회가 수행한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를 둘러싼 건설경기 동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1

가. 개요

건설생산물의 수요 및 공급의 활성화 정도를 건설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건설경기의 상승 또는 하강을 알려주는 건설경기지수를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로 구분할 수 있다. 2 동행지수

¹ 주요 통계는 이홍일·박철한(2018.11), 2019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² 시사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2017.7.11. 검색)

(Coincident Index)란 현재의 경기 상태 및 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지수를 의미하고, 선행지수(Leading Index)란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건설관련 지표 중 건축허가나 건설수주 활동이 건설시공 활동에 앞서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허가면적 통계나 건설수주통계가 건설투자의 선행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설공사 실적을 측정한 건설기성액은 건설투자의 동행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건설수주란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금액과 납기 등으로 표현된다. 3 건설투자란 넓은 의미로는 자본으로서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 또는 건축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의 각 측면에서의 자본 투하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건축 생산에 있어서의 투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건설기성이란 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통계로서 조사대상 기간인 한 달 동안 시공한 공사실적을 조사한 것이므로 해당 월에 실행된 건설투자를 의미한다. 퇴직공제사업과 관련해예를 들어본다면, 피공제자수의 동행지수는 건설투자·건설기성·건설업취업자수 등이고, 선행지수는 건설수주라고 할 수 있다.

나. 건설수주 동향 : 선행지수

최근 20년간 건설수주의 중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세 번의 정점과 두 번의 저점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의 상승세로 1997년에 정점에 이른 후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저점까지 하락한 후 회복되어 2007년에 다시 정점에 도달했다.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의 영향으로 2013년에는 저점에 이르게 되고 다시 상승해 2016년에 정점에 이르렀다. 2017년도의 건설수주액 160.4조원은 사상 최고치인 2016년(164.9조원)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었다. 선행지수인 건설수주의 호조세는 동행지수인 건설투자의 호조세를 선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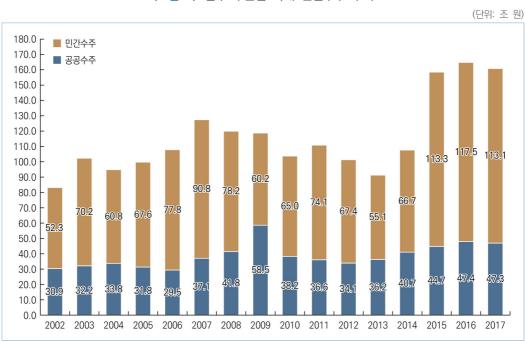


〈그림 7〉 국내 건설수주 중장기 추이

주: 불변금액은 2010년 기준

자료: 대한건설협회(이홍일·박철한(2018.11), 2019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그림 8〉 발주 부문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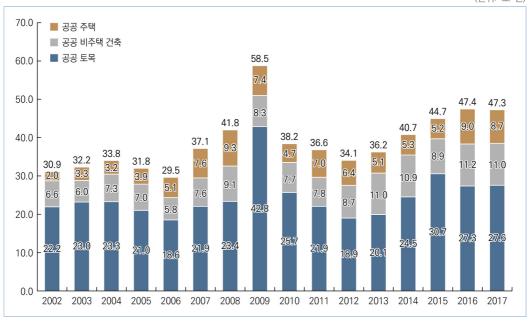


주: 불변금액은 2010년 기준

자료: 대한건설협회(이홍일·박철한(2018.11), 2019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그림 9〉 국내 건설 세부 수주 중장기 추이 : 공공수주 공종별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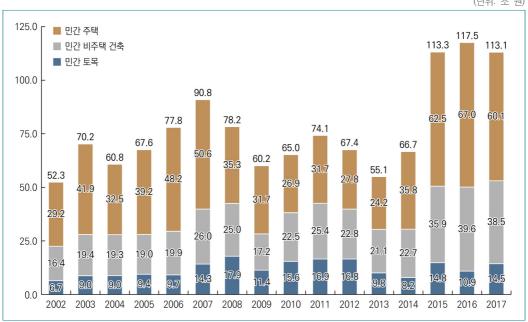


주: 불변금액은 2010년 기준

자료: 대한건설협회(이홍일·박철한(2018.11), 2019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그림 10〉 국내 건설 세부 수주 중장기 추이 : 민간수주 공종별 추이

(단위: 조 원)



주: 불변금액은 2010년 기준

자료: 대한건설협회(이홍일·박철한(2018.11), 2019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다. 건설투자 동향: 동행지수

2018년의 건설투자는 241.04조원(2010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2017년의 251.08조원에 비해 약 10조원이 줄면서 4.0% 감소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상반기에는 0.1% 감소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7.4%나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절대금액 규모로 보면 2015년이나 2016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 40⟩ 건설투자 추이

(단위: 조 원, 전년 동기비 %)

78	2015	2016		2017			2018			
구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211.54	106.24	127.13	233.37	116.55	134.53	251.08	116.43	124.61	241.04
증감률	6.6	9.0	11.4	10.3	9.7	5.8	7.6	-0.1	-7.4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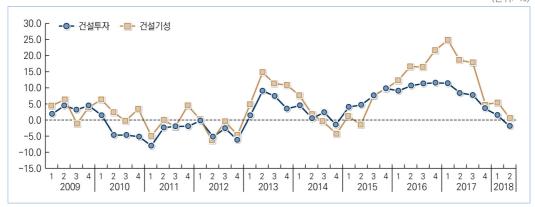
주: 건설투자액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9.1; 이홍일·박철한(2018.11), 2019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라. 건설수주와 건설투자 간 시차

선행지수인 건설수주와 동행지수인 건설투자 간에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양자 간의 시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면 공제회의 각 사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으므로, 그 시차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은 둘 다 건설경기의 동행지수로서 거의 유사한 방향의 움직임을 보인다. 그에 비해 〈그림 12〉에서 보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 간에는 시차가 보이는데,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간의 시차는 약 1년 반 수준이다. 즉, 건설수주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5년 6월경에 최고조에 이르렀다면, 건설투자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2017년 1월경에 정점에 이를 것임을 미리 전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17년 하반기 이후 수주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2019년부터는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임을 짐작케 한다.

(단위: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이홍일·박철한(2018.11), 2019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그림 12〉 건설수주 및 건설기성 순환 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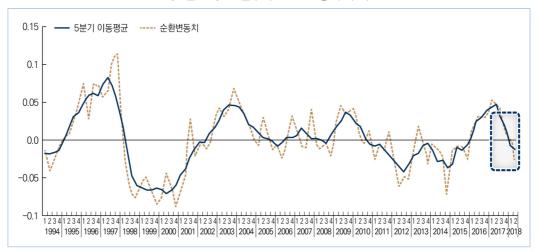


주: 계절 조정된 시계열을 로그화하여 HP 필터로 필터링 수행, 7개월 이동 평균하였으며, 기성과 수주를 함께 보기 위해 기성 변동 폭을 2.5배 확대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이홍일·박철한(2018.11), 2019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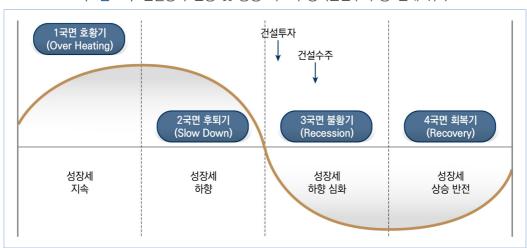
〈그림 13〉과 〈그림 14〉는 순환 변동치 국면 중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건설투자는 2012년 하반기부터 상승국면에 들어서 2016년 이후 호황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이후에는 매우 가파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수주는 2016년에 후퇴국면에 들어와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되었으므로, 1년 반의 시차를 두고 따라오게 될 건설투자는 2017년 하반기 이후 후퇴국면에 진입한 후 2019년에도 불황 국면이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건설투자 순환 변동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이홍일·박철한(2018.11), 2019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그림 14〉 건설경기 선행 및 동행 지표의 경기순환주기 중 현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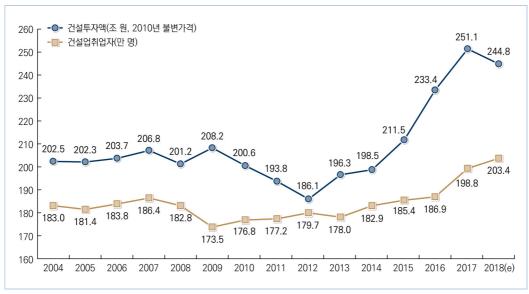
자료: 이홍일·박철한(2018.11), 2019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2. 건설노동시장 동향

가. 건설업취업자 동향

건설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건설업의 임금근로자와 비 임금근로자(자영자 등)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업취업자다. 건설업취업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9개의 직종으로 분류된다.

대체로 건설업취업자는 건설경기의 동행지수인 건설투자와 동일한 증감 추이를 보인다. 양자는 건설업의 생산물 수요와 그 생산물의 파생수요 간의 관계이므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이전과 2013년 이후에는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나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양자의 흐름이 괴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된 정설은 없다.



〈그림 15〉 건설투자 및 건설업취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각각 연간 자료)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인원수 구성비가 높은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010,544명, 48.7%), 단순노무종사자(368,394명, 17.8%), 사무종사자(259,394명, 12.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73,707명, 8.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65,284명, 8.0%) 등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 373,412명이 증가했는데 절대 인원수 측면에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250,973명), 단순노무종사자(106,545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24,480명)의 순으로 증가 규모가 큰 반면, 관리자(-29,955명)와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4,529명)의 경우 감소했다. 그에 비해 2018년과 2017년 1년간의 변화만을 살펴보면, 총 34,741명이 증가했는데 절대 인원수 측면에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34,306명)와 사무종사자(17,270명)의 증가 규모가 컸다.

〈표 41〉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최근 10년간

인원 수(명)											
구분	2009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8–'09		
관리자	100,945	80,031	67,880	73,706	71,763	57,077	60,091	70,990	-29,95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1,780	167,810	178,862	172,597	160,955	182,894	181,561	165,284	3,504		
사무종사자	238,739	220,509	234,432	239,624	228,587	241,272	242,124	259,394	20,655		
서비스종사자	0	1,497	423	2,256	3,041	1,828	547	0	0		
판매종사자	21,441	18,843	15,703	12,564	14,894	20,116	17,011	23,180	1,739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7,197	5,032	7,037	6,462	2,000	1,067	3,164	2,668	-4,52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9,571	823,214	803,063	893,114	926,925	917,983	976,238	1,010,544	250,97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9,227	177,425	175,315	186,163	183,470	183,296	185,692	173,707	24,480		
단순노무종사자	261,849	255,444	272,032	251,376	253,497	325,919	372,991	368,394	106,545		
계	1,700,749	1,749,804	1,754,747	1,837,863	1,845,132	1,931,452	2,039,420	2,074,161	373,412		
구성비(%)											
			一一个	임비(%)							
구분	2009	2012	2013	왕비(%) 2014	2015	2016	2017	2018	'18–'09		
구분 관리자	2009 5.9	2012			2015 3.9	2016	2017		'18-'09 -2.5		
			2013	2014				3.4			
관리자	5.9	4.6	2013 3.9	2014	3.9	3.0	2.9	3.4 8.0	-2.5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9 9.5	4.6 9.6	2013 3.9 10.2	2014 4.0 9.4	3.9 8.7	3.0 9.5	2.9 8.9	3.4 8.0 12.5	-2.5 -1.5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5.9 9.5 14.0	4.6 9.6 12.6	2013 3.9 10.2 13.4	2014 4.0 9.4 13.0	3.9 8.7 12.4	3.0 9.5 12.5	2.9 8.9 11.9	3.4 8.0 12.5 0.0	-2.5 -1.5 -1.5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5.9 9.5 14.0 0.0	4.6 9.6 12.6 0.1	3.9 10.2 13.4 0.0	2014 4.0 9.4 13.0 0.1	3.9 8.7 12.4 0.2	3.0 9.5 12.5 0.1	2.9 8.9 11.9 0.0	3.4 8.0 12.5 0.0	-2.5 -1.5 -1.5 0.0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5.9 9.5 14.0 0.0 1.3	4.6 9.6 12.6 0.1 1.1	3.9 10.2 13.4 0.0 0.9	2014 4.0 9.4 13.0 0.1 0.7	3.9 8.7 12.4 0.2 0.8	3.0 9.5 12.5 0.1 1.0	2.9 8.9 11.9 0.0	3.4 8.0 12.5 0.0 1.1 0.1	-2.5 -1.5 -1.5 0.0 -0.1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5.9 9.5 14.0 0.0 1.3 0.4	4.6 9.6 12.6 0.1 1.1 0.3	2013 3.9 10.2 13.4 0.0 0.9 0.4	2014 4.0 9.4 13.0 0.1 0.7 0.4	3.9 8.7 12.4 0.2 0.8 0.1	3.0 9.5 12.5 0.1 1.0 0.1	2.9 8.9 11.9 0.0 0.8 0.2	3.4 8.0 12.5 0.0 1.1 0.1	-2.5 -1.5 -1.5 0.0 -0.1 -0.3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5.9 9.5 14.0 0.0 1.3 0.4 44.7	4.6 9.6 12.6 0.1 1.1 0.3 47.0	2013 3.9 10.2 13.4 0.0 0.9 0.4 45.8	2014 4.0 9.4 13.0 0.1 0.7 0.4 48.6	3.9 8.7 12.4 0.2 0.8 0.1 50.2	3.0 9.5 12.5 0.1 1.0 0.1 47.5	2.9 8.9 11.9 0.0 0.8 0.2 47.8	3.4 8.0 12.5 0.0 1.1 0.1 48.7 8.4	-2.5 -1.5 -1.5 0.0 -0.1 -0.3 4.1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나.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건설업취업자의 9개 직종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의 3개 직종이 대체로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인데, 건설기술인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건설기능인력'으로 불리거나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건설일용근로자'로 불린다. 이들은 대체로 동일 현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한 공제회 제반 사업의 정책대상과 거의일치한다. 따라서 본 사업연보에서도 건설업취업자 중 특히 건설기능인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돼 왔다. 인원수는 2000년에 1,219천명이던 것이 2009년에 1,171천명으로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1,553천명으로 증가했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정도는 40 대 이상 구성비를 전체 취업자와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2000년에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58.8%이고 전체 취업자의 경우 그것이 47.5%로 나타나 양자 간의 격차가 11.3%p였는데, 2018년에는 각각 80.8%와 64.6%로 그 격차가 16.2%p로 크게 벌어졌다. 2017년의 19.7%p 격차에 비해 약간 축소되기는 했으나, 이것은 향후 건설현장 숙련인력 확보의 지속 가능성 또는 공제회 제반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다.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를 수행할 내국인 건설근로자가 부족해질 경우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한 훈련, 취업, 복지 등 공제회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7년과 2018년 2년째 계속해서 40대 이상 구성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하락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젊은 층의 진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그림 16〉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주: 건설기능인력은 건설업취업자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3개 직종을 합한 개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제 2 장

퇴직공제사업 운영실적

퇴직공제사업은 공제회의 주된 사업인 만큼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018년 까지의 운영 실적을 개관하고 각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특성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공제부금 적립일수, 수납액, 퇴직공제금 지급 등에 관한 특성별 분석은 2017년과 2018년 2개 연도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증감 정도를 비교했다.

1. 개요

가. 총괄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래 2018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개관해보면, 2018년 현재 퇴직자를 제외한 피공제자 누계는 5,364,288명이고, 퇴직자 누계는 706,053명이며, 퇴직공제금 지급액을 제외한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는 3조 5,496억 원이다. 2018년도 한해 동안의 공제부금 적립근로자는 1,649,162명이고 연간 적립일수는 134,320천일이다. 2018년도의 공제부금 납부사업장은 36,515개소이고 연간 공제부금 납부액은 5,950억 원으로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6,294천 원이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액 총계는 5조 1,515억 원이다. 그리고 2018년도의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은 123,884명이고 퇴직공제금 지급액은 3,48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811천 원이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급인원은 706,053명이고 퇴직공제금 지급액 총계는 1조 6,019억 원으로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269천 원이다.

(표 42) 퇴직공제사업 운영 현황(1998~2018)

	구분	합계(누계) (또는 평균)	1998~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	피공제자 누계(명) (퇴직자 제외)	5,364,288	3,631,767	3,949,813	4,221,112	4,461,092	4,753,273	5,103,561	5,364,288
항목	퇴직자 누계(명)	706,053	195,315	253,283	321,396	395,171	481,628	582,169	706,053
누계	공제부금 누계(억 원) (지급액 제외)(D-F)	35,496	18,193	2,979	2,898	2,659	2,907	3,393	2,468
연도별	적립근로자(명)(A)	_	-	1,424,614	1,387,796	1,380,452	1,544,839	1,699,615	1,649,162
공제부금 적립일수	적립일수(천일)(B)	_	_	104,703	107,203	109,694	127,091	143,656	134,320
A-111	납부사업장(개소)(C)	366,474	171,295	31,031	29,762	30,505	32,599	34,767	36,515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액(억 원)(D)	51,515	21,209	4,220	4,442	4,537	5,114	6,043	5,950
납부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 (천 원)(D/C)	14,057	12,382	13,601	14,926	14,872	15,687	17,381	16,294
연도별	지급인원(명)(E)	706,053	195,315	57,968	68,113	73,775	86,457	100,541	123,884
퇴직	지급액(억 원)(F)	16,019	3,016	1,241	1,544	1,878	2,207	2,650	3,482
공제금 지급	1인당 평균 지급액 (천 원)(F/E)	2,269	1,544	2,141	2,267	2,545	2,553	2,636	2,811

주: 연도별 적립근로자의 경우 동일 근로자가 다른 해에도 중복되므로 일정 기간에 걸친 누계는 실적으로서의 의미가 없어 생략함.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나.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퇴직공제제도가 시작된 1998년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피공제자가 1,008명에 그쳤다. 당시 당연가입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는 공공공사 100억 원 이상 그리고 민간공사 500호 이상이었는데 2001년 9월에는 공공공사의 범위가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공제부금 일액의 인상과 당연가입 적용범위 확대와 더불어 퇴직공제제도가 정착하는 데 큰 계기가된 것은 2002년에 시행된 퇴직공제 가입 의무화 및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 것 그리고 2006년에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방식을 종전의 공제증지 첩부방식에서 전산망을 통한 신고방식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피공제자 누계가 처음으로 백만 명을 넘어선시점은 2004년이었고, 2007년에는 약 235만명, 2009년에는 약 309만명, 2013년에는약 400만명을 넘어섰고, 2018년 말에는약 536만명에 이르렀다. 그에비해 퇴직자수는초기에는미미하게 증가하다가 2005년이후 속도가붙기 시작해, 2009년에는 누적퇴직자수가 10만명을 넘어섰고, 2014년부터는 증가속도가매우 빨라지는양상을 보였으며, 2017년에는한 해퇴직공제금지급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말의 누적퇴직자수는 706,053명에 달했다.이러한모습을보이는이유는퇴직공제금의청구요건과관련이

있다.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신고일수가 252일 이상 적립돼야 하고 노후대 책이라는 제도의 성격상 퇴직 시 또는 60세 이후여야 하므로. 제도 초기에는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청구권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림 17〉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추이(1998~2018)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다.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지 추이

연간 공제부금 납부액은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차인 2004년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1,115억 원을 기록했고, 그로부터 4년 후인 2008년에는 2,004억 원, 다시 4년 후인 2012년에는 3,431억 원, 이듬해인 2013년에는 4,220억 원, 2018년에는 5,930억 원에 이르렀다. 퇴직공제금 지급액도 2004년에는 128억 원이던 것이 2013년에는 1,241억 원 그리고 2018년에는 3.48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6,043 5,930 40,000 연간 퇴직공제금 지급액(좌축)(B) (억 원) 6.000 -○- 연간 공제부금 납부액(좌축)(A) 35,000 ●・ 납부액과 지급액의 격차(좌축)(A-B) 5,114 -▲-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지급액 제외)(우축) 33,030 5,000 30,000 4,537 29,637 4 442 4.220 26.730 25,000 4,000 24,071 3,431 3.393 3.482 **△**21,173 2,907 20,000 2.898 3,000 2,659 2.650 2,538 2.207 15,000 2,448 1,878 2,000 1,658 13.295 1,544 10.000 1,834 10,884 1,514 8,426 1.241 893 1.000 6.591 5,000 144 169 290 384 488 5,078 3,922 181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100원 3,100원 4,100원 4,200원 ('07.1) ('08.1) ('12.4)공공 100억 원 이상 공공 50억 원 공공 10억 원 공공 3억 원 공공 5억 원 당연가입 민간 500호 이상 민간 200호 민간 200호 또는 100억 원 민간 500호 민간 300호 ('01.9)('04.1)('08.1)('10.10)

〈그림 18〉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지 추이(1998~2018)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향후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의 증가 속도는 공제부금 납부액과 퇴직공제금 지급액 간의 격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클 경우 공제부금 누계치는 계속 증가할 텐데 격차가 클수록 증가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격차가 준다면 증가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반대로 후자가 더 커진다면 그때부터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양자 간의 격차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3,393억 원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지급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448억 원으로 낮아졌다. 2018년 현재 지급액을 제외한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는 3조 5,478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상승하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 앞으로도 공제부금 적립액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252일 미만 적립한 피공제자에게도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경우 퇴직공제금의 지급액이 급격히 늘면서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의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공제부금 적립일수

근로자의 근로내역과 관련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시계열 통계는 2005년까지는 연도 별로 집계하지 못하고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실적만을 살펴볼 수 있다. 2005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2006년에 퇴직공제 근 로내역 신고 방식을 전산망으로 전환한 후로는 피공제자의 근로내역이 발생한 시점을 알 수 있지만,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복지수첩에 근로일수만큼의 공제증지를 첩부하는 방 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근로자별 증지 매수에 대한 정보만 존재할 뿐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복지수첩을 공제회로 반납해 전산망에 입력할 때 근로자별로 수첩에 첩 부된 총 매수만 입력됐고, 2005년까지의 적립근로자 수 또는 적립일수를 연도별로 구분하 여 확인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근로내역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전산화한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

적립근로자는 2006년에 1,014,942명에서 2018년에는 1,649,162명으로 1.6배 증가했 으며, 동 기간 중 적립일수는 69,467천일에서 134,320천일로 1.9배 증가했다. 전자에 비해 후자의 증가 배율이 더 큰 이유는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로 동일한 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2014년과 2015년에는 적립 근로자는 약간 줄어드는데 반해 적립일수는 증가세를 이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동 기간 중 앞에서 본 건설기성은 2014년 일시적으로 약간 감소하나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래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적립일수의 증가 추세가 건설노동시장의 실제 흐름과 더 잘 부합하는 모습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적립일수가 감소세를 보였는데 동 시기에는 미국 서브프라 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국내 건설기성의 흐름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것은 자연스 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9〉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6~2018)



주: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복지수첩에 증지를 첩부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져 근로자별 총 매수는 알 수 있지만 각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연도별로 구분할 수 없음.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표 43〉 연도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7~2018)

연도	적립근로자(명) (A)	적립일수(천일) (B)
평균	1,349,327	97,331
2007	1,127,531	75,192
2008	1,219,371	77,090
2009	1,339,519	84,064
2010	1,219,712	73,825
2011	1,223,374	73,416
2012	1,310,318	85,588
2013	1,424,614	104,703
2014	1,387,796	107,203
2015	1,380,452	109,694
2016	1,544,839	127,091
2017	1,699,615	143,656
2018	1,649,162	134,320

주: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복지수첩에 증지를 첩부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져 근로자별 총 매수는 알 수 있지만 각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연도별로 구분할 수 없음.

또한, 연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연단위의 근로자 및 적립일수의 집계에 대한 통계와 아래에서 기술하는 월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월단위의 집계에 의한 통계는 다를 수 있음.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가. 기본 특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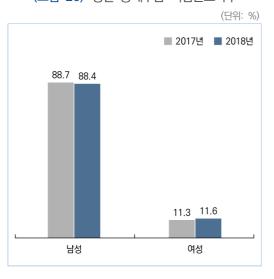
2018년의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는 1,649,162명으로서 2017년의 1,699,615명에 비해 3.0%가 감소했고, 적립일수는 134,319,811일로 전년도의 143,655,804일 대비 6.5% 감소했다.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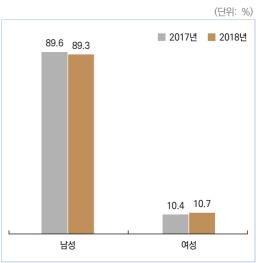
2018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남성 88.4% (1,458,290명), 여성 11.6%(190,872명)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남성 89.3% (119,908,512일), 여성 10.7%(14,411,299일)로 나타났다. 매년 남성이 차지하는 적립근로자수의 비중에 비해 적립일수의 비중이 미미하나마 더 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의 순으로 남성의 경우 3.3%와 6.8% 감소했고, 여성의 경우 0.5%와 3.6% 감소했다.

〈그림 20〉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21〉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표 44〉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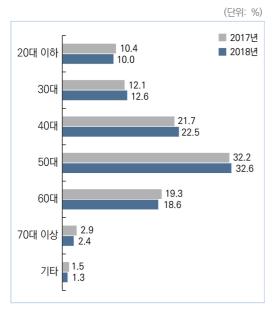
	구분		2017		2018		
게	적립근로자수(명, %)	1,699,615	100.0	1,649,162	100.0	-3.0	
계	적립일수(일, %)	143,655,804	100.0	134,319,811	100.0	-6.5	
남성	적립근로자수(명, %)	1,507,820	88.7	1,458,290	88.4	-3.3	
=3	적립일수(일, %)	128,708,740	89.6	119,908,512	89.3	-6.8	
어서	적립근로자수(명, %)	191,795	11.3	190,872	11.6	-0.5	
여성	적립일수(일, %)	14,947,064	10.4	14,411,299	10.7	-3.6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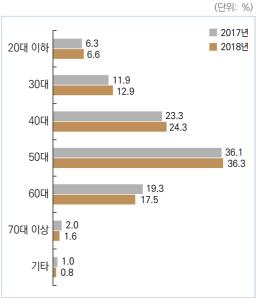
2018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50대 32.6% (538,169명), 40대 22.5%(371,458명), 60대 18.6%(305,934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에도 역시 50대 36.3%(48,787,673일), 40대 24.3%(32,657,721일), 60대 17.5% (23,499,049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30대와 40대 그리고 적립일수의 경우 30대에서 미미하나마 증가했고, 그 이외 연령에서는 감소했는데 특히, 60대 이상의 감소가 컸다.

〈그림 22〉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23〉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표 45〉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7		2018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699,615	100.0	1,649,162	100.0	-3.0
21	적립일수(일, %)	143,655,804	100.0	134,319,811	100.0	-6.5
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명, %)	176,664	10.4	165,498	10.0	-6.3
204 99	적립일수(일, %)	9,107,570	6.3	8,915,613	6.6	-2.1
30대	적립근로자수(명, %)	205,945	12.1	207,583	12.6	0.8
3041	적립일수(일, %)	17,138,175	11.9	17,285,157	12.9	0.9
40EH	적립근로자수(명, %)	368,012	21.7	371,458	22.5	0.9
4041	적립일수(일, %)	33,399,426	23.3	32,657,721	24.3	-2.2
50대	적립근로자수(명, %)	546,875	32.2	538,169	32.6	-1.6
504	적립일수(일, %)	51,849,583	36.1	48,787,673	36.3	-5.9
60대	적립근로자수(명, %)	328,096	19.3	305,934	18.6	-6.8
004	적립일수(일, %)	27,797,132	19.3	23,499,049	17.5	-15.5
70대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48,463	2.9	39,522	2.4	-18.4
70대 여경	적립일수(일, %)	2,880,711	2.0	2,100,501	1.6	-27.1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25,560	1.5	20,998	1.3	-17.8
기니	적립일수(일, %)	1,483,207	1.0	1,074,097	0.8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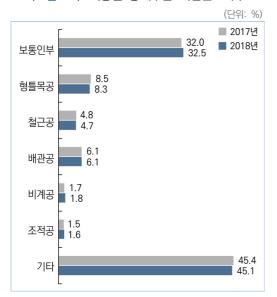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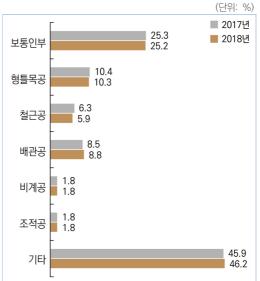
2018년도 공제부금 적립과 관련해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보통인부 32.5%(535,275명), 형틀목공 8.3%(136,979명), 배관공 6.1%(101,062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보통인부 25.2%(33,908,948일), 형틀목공 10.3% (13,789,829일), 배관공 8.8%(11,828,606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조적공(0.8%)만 미미하나마증가했고 형틀목공(-5.2%), 철근공(-4.9%), 배관공(-2.2%) 순으로 감소가 컸고, 적립일수의 경우 모두 감소했는데 철근공(-13.0%), 형틀목공(-7.8%), 비계공(-6.9%) 순으로 감소가 컸다.

〈그림 24〉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25〉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주: 공제회DB의 직종 명칭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 2017년도 연보와 차이가 있음.

〈표 46〉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699,615	100.0	1,649,162	100.0	-3.0
71	적립일수(일, %)	143,655,804	100.0	134,319,811	100.0	-6.5
HEOIH	적립근로자수(명, %)	543,428	32.0	535,275	32.5	-1.5
보통인부	적립일수(일, %)	36,283,434	25.3	33,908,948	25.2	-6.5
처트모고	적립근로자수(명, %)	144,426	8.5	136,979	8.3	-5.2
형틀목공	적립일수(일, %)	14,962,358	10.4	13,789,829	10.3	-7.8
철근공	적립근로자수(명, %)	81,451	4.8	77,423	4.7	-4.9
설근공	적립일수(일, %)	9,081,605	6.3	7,903,882	5.9	-13.0
배관공	적립근로자수(명, %)	103,300	6.1	101,062	6.1	-2.2
메선당	적립일수(일, %)	12,251,602	8.5	11,828,606	8.8	-3.5
비게고	적립근로자수(명, %)	29,680	1.7	29,432	1.8	-0.8
비계공	적립일수(일, %)	2,588,024	1.8	2,409,060	1.8	-6.9
ㅈ 저 고	적립근로자수(명, %)	25,717	1.5	25,926	1.6	0.8
조적공	적립일수(일, %)	2,606,624	1.8	2,450,844	1.8	-6.0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771,613	45.4	743,065	45.1	-3.7
714	적립일수(일, %)	65,882,157	45.9	62,028,642	46.2	-5.8

주: 공제회DB의 직종 명칭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 2017년도 연보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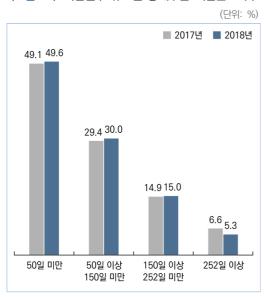
4) 적립일수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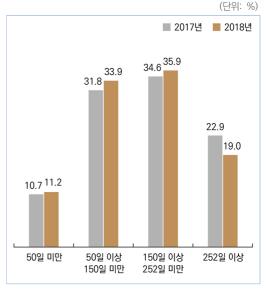
2018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적립일수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50일 미만 49.6%(818,451명), 50일 이상 150일 미만 30.0%(495,504명), 150일 이상 252일 미만 15.0%(247,367명) 등의 순이고, 2018년 한 해에 퇴직공제금 청구요건 중 하나인 252 일 이상을 적립한 근로자는 5.3%(87,840명)다. 각 구간 적립일수 합계의 경우에는 150일 이상 252일 미만 35.9%(48,256,440일), 50일 이상 150일 미만 33.9%(45,535,569일), 252일 이상 19.0%(25,502,322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의 경우 모두 감소했는데 각 각 252일 이상(-21.5%, -22.4%), 150일 이상 252일 미만(-2.5%, -3.0%), 50일 미만 (-2.0%, -2.3%) 순으로 감소가 컸다.

〈그림 26〉 적립일수 규모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표 47〉 적립일수 규모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게	적립근로자수(명, %)	1,699,615	100.0	1,649,162	100.0	-3.0
계	적립일수(일, %)	143,655,804	100.0	134,319,811	100.0	-6.5
ביסו חוחו	적립근로자수(명, %)	834,909	49.1	818,451	49.6	-2.0
50일 미만	적립일수(일, %)	15,386,595	10.7	15,025,480	11.2	-2.3
50일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498,942	29.4	495,504	30.0	-0.7
150일 미만	적립일수(일, %)	45,694,040	31.8	45,535,569	33.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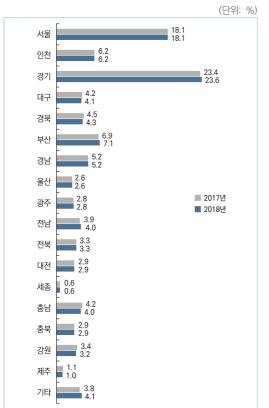
	구분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150일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253,796	14.9	247,367	15.0	-2.5
252일 미만	적립일수(일, %)	49,727,399	34.6	48,256,440	35.9	-3.0
3E301 017F	적립근로자수(명, %)	111,968	6.6	87,840	5.3	-21.5
252일 이상	적립일수(일, %)	32,847,770	22.9	25,502,322	19.0	-22.4

5)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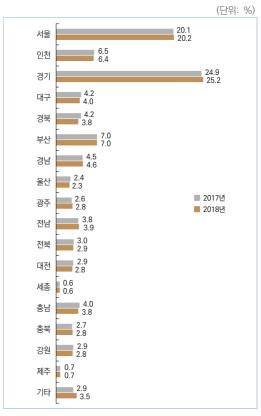
2018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경기 23.6% (389천 명), 서울 18.1%(299천 명), 부산 7.1%(116천 명), 인천 6.2%(102천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경기 25.2%(338십만 일), 서울 20.2%(271십만 일), 부산 7.0%(94십만 일), 인천 6.4%(86십만 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충남(-9.4%), 강원(-8.6%), 경북(-8.3%) 등의 순으로 감소가 컸고, 적립일수의 경우 경북(-15.0%), 충남(-12.1%), 강원(-11.9%) 등의 순으로 감소가 컸다.

〈그림 28〉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29〉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표 48〉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적립피공제자수 (천 명,%)		적립일수 (십만 일,%)		적립피공제자수 (천 명,%)		적립일수 (십만 일,%)		적립 피공제 자수 (%)	적립 일수 (%)
계	1,700	100.0	1,436	100.0	1,649	100.0	1,343	100.0	-3.0	-6.5
서울	307	18.1	289	20.1	299	18.1	271	20.2	-2.6	-6.2
인천	106	6.2	94	6.5	102	6.2	86	6.4	-3.2	-8.5
경기	397	23.4	358	24.9	389	23.6	338	25.2	-2.0	-5.6
대구	71	4.2	61	4.2	68	4.1	54	4.0	-5.1	-11.5
경북	77	4.5	60	4.2	70	4.3	51	3.8	-8.3	-15.0
부산	118	6.9	100	7.0	116	7.1	94	7.0	-1.2	-6.0
경남	89	5.2	64	4.5	86	5.2	62	4.6	-3.1	-3.1
울산	45	2.6	35	2.4	42	2.6	31	2.3	-5.8	-11.4
광주	47	2.8	38	2.6	47	2.8	37	2.8	-0.1	-2.6
전남	67	3.9	54	3.8	66	4.0	53	3.9	-1.2	-1.9
전북	56	3.3	43	3.0	54	3.3	39	2.9	-4.5	-9.3
대전	48	2.9	41	2.9	48	2.9	38	2.8	-1.4	-7.3
세종	10	0.6	8	0.6	10	0.6	8	0.6	-2.1	0.0
충남	72	4.2	58	4.0	65	4.0	51	3.8	-9.4	-12.1
충북	49	2.9	39	2.7	48	2.9	37	2.8	-1.2	-5.1
강원	58	3.4	42	2.9	53	3.2	37	2.8	-8.6	-11.9
제주	19	1.1	10	0.7	17	1.0	9	0.7	-7.8	-10.0
기타	64	3.8	42	2.9	68	4.1	47	3.5	5.9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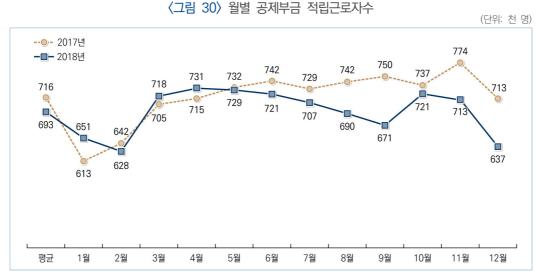
6) 월별(실제 근로 발생월 기준)

2018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월별 추이(실제 근로 발생월 기준)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는 월평균 693,050명과 11,193천일이다. 적립근로자의 경우 4월(731,372명), 5월 (729,369명), 10월(721,080명) 등의 순으로 많은 반면, 2월(627,635명)과 12월(636,585명) 에는 최저 수준에 이른다. 적립일수의 경우 3월(12,292천일), 4월(12,166천일), 5월 (12,147천일) 등의 순으로 많은 반면, 2월(9,210천일)과 9월(9,814천일)에는 최저 수준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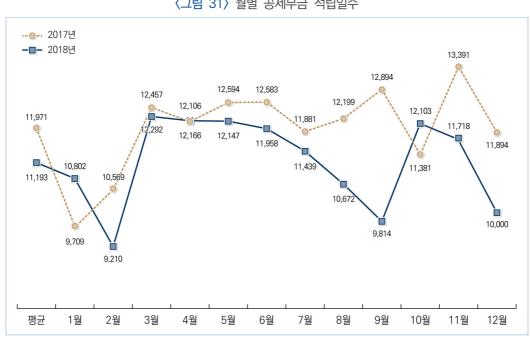
이것은 옥외에서 생산이 이루어져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매월 일하는 근로자는 동일인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1월, 3월, 4월에 증가했고, 적립 일수의 경우 1월, 4월, 10월에 증가했다.



주: 추출 시점이 달라 연간 적립근로자 합계와 적립일수 합계가 다른 자료와 다를 수 있음



〈그림 31〉 월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주: 추출 시점이 달라 연간 적립근로자 합계와 적립일수 합계가 다른 자료와 다를 수 있음

104 | 2018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표 49〉 월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2017		20	18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적립근로자 (명)	적립일수 (천일)	적립근로자 (명)	적립일수 (천일)	적립근로자 (%)	적립일수 (%)	
평균	716,162	11,971	693,050	11,193	-3.2	-6.5	
1월	613,077	9,709	650,560	10,802	6.1	11.3	
2월	641,656	10,569	627,635	9,210	-2.2	-12.9	
3월	705,477	12,457	717,610	12,292	1.7	-1.3	
4월	715,095	12,106	731,372	12,166	2.3	0.5	
5월	732,088	12,594	729,369	12,147	-0.4	-3.5	
6월	741,789	12,583	720,658	11,958	-2.8	-5.0	
7월	728,847	11,881	707,058	11,439	-3.0	-3.7	
8월	741,819	12,199	690,177	10,672	-7.0	-12.5	
9월	750,176	12,894	671,103	9,814	-10.5	-23.9	
10월	737,079	11,381	721,080	12,103	-2.2	6.3	
11월	773,809	13,391	713,388	11,718	-7.8	-12.5	
12월	713,037	11,894	636,585	10,000	-10.7	-15.9	

주: 월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월단위의 집계에 의한 통계와 위에서 기술한 연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연단위의 근로자 및 적립일수의 집계에 대한 통계는 다를 수 있음.

7) 내·외국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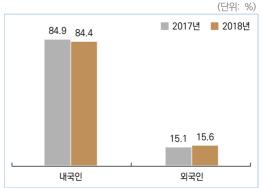
2018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내·외국인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86.3%(1,422,505명)과 외국인 13.7%(226,657명) 그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내국인 84.4% (113,349,044일)과 외국인 15.6%(20,970,767일)로 나타나, 외국인의 적립일수 비중이 적립근로자수 비중에 비해 더 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내국인은 각각 3.3%와 7.0%, 내국인은 0.8%와 3.6% 감소해 내국인의 감소 정도가 훨씬 컸다.

〈그림 32〉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33〉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표 50〉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게	적립근로자수(명, %)	1,699,615	100.0	1,649,162	100.0	-3.0
계	적립일수(일, %)	143,655,804	100.0	134,319,811	100.0	-6.5
내국인	적립근로자수(명, %)	1,471,223	86.6	1,422,505	86.3	-3.3
	적립일수(일, %)	121,896,697	84.9	113,349,044	84.4	-7.0
외국인	적립근로자수(명, %)	228,392	13.4	226,657	13.7	-0.8
	적립일수(일, %)	21,759,107	15.1	20,970,767	15.6	-3.6

나. 신규 가입 피공제자

2018년의 신규 가입 적립근로자수는 364,492명으로서 2017년의 428,973명에 비해 15.0%가 감소했고, 적립일수는 19,461,066일로 전년도의 24,644,088일 대비 21.0%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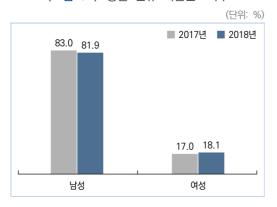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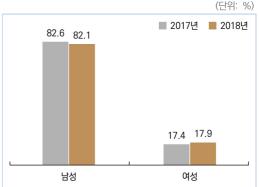
2018년도 신규 가입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남성 81.9% (298,539명), 여성 18.1%(65,953명)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남성 82.1%(15,986,574 일), 여성 17.9%(3,474,492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의 순으로 남성의 경우 16.2%와 21.5% 감소했고, 여성의 경우 9.4%와 19.0% 감소해 상대적으로 남성의 감소가 더 컸다.

〈그림 34〉 성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35〉 성별 신규 적립일수





〈표 51〉 신규 가입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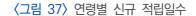
구분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741	적립근로자수(명, %)	428,973	100.0	364,492	100.0	-15.0
계	적립일수(일, %)	24,644,088	100.0	19,461,066	100.0	-21.0
남성	적립근로자수(명, %)	356,169	83.0	298,539	81.9	-16.2
	적립일수(일, %)	20,352,335	82.6	15,986,574	82.1	-21.5
여성	적립근로자수(명, %)	72,804	17.0	65,953	18.1	-9.4
	적립일수(일, %)	4,291,753	17.4	3,474,492	17.9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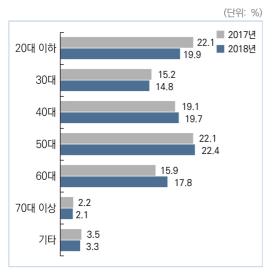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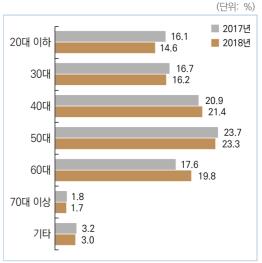
2018년도 신규 가입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50대 22.4% (81,604명), 20대 이하 19.9%(72,369명), 40대 19.7%(71,797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50대 23.3%(4,543,090일), 40대 21.4%(4,160,505일), 60대 19.8%(3,861,866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모두 20대 이하(-23.5%, -28.3%), 70대 이상(-17.9%, -25.9%) 그리고 30대(-17.2%, -23.4%) 등의 감소가 컸다.

〈그림 36〉 연령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표 52〉 신규 가입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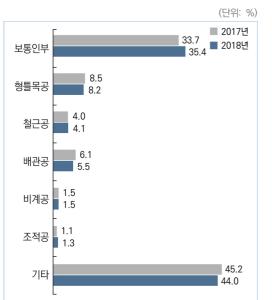
구분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428,973	100.0	364,492	100.0	-15.0
71	적립일수(일, %)	24,644,088	100.0	19,461,066	100.0	-21.0
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명, %)	94,629	22.1	72,369	19.9	-23.5
2041 9101	적립일수(일, %)	3,959,625	16.1	2,839,196	14.6	-28.3
2011	적립근로자수(명, %)	65,280	15.2	54,061	14.8	-17.2
30대	적립일수(일, %)	4,109,313	16.7	3,148,276	16.2	-23.4
40대	적립근로자수(명, %)	81,724	19.1	71,797	19.7	-12.1
404	적립일수(일, %)	5,154,811	20.9	4,160,505	21.4	-19.3
FOLI	적립근로자수(명, %)	94,619	22.1	81,604	22.4	-13.8
50대	적립일수(일, %)	5,850,267	23.7	4,543,090	23.3	-22.3
6011	적립근로자수(명, %)	68,291	15.9	64,721	17.8	-5.2
60대	적립일수(일, %)	4,336,435	17.6	3,861,866	19.8	-10.9
7054 0141	적립근로자수(명, %)	9,516	2.2	7,813	2.1	-17.9
70대 이상	적립일수(일, %)	446,571	1.8	330,730	1.7	-25.9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14,914	3.5	12,127	3.3	-18.7
	적립일수(일, %)	787,066	3.2	577,403	3.0	-26.6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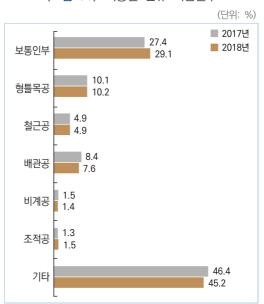
2018년도 신규 가입의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보통인부 35.4%(128,971명), 형틀목공 8.2%(30,009명), 배관공 5.5%(20,137명) 등의 순이고, 적립 일수의 경우 역시 보통인부 29.1%(5,666,204일), 형틀목공 10.2%(1,984,063일), 배관공 7.6%(1,487,792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조적공(1.9%)의 경우 미미하나 마 증가한 반면 배관공(-23.6%), 형틀목공(-17.3%), 비계공(-14.4%) 순으로 감소가 컸고, 적립일수의 경우 배관공(-28.0%), 비계공(-24.9%), 철근공(-21.6%) 순으로 감소가 컸다.

〈그림 38〉 직종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39〉 직종별 신규 적립일수



〈표 53〉 신규 가입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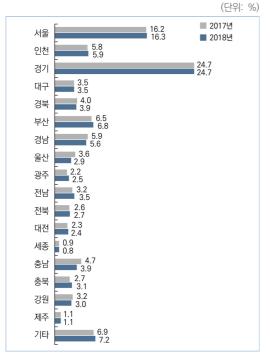
구분		2017	2017		2018		
계	적립근로자수(명, %)	428,973	100.0	364,492	100.0	-15.0	
71	적립일수(일, %)	24,644,088	100.0	19,461,066	100.0	-21.0	
HEOIH	적립근로자수(명, %)	144,618	33.7	128,971	35.4	-10.8	
보통인부	적립일수(일, %)	6,740,446	27.4	5,666,204	29.1	-15.9	
청트모고	적립근로자수(명, %)	36,287	8.5	30,009	8.2	-17.3	
형틀목공	적립일수(일, %)	2,486,488	10.1	1,984,063	10.2	-20.2	
처그고	적립근로자수(명, %)	16,967	4.0	14,941	4.1	-11.9	
철근공	적립일수(일, %)	1,217,422	4.9	953,947	4.9	-21.6	

	구분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배관공	적립근로자수(명, %)	26,344	6.1	20,137	5.5	-23.6
메친궁	적립일수(일, %)	2,066,316	8.4	1,487,792	7.6	-28.0
비게고	적립근로자수(명, %)	6,224	1.5	5,325	1.5	-14.4
비계공	적립일수(일, %)	374,505	1.5	281,200	1.4	-24.9
저고	적립근로자수(명, %)	4,554	1.1	4,641	1.3	1.9
조적공	적립일수(일, %)	316,740	1.3	296,087	1.5	-6.5
7151	적립근로자수(명, %)	193,979	45.2	160,468	44.0	-17.3
기타	적립일수(일, %)	11,442,171	46.4	8,791,773	45.2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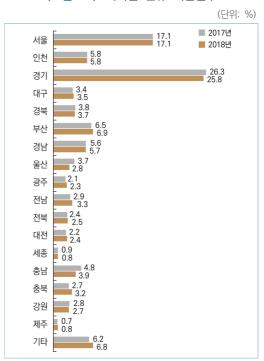
4) 지역별

2018년도 신규 가입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경기 24.7% (90,172명), 서울 16.3%(59,543명), 부산 6.8%(24,913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경기 25.8%(503만 일), 서울 17.1%(333만 일), 부산 6.9%(134만 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울산(-31.7%), 충남(-29.3%), 강원(-21.3%) 등의 순으로 감소가 컸고, 적립일수의 경우 울산(-40.0%), 충남(-37.0%), 세종(-23.8%) 등의 순으로 감소가 컸다.

〈그림 40〉 지역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41〉 지역별 신규 적립일수



〈표 54〉 신규 가입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201	7			201	8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적립근로자 (명, %)		적립일수 (만일, %)		적립근로자 (명, %)		적립((만일,		적립 근로자 (%)	적립 일수 (%)
계	428,973	100	2,464	100	364,492	100.0	1,946	100	-15.0	-21.0
서울	69,475	16.2	422	17.1	59,543	16.3	333	17.1	-14.3	-21.1
인천	24,934	5.8	143	5.8	21,334	5.9	113	5.8	-14.4	-21.0
경기	106,034	24.7	648	26.3	90,172	24.7	503	25.8	-15.0	-22.4
대구	14,808	3.5	83	3.4	12,781	3.5	68	3.5	-13.7	-18.1
경북	17,323	4.0	94	3.8	14,223	3.9	72	3.7	-17.9	-23.4
부산	27,988	6.5	161	6.5	24,913	6.8	134	6.9	-11.0	-16.8
경남	25,241	5.9	139	5.6	20,579	5.6	110	5.7	-18.5	-20.9
울산	15,586	3.6	90	3.7	10,640	2.9	54	2.8	-31.7	-40.0
광주	9,495	2.2	52	2.1	9,251	2.5	45	2.3	-2.6	-13.5
전남	13,516	3.2	72	2.9	12,752	3.5	64	3.3	-5.7	-11.1
전북	11,187	2.6	60	2.4	9,825	2.7	48	2.5	-12.2	-20.0
대전	9,665	2.3	55	2.2	8,799	2.4	47	2.4	-9.0	-14.5
세종	3,657	0.9	21	0.9	3,059	0.8	16	0.8	-16.4	-23.8
충남	20,318	4.7	119	4.8	14,374	3.9	75	3.9	-29.3	-37.0
충북	11,660	2.7	67	2.7	11,244	3.1	62	3.2	-3.6	-7.5
강원	13,754	3.2	68	2.8	10,829	3.0	53	2.7	-21.3	-22.1
제주	4,671	1.1	18	0.7	3,969	1.1	16	0.8	-15.0	-11.1
기타	29,661	6.9	152	6.2	26,205	7.2	133	6.8	-11.7	-12.5

다. 외국인 피공제자

2018년의 외국인 적립근로자수는 226,657명으로서 2017년의 228,392명에 비해 0.8% 가 감소했고, 적립일수는 20,970,767일로 전년도의 21,759,107일 대비 3.6%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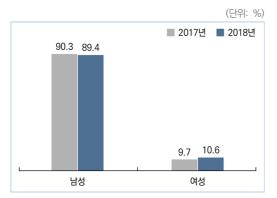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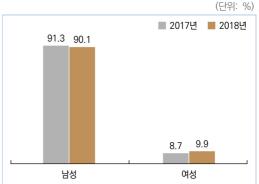
2018년도 외국인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남성 89.4%(202,527 명), 여성 10.6%(24,130명)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남성 90.1%(18,900,728일), 여 성 9.9%(2,070,039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적립근로자수의 비중에 비해 적립일수의 비중이 미미하나마 더 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모두 남성(-1.9%, -4.9%)의 경우 감소한 반면, 여성(9.5%, 9.7%)의 경우 증가했다.

〈그림 42〉 성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3〉 성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55〉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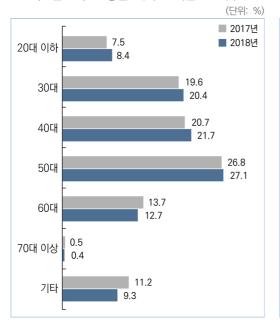
구분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게	적립근로자수(명, %)	228,392	100	226,657	100	-0.8
계	적립일수(일, %)	21,759,107	100	20,970,767	100	-3.6
나서	적립근로자수(명, %)	206,346	90.3	202,527	89.4	-1.9
남성	적립일수(일, %)	19,871,445	91.3	18,900,728	90.1	-4.9
어서	적립근로자수(명, %)	22,046	9.7	24,130	10.6	9.5
여성	적립일수(일, %)	1,887,662	8.7	2,070,039	9.9	9.7

2) 연령별

2018년도 외국인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50대 27.1% (61,529명), 40대 21.7%(49,094명), 30대 20.4%(46,326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에도 역시 50대 29.7%(6,220,980일), 40대 23.9%(5,008,262일), 30대 21.6%(4,521,640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에 60대가 아닌 30대가 위치한다는 점이 내국인과 다른점이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50대 이하에서 증가하고 60 대 이상에서는 감소했으며, 적립일수의 경우 40대 이하에서 증가하고 50대 이상에서는 감소했다.

〈그림 44〉 연령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5〉 연령별 외국인 적립일수

(단위: %) ■ 2017년 7.4 ■ 2018년 20대 이하 8.1 20.3 30대 21.6 22.7 40대 23.9 28.9 50대 29.7 13.5 60대 11.4 0.4 70대 이상 0.2 6.8 기타 5.1

〈표 56〉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ᅰ	적립근로자수(명, %)	228,392	100.0	226,657	100.0	-0.8
계	적립일수(일, %)	21,759,107	100.0	20,970,767	100.0	-3.6
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명, %)	17,020	7.5	19,110	8.4	12.3
204 90	적립일수(일, %)	1,611,468	7.4	1,709,117	8.1	6.1
30대	적립근로자수(명, %)	44,739	19.6	46,326	20.4	3.5
304	적립일수(일, %)	4,424,516	20.3	4,521,640	21.6	2.2
40대	적립근로자수(명, %)	47,379	20.7	49,094	21.7	3.6
404	적립일수(일, %)	4,942,957	22.7	5,008,262	23.9	1.3
EULN	적립근로자수(명, %)	61,143	26.8	61,529	27.1	0.6
50대	적립일수(일, %)	6,286,335	28.9	6,220,980	29.7	-1.0
eoth	적립근로자수(명, %)	31,385	13.7	28,751	12.7	-8.4
60대	적립일수(일, %)	2,932,538	13.5	2,385,809	11.4	-18.6
70대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1,180	0.5	864	0.4	-26.8
70대 이경	적립일수(일, %)	78,803	0.4	51,267	0.2	-34.9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25,546	11.2	20,983	9.3	-17.9
714	적립일수(일, %)	1,482,490	6.8	1,073,692	5.1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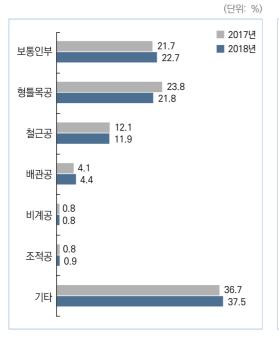
3) 직종별

2018년도 외국인의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보통인부 22.7%(51,483명), 형틀목공 21.8%(49,368명), 철근공 11.9%(26,975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형틀목공 21.7%(4,548,501일), 보통인부 19.6%(4,105,119일), 철근공 14.3%(2,998,668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조적공(18.2%), 배관공(8.1%), 보통인부(3.8%) 등에서 증가한 반면 여타 직종에서는 감소했고, 적립일수의 경우 조적공(19.8%)과 배관공(15.0%)에서 증가한 반면 여타 직종에서는 감소했다.

〈그림 46〉 직종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7〉 직종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57〉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7		2018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228,392	100.0	226,657	100.0	-0.8
Z1	적립일수(일, %)	21,759,107	100.0	20,970,767	100.0	-3.6
H투이터	적립근로자수(명, %)	49,597	21.7	51,483	22.7	3.8
보통인부	적립일수(일, %)	4,160,509	19.1	4,105,119	19.6	-1.3
형틀목공	적립근로자수(명, %)	54,326	23.8	49,368	21.8	-9.1
성트국장	적립일수(일, %)	5,115,638	23.5	4,548,501	21.7	-11.1
철근공	적립근로자수(명, %)	27,710	12.1	26,975	11.9	-2.7
200	적립일수(일, %)	3,371,965	15.5	2,998,668	14.3	-11.1
배관공	적립근로자수(명, %)	9,303	4.1	10,052	4.4	8.1
메건궁	적립일수(일, %)	1,096,257	5.0	1,261,228	6.0	15.0
비계공	적립근로자수(명, %)	1,850	0.8	1,734	0.8	-6.3
<u> </u>	적립일수(일, %)	134,619	0.6	114,102	0.5	-15.2
ㅈ저고	적립근로자수(명, %)	1,764	0.8	2,085	0.9	18.2
조적공	적립일수(일, %)	170,690	0.8	204,541	1.0	19.8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83,842	36.7	84,960	37.5	1.3
기니	적립일수(일, %)	7,709,429	35.4	7,738,608	36.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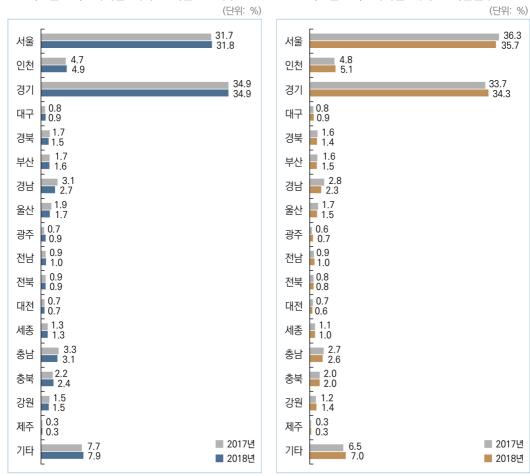
4) 지역별

2018년도 외국인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경기 34.9%(79,216명), 서울 31.8%(72,088명), 인천 4.9%(11,060명), 충남 3.1%(7,0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서울 35.7%(749만일), 경기 34.3%(719만일), 인천 5.1%(106만일), 충남 2.6%(54만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광주(29.2%), 대구(17.5%), 전남(15.5%) 등의 증가가 컸고, 적립일수의 경우 광주(25.0%), 강원(7.4%), 대구(5.9%) 등의 증가가 컸다.

〈그림 48〉 지역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9〉 지역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58〉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2017					201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일, %)		적립근료 (명, ⁽		적립일수 (만일, %)		적립 근로자수 (%)	적립 일수 (%)
계	228,392	100.0	2,176	100.0	226,657	100.0	2,097	100.0	-0.8	-3.6
서울	72,434	31.7	790	36.3	72,088	31.8	749	35.7	-0.5	-5.2
인천	10,660	4.7	105	4.8	11,060	4.9	106	5.1	3.8	1.0
경기	79,662	34.9	733	33.7	79,216	34.9	719	34.3	-0.6	-1.9
대구	1,795	0.8	17	0.8	2,110	0.9	18	0.9	17.5	5.9
경북	3,877	1.7	35	1.6	3,355	1.5	30	1.4	-13.5	-14.3
부산	3,827	1.7	35	1.6	3,674	1.6	31	1.5	-4.0	-11.4

		201	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적립근s (명, ⁽			일수 !, %)	적립근로 (명, ⁽		적립 (만일		적립 근로자수 (%)	적립 일수 (%)
경남	7,194	3.1	62	2.8	6,022	2.7	48	2.3	-16.3	-22.6
울산	4,428	1.9	36	1.7	3,832	1.7	31	1.5	-13.5	-13.9
광주	1,523	0.7	12	0.6	1,968	0.9	15	0.7	29.2	25.0
전남	1,947	0.9	19	0.9	2,249	1.0	20	1.0	15.5	5.3
전북	2,084	0.9	18	0.8	1,991	0.9	17	0.8	-4.5	-5.6
대전	1,539	0.7	15	0.7	1,656	0.7	13	0.6	7.6	-13.3
세종	3,016	1.3	23	1.1	2,959	1.3	22	1.0	-1.9	-4.3
충남	7,464	3.3	59	2.7	7,038	3.1	54	2.6	-5.7	-8.5
충북	5,114	2.2	43	2.0	5,407	2.4	42	2.0	5.7	-2.3
강원	3,520	1.5	27	1.2	3,353	1.5	29	1.4	-4.7	7.4
제주	784	0.3	6	0.3	718	0.3	6	0.3	-8.4	0.0
기타	17,524	7.7	141	6.5	17,961	7.9	147	7.0	2.5	4.3

3. 공제부금 납부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흐름 중 납부사업장 수와 납부액 규모가 이전 흐름에 비해 크게 비약하는 시점이 2009년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와 공제부금의 인상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에 16,784개소이던사업장 수가 2009년에는 24,497개소로 전년 대비 46.0%가 증가했고, 동 시기에 납부액은 2,004억 원에서 2,748억 원으로 37.1%가 급증했다. 2013년 이후에는 대체로 건설기성의증가에 따라 납부사업장과 납부액이 동반 증가했는데 다만, 2014년의 경우 사업장 수는줄었는데 납부액은 늘었고, 2018년에는 사업장 수는 늘었으나 납부액은 감소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누계는 각각 366,474개소와 5조 1,516억 원이고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406만원이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998년의 310만원에서 시작해 2000년에는 2,475만원까지 상승했으나,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소규모 현장으로까지 당연가입 적용범위의 확대와 경기부진의 여파 등이 겹치면서 2011년에는 1,069만원까지 감소했고, 다시 제도의 정착과 공제부금 일액의 인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1,629만원에 이르렀다.

〈그림 50〉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18)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표 59〉 연도별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9~2018)

연도	납부사업장(개소) (A)	납부액(억 원) (B)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B/A)
총합계	366,474	51,516	14.06
1998	32	1	3.09
1999	443	72	16.28
2000	1,074	266	24.75
2001	1,661	409	24.61
2002	2,352	470	19.98
2003	3,296	694	21.05
2004	5,808	1,115	19.20
2005	10,035	1,362	13.57
2006	11,192	1,337	11.95
2007	13,113	1,658	12.64
2008	16,784	2,004	11.94
2009	24,497	2,748	11.22
2010	23,854	2,795	11.72
2011	26,641	2,848	10.69

연도	납부사업장(개소) (A)	납부액(억 원) (B)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B/A)
2012	30,513	3,431	11.24
2013	31,031	4,220	13.60
2014	29,762	4,442	14.93
2015	30,505	4,537	14.87
2016	32,599	5,114	15.69
2017	34,767	6,043	17.38
2018	36,515	5,950	16.29

기본 특성별 분포

2018년의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은 36,515개소로서 2017년의 34,767개소에 비해 5.0%가 증가한 반면, 납부액은 5.950억 원으로 전년도의 6.043억 원 대비 1.5% 감소했으 며,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6.3억 원으로 전년도의 17.4억 원 대비 6.3%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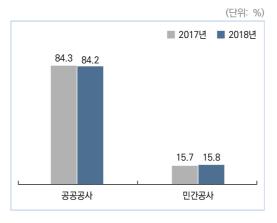
1) 공사유형별(공공여부)

2018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공공 공사 84.2%(30,750개소), 민간공사 15.8%(5,765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민간공 사 70.9%(4,217억 원), 공공공사 29.1%(1,733억 원)로 나타났다. 공공공사의 경우 납부사 업장은 많으나 납부액이 적은 것은 당연가입 적용범위 공사의 규모가 3억 원 이상으로 민간 공사 100억 원 이상에 비해 소규모 현장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업장당 평 균 납부액에 명확히 드러나는데 공공공사의 경우 560만 원인데 비해. 민간공사의 경우 7.310만 원으로 후자가 13배 이상 많았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납부사업장과 납부액이 공공공사의 경우 각각 4.9%와 1.6%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민간공사의 경우 사업장은 5.7% 증가했지만 납부 액은 2.8% 감소했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공공공사의 경우 3.2% 감소한 반면, 민간공 사의 경우 8.0% 감소했다.

〈그림 51〉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표 60〉 공사유형별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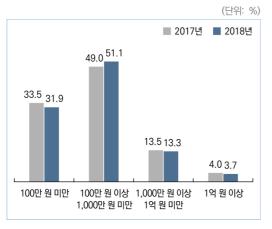
	구분	2017		2018		전년대비 증감률(%)
	납부사업장(개소, %)	34,767	100.0	36,515	100.0	5.0
계	납부액(억 원, %)	6,043	100.0	5,950	100.0	-1.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7.4		16.3		-6.3
	납부사업장(개소, %)	29,315	84.3	30,750	84.2	4.9
공공공사	납부액(억 원, %)	1,706	28.2	1,733	29.1	1.6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5.8		5.6		-3.2
	납부사업장(개소, %)	5,452	15.7	5,765	15.8	5.7
민간공사	납부액(억 원, %)	4,337	71.8	4,217	70.9	-2.8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79.5		73.1		-8.0

2) 납부액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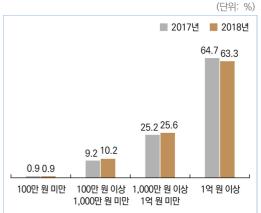
2018년도 퇴직공제부금의 납부액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1.1%(18,671개소), 100만원 미만 31.9%(11,635개소),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3.3%(4,840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1억원 이상63.3%(3,767억원),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6%(1,522억원),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2%(607억원)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억원 이상2억7,520만원,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3,140만원, 1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33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납부사업장의 경우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9.6%)과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3.3%)에서는 증가했으나 그 이외에서는 감소했고, 전체 납부액의 경우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9.8%)에서만 증가했고 그 이외에서는 동일하거나 감소했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100만원 미만(0.2%)에서는 미미하나마 증가한 것에 비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3.4%)에서는 약간 감소했다.

〈그림 53〉 납부액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54〉 납부액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61〉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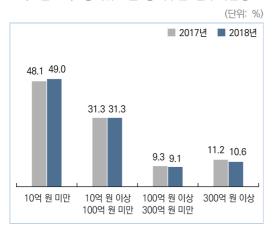
	구분	2017	7	2018	3	전년대비 증감률(%)
	납부사업장(개소, %)	34,767	100.0	36,515	100.0	5.0
계	납부액(억 원, %)	6,043	100.0	5,950	100.0	-1.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7.4		16.3		-6.3
	납부사업장(개소, %)	11,653	33.5	11,635	31.9	-0.2
100만 원 미만	납부액(억 원, %)	54	0.9	54	0.9	0.0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0.5		0.5		0.2
	납부사업장(개소, %)	17,031	49.0	18,671	51.1	9.6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납부액(억 원, %)	553	9.2	607	10.2	9.8
1,0002 2 12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3.2		3.3		0.1
	납부사업장(개소, %)	4,684	13.5	4,840	13.3	3.3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납부액(억 원, %)	1,525	25.2	1,522	25.6	-0.2
14 6 96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32.6		31.4		-3.4
	납부사업장(개소, %)	1,399	4.0	1,369	3.7	-2.1
1억 원 이상	납부액(억 원, %)	3,911	64.7	3,767	63.3	-3.7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279.6	3	275.2	2	-1.6

3) 공사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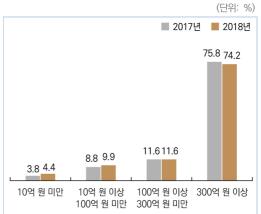
2018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10억원 미만 49.0%(17,907개소),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1.3%(11,446개소), 300억원 이상 10.6%(3,857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300억원 이상 74.2%(4,413억원), 10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11.6%(689억원), 1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9.9%(587억원)로 나타났다. 대체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개수는 많으나 납부액은 적다. 이것은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에 명확히 드러나는데 300억원이상 1억1,440만원,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2,080만원, 1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510만원등으로 나타나 격차가 컸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납부사업장의 경우 10억 원 미만(7.0%),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5.1%),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2.2%)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고, 전체 납부액의 경우 10억 원 미만(15.0%),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10.3%)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10억 원 미만(7.4%),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5.0%)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고, 그 이외에서는 감소했다.

〈그림 55〉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56〉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62〉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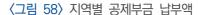
	구분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납부사업장(개소, %)	34,767	100.0	36,515	100.0	5.0
계	납부액(억 원, %)	6,043	100.0	5,950	100.0	-1.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7.4		16.3		-6.3
	납부사업장(개소, %)	16,732	48.1	17,907	49.0	7.0
10억 원 미만	납부액(억 원, %)	227	3.8	261	4.4	15.0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4		1.5		7.4
	납부사업장(개소, %)	10,892	31.3	11,446	31.3	5.1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납부액(억 원, %)	532	8.8	587	9.9	10.3
100 4 6 46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4.9		5.1		5.0
	납부사업장(개소, %)	3,233	9.3	3,305	9.1	2.2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납부액(억 원, %)	703	11.6	689	11.6	-2.0
000 E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21.7		20.8		-4.1
	납부사업장(개소, %)	3,910	11.2	3,857	10.6	-1.4
300억 원 이상	납부액(억 원, %)	4,581	75.8	4,413	74.2	-3.7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17.2	-	114.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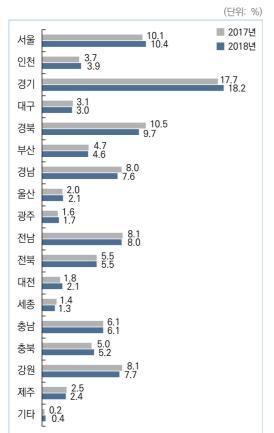
4)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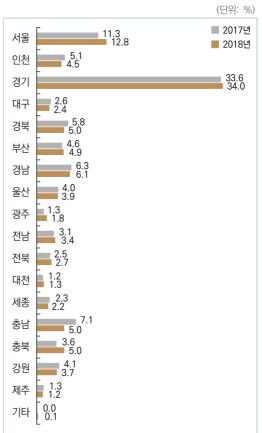
2018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경기 18.2%(6,651개소), 서울 10.4%(3,800개소), 경북 9.7%(3,558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경기 34.0%(2,020억 원), 서울 12.8%(760억 원), 경남 6.1%(360억 원)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순위는 달라지는데, 경기 3,040만 원, 울산 3,010만 원, 세종 2,75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대전(17.0%), 광주(14.1%), 인천(10.4%)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고, 납부액의 경우 광주(37.5%), 충북(36.4%), 대전(14.3%)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충북(23.9%)과 광주(20.5%)의 증가가 컸다.

〈그림 57〉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표 63〉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2017				: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납부시 (개소			부액 원, %)	평균 납부액 (백만 원)	납부시 (개소		납. (십억	부액 원, %)	평균 납부액 (백만 원)	납부 사업장 (%)	납부액 (%)	평균 납부액 (%)
계	34,767	100.0	604	100.0	17.4	36,515	100.0	595	100.0	16.3	5.0	-1.6	-6.3
서울	3,503	10.1	68	11.3	19.4	3,800	10.4	76	12.8	20.0	8.5	11.8	3.0
인천	1,302	3.7	31	5.1	23.8	1,437	3.9	27	4.5	18.8	10.4	-12.9	-21.1
경기	6,144	17.7	203	33.6	33.0	6,651	18.2	202	34.0	30.4	8.3	-0.5	-8.1
대구	1,077	3.1	16	2.6	14.9	1,096	3.0	14	2.4	12.8	1.8	-12.5	-14.0
경북	3,634	10.5	35	5.8	9.6	3,558	9.7	30	5.0	8.4	-2.1	-14.3	-12.5
부산	1,620	4.7	28	4.6	17.3	1,695	4.6	29	4.9	17.1	4.6	3.6	-1.0
경남	2,775	8.0	38	6.3	13.7	2,767	7.6	36	6.1	13.0	-0.3	-5.3	-5.0

	2017							2018			전년	대비 증	감률
구분	납부시 (개소			부액 원, %)	평균 납부액 (백만 원)	납부시 (개소		납. (십억	부액 원, %)	평균 납부액 (백만 원)	납부 사업장 (%)	납부액 (%)	평균 납부액 (%)
울산	709	2.0	24	4.0	33.9	764	2.1	23	3.9	30.1	7.8	-4.2	-11.1
광주	546	1.6	8	1.3	14.7	623	1.7	11	1.8	17.7	14.1	37.5	20.5
전남	2,812	8.1	19	3.1	6.8	2,921	8.0	20	3.4	6.8	3.9	5.3	1.3
전북	1,919	5.5	15	2.5	7.8	1,993	5.5	16	2.7	8.0	3.9	6.7	2.7
대전	643	1.8	7	1.2	10.9	752	2.1	8	1.3	10.6	17.0	14.3	-2.3
세종	503	1.4	14	2.3	27.8	473	1.3	13	2.2	27.5	-6.0	-7.1	-1.3
충남	2,111	6.1	43	7.1	20.4	2,241	6.1	30	5.0	13.4	6.2	-30.2	-34.3
충북	1,727	5.0	22	3.6	12.7	1,901	5.2	30	5.0	15.8	10.1	36.4	23.9
강원	2,803	8.1	25	4.1	8.9	2,827	7.7	22	3.7	7.8	0.9	-12.0	-12.7
제주	856	2.5	8	1.3	9.3	872	2.4	7	1.2	8.0	1.9	-12.5	-14.1
기타	83	0.2	0.3	0.1	3.6	144	0.4	0.8	0.1	5.6	73.5	166.7	53.7

5) 공사종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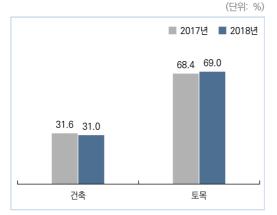
2018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종류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토목 69.0%(25,200개소), 건축 31.0%(11,315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건축 76.1%(4,526억 원), 토목 23.9%(1,424억 원)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건축 4,000만 원, 토목 570만 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컸다. 이것은 양자 간의 퇴직공제제도 적용범위가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건축공사의 경우 당연가입 적용범위가 100억 원 이상인 민간공사가 많고, 토목공사의 경우 대개 적용범위가 3억 원 이상인 공공공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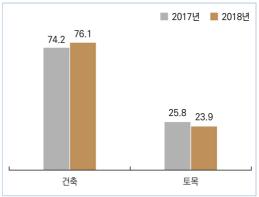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건축(2.9%)과 토목(6.0%)에서 모두 증가한 것에 비해, 납부액의 경우 건축공사(0.9%)에서 미미하게 증가했으나 토목공사 (-8.5%)에서는 감소했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건축(-1.9%)과 토목(-13.7) 모두에서 감소했다.

〈그림 59〉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60〉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액

(단위: %





〈표 64〉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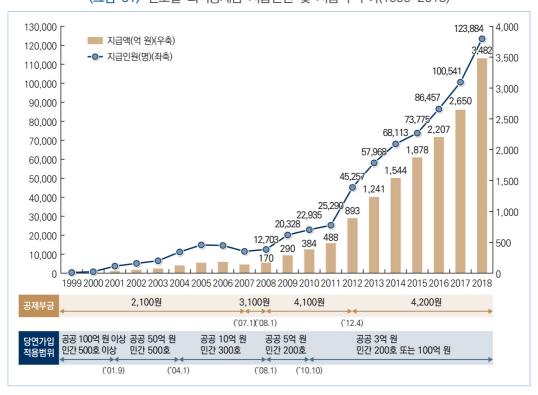
	구분			2018		전년대비 증감률(%)
	납부사업장(개소, %)	34,767	100.0	36,515	100.0	5.0
계	납부액(억 원, %)	6,043	100.0	5,950	100.0	-1.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7.4		16.3		-6.3
	납부사업장(개소, %)	10,998	31.6	11,315	31.0	2.9
건축	납부액(억 원, %)	4,486	74.2	4,526	76.1	0.9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40.8		40.0		-1.9
	납부사업장(개소, %)	23,769	68.4	25,200	69.0	6.0
토목	납부액(억 원, %)	1,557	25.8	1,424	23.9	-8.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6.6		5.7		-13.7

4. 퇴직공제금 지급

1999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흐름 중 지급인원 수와 지급액 규모가 이전 흐름에 비해 크게 비약하는 시점이 2012년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로 근로 내역 신고일수의 적립이 촉진된 것과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심화 등의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에 25,290명이던 지급인원 수가 2012년에는 45,257명으로 전년 대비 79.0%가 증가했고, 동 시기에 지급액은 488억 원에서 893억 원으로 83.1%

가 급증했다. 2013년 이후에는 양자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2018년에는 각각 123.884 명과 3,482억 원에 달했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의 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누계는 각각 706,053명과 1조 6.019억 워이고 퇴직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269처 워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999 년의 558천 원으로 시작해 2002년에는 1.045천 원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2.141천 원으로 200만 원을 돌파했으며, 2018년에는 2.811천 원으로 상승했다.



〈그림 61〉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18)

〈표 65〉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18)

구분	지급인원(명)	지급액(백만 원)	평균 지급액(천 원)
총합계	706,053	1,601,898	2,269
1999	3	2	558
2000	638	513	804
2001	3,836	3,600	938
2002	5,046	5,271	1,045
2003	6,621	7,332	1,107
2004	11,419	12,829	1,123

구분	지급인원(명)	지급액(백만 원)	평균 지급액(천 원)
2005	15,044	17,177	1,142
2006	14,700	18,109	1,232
2007	11,495	14,398	1,253
2008	12,703	16,933	1,333
2009	20,328	28,999	1,427
2010	22,935	38,375	1,673
2011	25,290	48,755	1,928
2012	45,257	89,279	1,973
2013	57,968	124,100	2,141
2014	68,113	154,438	2,267
2015	73,775	187,791	2,545
2016	86,457	220,743	2,553
2017	100,541	265,011	2,636
2018	123,884	348,243	2,811

특성별 분포

2018년의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은 123,884명으로서 2017년의 100,541명에 비해 23.2% 가 증가했고, 지급액은 348,243백만 원으로 전년도의 265,011백만 원 대비 31.4%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811천 원으로 전년도의 2,636천 원 대비 6.6% 증가했다.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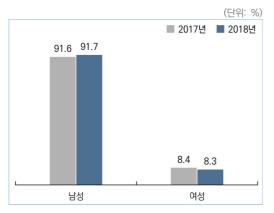
2018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남성 91.7% (113,550명), 여성 8.3%(10,334명)로 나타났고, 지급액의 경우 남성 92.7%(322,980백만 원), 여성 7.3%(25,263백만 원)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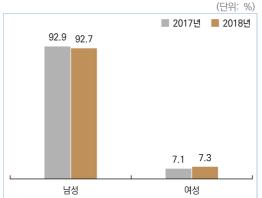
대체로 매년 남성이 차지하는 지급인원의 비중에 비해 지급액의 비중이 더 큰데, 이것은 남성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이 2,844천 원으로서 여성의 2,445천 원에 비해 399천 원 더 많은 데 기인한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의 경우 남성(23.4%)이 여성(21.7%) 보다 증가율이 더 큰 데 반해, 지급액의 경우 여성(34.0%)이 남성(31.2%)보다 증가율이 더 컸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증가율 역시 여성(10.1%)이 남성(6.4%)보다 더 컸다.

〈그림 62〉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3〉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66〉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지급인원(명, %)	100,541	100.0	123,884	100.0	23.2
계	지급액(백만 원, %)	265,011	100.0	348,243	100.0	31.4
	평균 지급액(천 원)	2,636		2,811	6.6	
	지급인원(명, %)	92,051	91.6	113,550	91.7	23.4
남성	지급액(백만 원, %)	246,152	92.9	322,980	92.7	31.2
	평균 지급액(천 원)	2,674		2,844		6.4
	지급인원(명, %)	8,490	8.4	10,334	8.3	21.7
여성	지급액(백만 원, %)	18,859	7.1	25,263	7.3	34.0
	평균 지급액(천 원)	2,221		2,445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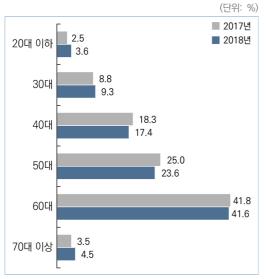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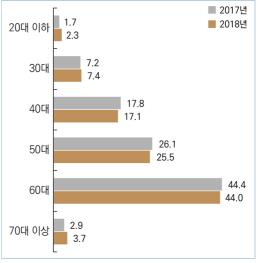
2018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60대 41.6% (51,515명), 50대 23.6%(29,258명), 40대 17.4%(21,531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에도 역시 60대 44.0%(153,064백만 원), 50대 25.5%(88,813백만 원), 40대 17.1% (59,506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달리, 연령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50대 3,056천 원, 60대 2,971천 원, 40대 2,764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경우 모두 20대 이하 (74.4%, 78.3%), 70대 이상(58.1%, 69.5%), 30대(29.9%, 35.9%) 등의 증가가 컸다. 1인 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50대(10.3%), 40대(8.3%), 70대 이상(7.2%) 등의 증가율이 컸다.

〈그림 64〉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

〈표 67〉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7		2018		전년대비 증감률(%)
	지급인원(명, %)	100,541	100.0	123,884	100.0	23.2
계	지급액(백만 원, %)	265,011	100.0	348,243	100.0	31.4
	평균 지급액(천 원)	2,636		2,811		6.6
	지급인원(명, %)	2,542	2.5	4,433	3.6	74.4
20대	지급액(백만 원, %)	4,506	1.7	8,034	2.3	78.3
	평균 지급액(천 원)	1,773		1,812		2.2
	지급인원(명, %)	8,883	8.8	11,541	9.3	29.9
30대	지급액(백만 원, %)	19,012	7.2	25,833	7.4	35.9
	평균 지급액(천 원)	2,140		2,238		4.6
	지급인원(명, %)	18,444	18.3	21,531	17.4	16.7
40대	지급액(백만 원, %)	47,048	17.8	59,506	17.1	26.5
	평균 지급액(천 원)	2,551		2,764		8.3
	지급인원(명, %)	25,109	25.0	29,258	23.6	16.5
50대	지급액(백만 원, %)	69,079	26.1	88,813	25.5	28.6
	평균 지급액(천 원)	2,751		3,036		10.3
	지급인원(명, %)	42,018	41.8	51,515	41.6	22.6
60대	지급액(백만 원, %)	117,699	44.4	153,064	44.0	30.0
	평균 지급액(천 원)	2,801		2,971		6.1
	지급인원(명, %)	3,545	3.5	5,606	4.5	58.1
70대	지급액(백만 원, %)	7,667	2.9	12,993	3.7	69.5
	평균 지급액(천 원)	2,163		2,318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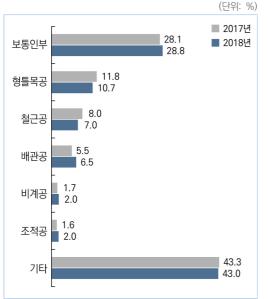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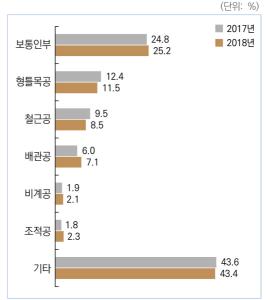
2018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상위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보통 인부 28.8%(35,643명), 형틀목공 10.7%(13,195명), 철근공 7.0%(8,699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역시 보통인부 25.2%(87,814백만 원), 형틀목공 11.5%(40,102백만 원), 철 근공 8.5%(29.429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직종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철근공 3,383천 원, 조적공 3,221천 원, 배관공 3,050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경우 조적공(48.8%, 67.7%)과 배관공(47.1%, 54.8%) 그리고 비계공(45.5%, 45.2%) 등의 증가가 컸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조적공(12.7%), 형틀목공(9.4%), 철근공(8.0%) 등의 증가율이 컸다.

〈그림 66〉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7〉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68〉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7		2018		전년대비 증감률(%)
	지급인원(명, %)	100,541	100.0	123,884	100.0	23.2
계	지급액(백만 원, %)	265,011	100.0	348,243	100.0	31.4
	평균 지급액(천 원)	2,636		2,811	6.6	

	구분	2017		2018		전년대비 증감률(%)
	지급인원(명, %)	28,281	28.1	35,643	28.8	26.0
보통인부	지급액(백만 원, %)	65,593	24.8	87,814	25.2	33.9
	평균 지급액(천 원)	2,319		2,464		6.2
	지급인원(명, %)	11,826	11.8	13,195	10.7	11.6
형틀목공	지급액(백만 원, %)	32,839	12.4	40,102	11.5	22.1
	평균 지급액(천 원)	2,777		3,039		9.4
	지급인원(명, %)	8,074	8.0	8,699	7.0	7.7
철근공	지급액(백만 원, %)	25,299	9.5	29,429	8.5	16.3
	평균 지급액(천 원)	3,133		3,383	8.0	
	지급인원(명, %)	5,509	5.5	8,104	6.5	47.1
배관공	지급액(백만 원, %)	15,972	6.0	24,719	7.1	54.8
	평균 지급액(천 원)	2,899		3,050		5.2
	지급인원(명, %)	1,726	1.7	2,512	2.0	45.5
비계공	지급액(백만 원, %)	5,042	1.9	7,322	2.1	45.2
	평균 지급액(천 원)	2,921		2,915		-0.2
	지급인원(명, %)	1,635	1.6	2,433	2.0	48.8
조적공	지급액(백만 원, %)	4,674	1.8	7,836	2.3	67.7
	평균 지급액(천 원)	2,859		3,221		12.7
	지급인원(명, %)	43,490	43.3	53,298	43.0	22.6
기타	지급액(백만 원, %)	115,592	43.6	151,021	43.4	30.7
	평균 지급액(천 원)	2,658		2,834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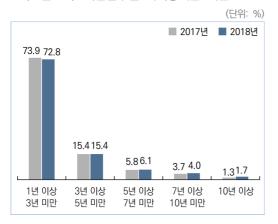
4) 적립일수 규모별

2018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적립일수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 72.8%(90,207명), 3년 이상 5년 미만 15.4%(19,079명), 5년 이상 7년 미만 6.1%(7,546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역시 1년 이상 3년 미만 45.2%(157,496백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 22.2%(77,275백만 원), 5년 이상 7년 미만 13.3%(46,457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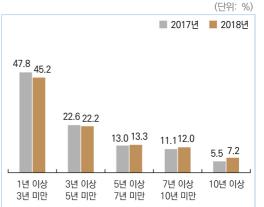
퇴직공제제도가 건설근로자의 노후대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적립일수가 더 많이 누적된 이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적립일수 규모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당연히 적립일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10년 이상 11,822천 원, 7년 이상 10년 미만 8,497천 원, 5년 이상 7년 미만 6,157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경우 10년 이상(62.7%, 73.5%)과 7년 이상 10년 미만(33.6%, 41.5%) 그리고 5년 이상 7년 미만(29.1%, 35.2%) 등의 증가가 컸다. 1인당 평균 지급액 역시 의 경우 10년 이상(6.6%), 7년 이상 10년 미만 (5.9%) 그리고 5년 이상 7년 미만(4.7%) 등에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더 컸다.

〈그림 68〉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9〉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69〉 적립일수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7		2018		전년대비 증감률(%)
	지급인원(명, %)	100,541	100.0	123,884	100.0	23.2
계	지급액(백만 원, %)	265,011	100.0	348,243	100.0	31.4
	평균 지급액(천 원)	2,636		2,811		6.6
	지급인원(명, %)	74,268	73.9	90,207	72.8	21.5
1년 이상 3년 미만	지급액(백만 원, %)	126,736	47.8	157,496	45.2	24.3
00 -10	평균 지급액(천 원)	1,706		1,746		2.3
	지급인원(명, %)	15,438	15.4	19,079	15.4	23.6
3년 이상 5년 미만	지급액(백만 원, %)	59,832	22.6	77,275	22.2	29.2
0E -IE	평균 지급액(천 원)	3,876		4,050	4.5	
	지급인원(명, %)	5,843	5.8	7,546	6.1	29.1
5년 이상 7년 미만	지급액(백만 원, %)	34,360	13.0	46,457	13.3	35.2
70 00	평균 지급액(천 원)	5,881		6,157		4.7
	지급인원(명, %)	3,680	3.7	4,918	4.0	33.6
7년 이상 10년 미만	지급액(백만 원, %)	29,538	11.1	41,786	12.0	41.5
100 00	평균 지급액(천 원)	8,027		8,497		5.9

구분		2017		2018	전년대비 증감률(%)	
	지급인원(명, %)	1,312	1.3	2,134	1.7	62.7
10년 이상	지급액(백만 원, %)	14,545	5.5	25,229	7.2	73.5
	평균 지급액(천 원)	11,086		11,822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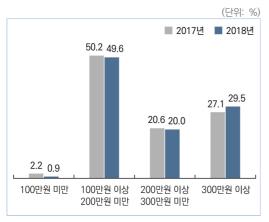
5) 지급액 규모별

2018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지급액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49.6%(61,452명), 300만 원 이상 29.5%(36,526명),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0.0%(24,755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300만 원 이상 57.4%(199,866백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5.0%(86,896백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7.4%(60,435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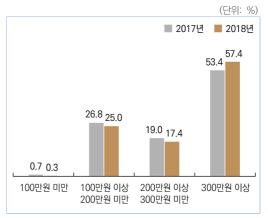
지급액 규모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당연히 지급액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300만 원 이상 5,472천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441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414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경우 300만 원 이상 (34.2%, 41.3%),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21.8%, 22.2%),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19.8%, 19.9%)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고, 100만 원 미만(-48.1%, -47.4%)에서는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300만 원 이상(5.3%), 100만 원 미만(1.4%),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0.3%)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그림 70〉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71〉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70) 지급액 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7		2018		전년대비 증감률(%)
	지급인원(명, %)	100,541	100.0	123,884	100.0	23.2
계	지급액(백만 원, %)	265,011	100.0	348,243	100.0	31.4
	평균 지급액(천 원)	2,636		2,811		6.6
	지급인원(명, %)	2,218	2.2	1,151	0.9	-48.1
100만 원 미만	지급액(백만 원, %)	1,987	0.7	1,046	0.3	-47.4
	평균 지급액(천 원)	896		909		1.4
	지급인원(명, %)	50,445	50.2	61,452	49.6	21.8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지급액(백만 원, %)	71,113	26.8	86,896	25.0	22.2
2002 2 12	평균 지급액(천 원)	1,410		1,414		0.3
	지급인원(명, %)	20,663	20.6	24,755	20.0	19.8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지급액(백만 원, %)	50,424	19.0	60,435	17.4	19.9
	평균 지급액(천 원)	2,440		2,441		0.0
	지급인원(명, %)	27,215	27.1	36,526	29.5	34.2
300만 원 이상	지급액(백만 원, %)	141,487	53.4	199,866	57.4	41.3
	평균 지급액(천 원)	5,199		5,472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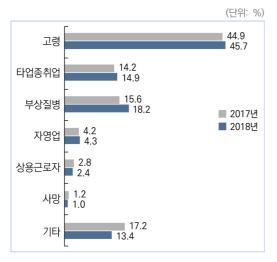
6) 지급사유별

2018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지급사유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고령 45.7%(56,625명), 부상·질병 18.2%(22,589명), 타 업종 취업 14.9%(18,443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고령 47.3%(164,645백만 원), 부상·질병 18.8%(65,591백만 원), 타 업종 취업 13.9%(48,458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사유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위와 다른데, 상용근로자 3,275천 원, 사망 3,142천 원, 자영업 2,955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의 경우 부상·질병(43.8%), 타 업종 취업(29.3%), 자영업(26.2%)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고, 전체 지급액의 경우 부상·질병(53.6%), 자영업(40.1%), 타 업종 취업(36.5%)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자영업(11.0%), 사망(10.9%), 부상·질병(6.9%) 등에서 증가율이 컸다.

〈그림 72〉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표 71〉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7		2018	2018	
	지급인원(명, %)	100,541	100.0	123,884	100.0	23.2
계	지급액(백만 원, %)	265,011	100.0	348,243	100.0	31.4
	평균 지급액(천 원)	2,636		2,811		6.6
	지급인원(명, %)	45,117	44.9	56,625	45.7	25.5
고령	지급액(백만 원, %)	124,247	46.9	164,645	47.3	32.5
	평균 지급액(천 원)	2,754		2,908		5.6
	지급인원(명, %)	14,264	14.2	18,443	14.9	29.3
타업종취업	지급액(백만 원, %)	35,489	13.4	48,458	13.9	36.5
	평균 지급액(천 원)	2,488		2,627	5.6	
	지급인원(명, %)	15,713	15.6	22,589	18.2	43.8
부상질병	지급액(백만 원, %)	42,700	16.1	65,591	18.8	53.6
	평균 지급액(천 원)	2,717		2,904		6.9
	지급인원(명, %)	4,219	4.2	5,326	4.3	26.2
자영업	지급액(백만 원, %)	11,231	4.2	15,737	4.5	40.1
	평균 지급액(천 원)	2,662		2,955		11.0
	지급인원(명, %)	2,779	2.8	2,994	2.4	7.7
상용근로자	지급액(백만 원, %)	8,766	3.3	9,806	2.8	11.9
	평균 지급액(천 원)	3,154		3,275		3.8

구분		2017		2018	전년대비 증감률(%)	
	지급인원(명, %)	1,206	1.2	1,253	1.0	3.9
사망	지급액(백만 원, %)	3,416	1.3	3,937	1.1	15.3
	평균 지급액(천 원)	2,833		3,142		10.9
	지급인원(명, %)	17,243	17.2	16,654	13.4	-3.4
기타	지급액(백만 원, %)	39,162	14.8	40,069	11.5	2.3
	평균 지급액(천 원)	2,271		2,406		5.9



04

PART

부록

퇴직공제사업 세부 통계

* 부록의 통계자료 추출 기준은 피공제자 '가입연도'이므로 본문의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표 1〉 연도별 신규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단위: 명) 퇴직자
 합계	6,070,341	706,053
1998년	1,008	-
1999년	38,308	3
2000년	83,442	638
2001년	98,160	3,836
2002년	132,499	5,046
2003년	172,188	6,621
2004년	276,556	11,419
2005년	278,148	15,044
2006년	477,269	14,700
2007년	436,900	11,495
2008년	417,218	12,703
2009년	434,862	20,328
2010년	328,809	22,935
2011년	307,869	25,290
2012년	343,846	45,257
2013년	376,014	57,968
2014년	339,412	68,113
2015년	313,755	73,775
2016년	378,638	86,457
2017년	450,829	100,541
2018년	384,611	123,884

〈부표 2〉 연도별 연령별 신규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합계	6,070,341	52,362	132,990	335,983	362,868	452,001	478,710
1998년	1,008	_	-	-	-	10	32
1999년	38,308	-	-	-	2	431	1,715
2000년	83,442	_	1	-	-	1,414	3,918
2001년	98,160	-	-	-	4	2,111	5,802
2002년	132,499	-	-	1	117	4,832	9,019
2003년	172,188	-	-	2	613	8,633	12,666
2004년	276,556	_	-	-	2,740	15,986	21,465
2005년	278,148	-	-	3	4,401	16,969	21,279
2006년	477,269	120	3	80	12,550	37,935	36,722
2007년	436,900	152	4	346	24,404	42,754	35,300
2008년	417,218	150	11	2,281	32,747	36,956	33,809
2009년	434,862	203	13	10,034	34,789	36,955	35,378
2010년	328,809	67	6	15,415	30,165	26,113	26,877
2011년	307,869	246	66	20,543	29,191	23,268	24,207
2012년	343,846	978	345	34,161	30,145	25,779	28,040
2013년	376,014	1,722	2,548	47,089	28,682	28,532	30,763
2014년	339,412	2,752	9,783	40,128	25,314	25,762	27,989
2015년	313,755	4,295	15,458	34,393	21,835	23,005	25,039
2016년	378,638	9,644	25,032	46,155	27,671	29,329	30,117
2017년	450,829	16,697	42,038	51,790	32,083	35,176	36,812
2018년	384,611	15,336	37,682	33,562	25,415	30,051	31,761

								(단위: 명)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기타
합계	659,195	760,590	838,851	795,301	133,865	412,553	653,308	1,764
1998년	83	109	159	192	30	118	274	1
1999년	3,649	4,731	6,309	6,861	1,157	3,947	9,468	38
2000년	6,846	9,550	13,055	14,698	2,635	8,911	22,408	6
2001년	8,513	11,331	15,177	16,397	2,895	10,221	25,709	_
2002년	11,233	15,113	19,210	20,895	3,736	13,270	35,073	-
2003년	16,578	20,787	25,989	27,150	4,826	16,302	38,642	-
2004년	30,257	37,371	43,702	43,233	7,065	24,003	50,734	-
2005년	31,934	39,145	45,468	43,193	7,125	23,145	45,486	_
2006년	54,486	66,429	75,706	71,816	11,740	37,057	72,106	519
2007년	49,721	59,079	65,614	60,741	9,752	30,704	58,175	154
2008년	48,327	55,860	61,585	56,790	9,270	28,400	50,906	126
2009년	50,797	58,785	64,971	57,703	9,361	28,571	47,181	121
2010년	36,505	41,975	45,861	41,411	6,786	21,357	36,247	24
2011년	33,759	38,059	42,425	38,130	6,108	20,187	31,640	40
2012년	37,975	42,008	45,692	40,146	6,477	22,910	29,118	72
2013년	41,238	45,327	48,784	41,442	6,556	26,911	26,314	106
2014년	37,444	41,451	43,276	35,389	7,970	22,487	19,589	78
2015년	33,154	37,022	39,168	35,911	9,089	19,619	15,689	78
2016년	39,266	42,830	43,607	43,470	7,354	19,139	14,826	198
2017년	46,341	49,835	50,178	50,260	7,434	18,992	13,006	187
2018년	41,089	43,793	42,915	49,473	6,499	16,302	10,717	16

〈부표 3〉 연도별 시도별 신규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6,070,341	999,398	362,208	1,269,804	284,763	325,214	342,685	423,839	131,196
1998년	1,008	222	57	243	47	21	14	12	2
1999년	38,308	7,843	2,733	7,843	1,982	1,447	974	1,677	555
2000년	83,442	12,916	4,694	14,420	4,510	5,051	3,965	5,028	1,491
2001년	98,160	13,786	5,516	16,880	4,947	6,329	4,809	6,740	1,484
2002년	132,499	17,007	6,210	21,282	7,127	9,890	8,805	9,828	2,350
2003년	172,188	24,600	8,784	30,236	12,576	10,783	8,728	16,823	2,844
2004년	276,556	43,467	16,944	54,143	14,031	15,948	15,664	24,259	5,156
2005년	278,148	45,127	18,708	56,331	13,110	13,839	15,315	20,824	4,147
2006년	477,269	84,162	28,857	91,273	26,241	28,149	26,276	34,287	8,022
2007년	436,900	74,590	25,490	81,511	26,211	24,927	25,961	31,244	7,786
2008년	417,218	74,357	23,088	83,814	22,331	23,398	23,203	27,661	6,452
2009년	434,862	74,345	27,446	89,290	21,235	24,134	23,352	27,094	7,596
2010년	328,809	52,952	21,659	63,309	16,209	19,643	19,226	22,122	5,784
2011년	307,869	47,614	19,340	58,990	13,834	19,271	18,056	21,820	6,945
2012년	343,846	54,845	20,577	70,605	14,079	19,828	20,825	25,369	9,029
2013년	376,014	62,417	22,825	79,495	15,623	19,652	22,998	26,855	10,623
2014년	339,412	60,239	20,211	80,160	13,341	16,260	18,212	21,533	7,476
2015년	313,755	52,635	18,364	71,717	13,469	15,614	17,264	20,957	6,676
2016년	378,638	61,684	22,147	91,082	14,933	17,640	20,511	24,765	9,334
2017년	450,829	72,409	26,073	111,490	15,599	18,322	26,710	29,028	16,139
2018년	384,611	62,181	22,485	95,690	13,328	15,068	21,817	25,913	11,305

192,371 303,085 253,572 178,741 266,121 195,366 237,380 76,044 228,554 1998년 24 48 85 106 16 14 84 2 11									====	(단위: 명)
1998년 24 48 85 106 16 14 84 2 11 1999년 1,486 1,938 1,667 2,249 1,443 1,569 1,468 414 1,020 2000년 2,603 5,213 4,238 4,570 4,562 4,520 3,737 475 1,449 2001년 3,351 5,967 6,143 4,284 4,931 4,500 5,261 1,346 1,886 2002년 5,086 9,092 7,524 4,965 7,515 5,656 6,350 1,298 2,514 2003년 6,270 10,428 8,924 6,247 8,350 6,188 6,079 1,431 2,897 2004년 9,063 15,447 13,007 9,653 10,849 9,532 10,827 3,118 5,448 2005년 8,656 15,334 13,090 9,334 10,911 9,874 13,233 4,470 5,845 2006년 15,528 24,553 21,871 14,470 17,699 16,359 21,903 4,801 12,818 2007년 15,984 23,284 19,376 12,001 17,580 14,044 19,826 4,829 12,256 2008년 15,934 22,176 18,753 11,519 17,175 13,491 17,151 5,299 11,416 2009년 14,859 23,529 20,170 13,386 18,655 14,317 17,233 6,230 11,991 2010년 11,330 18,399 15,523 10,321 13,982 11,417 13,105 4,839 8,989 2011년 10,559 18,800 14,809 9,289 13,633 10,001 12,811 4,120 7,977 2012년 11,238 20,476 15,955 9,048 16,891 10,117 13,284 4,745 6,935 2013년 10,503 15,554 12,972 9,108 15,338 9,620 12,252 4,901 11,732 2015년 8,636 12,306 10,456 8,563 14,603 8,850 11,296 4,308 18,041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1999년 1,486 1,938 1,667 2,249 1,443 1,569 1,468 414 1,020 200년 2,603 5,213 4,238 4,570 4,562 4,520 3,737 475 1,449 200년 3,351 5,967 6,143 4,284 4,931 4,500 5,261 1,346 1,886 202년 5,086 9,092 7,524 4,965 7,515 5,656 6,350 1,298 2,514 203년 9,063 15,447 13,007 9,653 10,849 9,532 10,827 3,118 5,448 2005년 8,656 15,334 13,090 9,334 10,911 9,874 13,233 4,470 5,845 2006년 15,528 24,553 21,871 14,470 17,699 16,359 21,903 4,801 12,818 2007년 15,984 23,284 19,376 12,001 17,580 14,044 19,826 4,829 12,256 2008년 15,534 22,176 18,753 11,519 17,175 13,491 17,151 5,299 11,416 2009년 14,859 23,529 20,170 13,386 18,655 14,317 17,233 6,230 11,991 2010년 11,330 18,399 15,523 10,321 13,982 11,417 13,105 4,839 8,989 2011년 10,559 18,800 14,809 9,289 13,633 10,001 12,811 4,120 7,977 2012년 11,238 20,476 15,955 9,048 16,891 10,117 13,284 4,745 6,935 2013년 12,446 19,625 16,241 10,791 16,911 10,990 13,265 5,485 9,772 2014년 10,503 15,554 12,972 9,108 15,338 9,620 12,252 4,901 11,732 2015년 8,636 12,306 10,456 8,563 14,603 8,850 11,296 4,308 18,041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합계	192,371	303,085	253,572	178,741	266,121	195,366	237,380	76,044	228,554
2000년 2,603 5,213 4,238 4,570 4,562 4,520 3,737 475 1,449 2001년 3,351 5,967 6,143 4,284 4,931 4,500 5,261 1,346 1,886 2002년 5,086 9,092 7,524 4,965 7,515 5,656 6,350 1,298 2,514 2003년 6,270 10,428 8,924 6,247 8,350 6,188 6,079 1,431 2,897 2004년 9,063 15,447 13,007 9,653 10,849 9,532 10,827 3,118 5,448 2005년 8,656 15,334 13,090 9,334 10,911 9,874 13,233 4,470 5,845 2006년 15,528 24,553 21,871 14,470 17,689 16,359 21,903 4,801 12,256 2007년 15,984 23,284 19,376 12,001 17,580 14,044 19,826 4,829 12,256 2008년 <td>1998년</td> <td>24</td> <td>48</td> <td>85</td> <td>106</td> <td>16</td> <td>14</td> <td>84</td> <td>2</td> <td>11</td>	1998년	24	48	85	106	16	14	84	2	11
2001년 3,351 5,967 6,143 4,284 4,931 4,500 5,261 1,346 1,886 2002년 5,086 9,092 7,524 4,965 7,515 5,656 6,350 1,298 2,514 2003년 6,270 10,428 8,924 6,247 8,350 6,188 6,079 1,431 2,897 2004년 9,063 15,447 13,007 9,653 10,849 9,532 10,827 3,118 5,448 2005년 8,656 15,334 13,090 9,334 10,911 9,874 13,233 4,470 5,845 2006년 15,528 24,553 21,871 14,470 17,699 16,359 21,903 4,801 12,818 2007년 15,984 23,284 19,376 12,001 17,580 14,044 19,826 4,829 12,256 2009년 14,859 23,529 20,170 13,386 18,655 14,317 17,233 6,230 11,991 <t< td=""><td>1999년</td><td>1,486</td><td>1,938</td><td>1,667</td><td>2,249</td><td>1,443</td><td>1,569</td><td>1,468</td><td>414</td><td>1,020</td></t<>	1999년	1,486	1,938	1,667	2,249	1,443	1,569	1,468	414	1,020
2002년 5,086 9,092 7,524 4,965 7,515 5,656 6,350 1,298 2,514 2003년 6,270 10,428 8,924 6,247 8,350 6,188 6,079 1,431 2,897 2004년 9,063 15,447 13,007 9,653 10,849 9,532 10,827 3,118 5,448 2005년 8,656 15,334 13,090 9,334 10,911 9,874 13,233 4,470 5,845 2006년 15,528 24,553 21,871 14,470 17,699 16,359 21,903 4,801 12,818 2007년 15,984 23,284 19,376 12,001 17,580 14,044 19,826 4,829 12,256 2008년 15,934 22,176 18,753 11,519 17,175 13,491 17,151 5,299 11,416 2009년 14,859 23,529 20,170 13,386 18,655 14,317 17,133 6,230 11,991	2000년	2,603	5,213	4,238	4,570	4,562	4,520	3,737	475	1,449
2003년 6,270 10,428 8,924 6,247 8,350 6,188 6,079 1,431 2,897 2004년 9,063 15,447 13,007 9,653 10,849 9,532 10,827 3,118 5,448 2005년 8,656 15,334 13,090 9,334 10,911 9,874 13,233 4,470 5,845 2006년 15,528 24,553 21,871 14,470 17,699 16,359 21,903 4,801 12,818 2007년 15,984 23,284 19,376 12,001 17,580 14,044 19,826 4,829 12,256 2008년 15,934 22,176 18,753 11,519 17,175 13,491 17,151 5,299 11,416 2009년 14,859 23,529 20,170 13,386 18,655 14,317 17,233 6,230 11,991 2011년 10,559 18,800 14,809 9,289 13,633 10,001 12,811 4,120 7,977	2001년	3,351	5,967	6,143	4,284	4,931	4,500	5,261	1,346	1,886
2004년 9,063 15,447 13,007 9,653 10,849 9,532 10,827 3,118 5,448 2005년 8,656 15,334 13,090 9,334 10,911 9,874 13,233 4,470 5,845 2006년 15,528 24,553 21,871 14,470 17,699 16,359 21,903 4,801 12,818 2007년 15,984 23,284 19,376 12,001 17,580 14,044 19,826 4,829 12,256 2008년 15,934 22,176 18,753 11,519 17,175 13,491 17,151 5,299 11,416 2009년 14,859 23,529 20,170 13,386 18,655 14,317 17,233 6,230 11,991 2010년 11,330 18,399 15,523 10,321 13,982 11,417 13,105 4,839 8,989 2011년 10,559 18,800 14,809 9,289 13,633 10,001 12,811 4,120 7,977 2012년 11,238 20,476 15,955 9,048 16,891 10,117 13,284 4,745 6,935 2014년 10,503 15,554 12,972 9,108 15,338 9,620 12,252 4,901 11,732 2015년 8,636 12,306 10,456 8,563 14,603 8,850 11,296 4,308 18,041 2016년 9,117 13,391 10,497 9,460 17,579 10,231 12,132 4,673 29,462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02년	5,086	9,092	7,524	4,965	7,515	5,656	6,350	1,298	2,514
2005년 8,656 15,334 13,090 9,334 10,911 9,874 13,233 4,470 5,845 2006년 15,528 24,553 21,871 14,470 17,699 16,359 21,903 4,801 12,818 2007년 15,984 23,284 19,376 12,001 17,580 14,044 19,826 4,829 12,256 2008년 15,934 22,176 18,753 11,519 17,175 13,491 17,151 5,299 11,416 2009년 14,859 23,529 20,170 13,386 18,655 14,317 17,233 6,230 11,991 2010년 11,330 18,399 15,523 10,321 13,982 11,417 13,105 4,839 8,989 2011년 10,559 18,800 14,809 9,289 13,633 10,001 12,811 4,120 7,977 2012년 11,238 20,476 15,955 9,048 16,891 10,117 13,284 4,745 6,935 2013년 12,446 19,625 16,241 10,791 16,911 10,990 13,265 5,485 9,772 2014년 10,503 15,554 12,972 9,108 15,338 9,620 12,252 4,901 11,732 2015년 8,636 12,306 10,456 8,563 14,603 8,850 11,296 4,308 18,041 2016년 9,117 13,391 10,497 9,460 17,579 10,231 12,132 4,673 29,462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03년	6,270	10,428	8,924	6,247	8,350	6,188	6,079	1,431	2,897
2006년 15,528 24,553 21,871 14,470 17,699 16,359 21,903 4,801 12,818 2007년 15,984 23,284 19,376 12,001 17,580 14,044 19,826 4,829 12,256 2008년 15,934 22,176 18,753 11,519 17,175 13,491 17,151 5,299 11,416 2009년 14,859 23,529 20,170 13,386 18,655 14,317 17,233 6,230 11,991 2010년 11,330 18,399 15,523 10,321 13,982 11,417 13,105 4,839 8,989 2011년 10,559 18,800 14,809 9,289 13,633 10,001 12,811 4,120 7,977 2012년 11,238 20,476 15,955 9,048 16,891 10,117 13,284 4,745 6,935 2013년 12,446 19,625 16,241 10,791 16,911 10,990 13,265 5,485 9,772 2014년 10,503 15,554 12,972 9,108 15,338 9,620 12,252 4,901 11,732 2015년 8,636 12,306 10,456 8,563 14,603 8,850 11,296 4,308 18,041 2016년 9,117 13,391 10,497 9,460 17,579 10,231 12,132 4,673 29,462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04년	9,063	15,447	13,007	9,653	10,849	9,532	10,827	3,118	5,448
2007년 15,984 23,284 19,376 12,001 17,580 14,044 19,826 4,829 12,256 2008년 15,934 22,176 18,753 11,519 17,175 13,491 17,151 5,299 11,416 2009년 14,859 23,529 20,170 13,386 18,655 14,317 17,233 6,230 11,991 2010년 11,330 18,399 15,523 10,321 13,982 11,417 13,105 4,839 8,989 2011년 10,559 18,800 14,809 9,289 13,633 10,001 12,811 4,120 7,977 2012년 11,238 20,476 15,955 9,048 16,891 10,117 13,284 4,745 6,935 2013년 12,446 19,625 16,241 10,791 16,911 10,990 13,265 5,485 9,772 2014년 10,503 15,554 12,972 9,108 15,338 9,620 12,252 4,901 11,732 2015년 8,636 12,306 10,456 8,563 14,603 8,850 11,296 4,308 18,041 2016년 9,117 13,391 10,497 9,460 17,579 10,231 12,132 4,673 29,462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05년	8,656	15,334	13,090	9,334	10,911	9,874	13,233	4,470	5,845
2008년15,93422,17618,75311,51917,17513,49117,1515,29911,4162009년14,85923,52920,17013,38618,65514,31717,2336,23011,9912010년11,33018,39915,52310,32113,98211,41713,1054,8398,9892011년10,55918,80014,8099,28913,63310,00112,8114,1207,9772012년11,23820,47615,9559,04816,89110,11713,2844,7456,9352013년12,44619,62516,24110,79116,91110,99013,2655,4859,7722014년10,50315,55412,9729,10815,3389,62012,2524,90111,7322015년8,63612,30610,4568,56314,6038,85011,2964,30818,0412016년9,11713,39110,4979,46017,57910,23112,1324,67329,4622017년9,94114,16311,73710,16022,19712,25014,4534,92435,234	2006년	15,528	24,553	21,871	14,470	17,699	16,359	21,903	4,801	12,818
2009년 14,859 23,529 20,170 13,386 18,655 14,317 17,233 6,230 11,991 2010년 11,330 18,399 15,523 10,321 13,982 11,417 13,105 4,839 8,989 2011년 10,559 18,800 14,809 9,289 13,633 10,001 12,811 4,120 7,977 2012년 11,238 20,476 15,955 9,048 16,891 10,117 13,284 4,745 6,935 2013년 12,446 19,625 16,241 10,791 16,911 10,990 13,265 5,485 9,772 2014년 10,503 15,554 12,972 9,108 15,338 9,620 12,252 4,901 11,732 2015년 8,636 12,306 10,456 8,563 14,603 8,850 11,296 4,308 18,041 2016년 9,117 13,391 10,497 9,460 17,579 10,231 12,132 4,673 29,462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07년	15,984	23,284	19,376	12,001	17,580	14,044	19,826	4,829	12,256
2010년 11,330 18,399 15,523 10,321 13,982 11,417 13,105 4,839 8,989 2011년 10,559 18,800 14,809 9,289 13,633 10,001 12,811 4,120 7,977 2012년 11,238 20,476 15,955 9,048 16,891 10,117 13,284 4,745 6,935 2013년 12,446 19,625 16,241 10,791 16,911 10,990 13,265 5,485 9,772 2014년 10,503 15,554 12,972 9,108 15,338 9,620 12,252 4,901 11,732 2015년 8,636 12,306 10,456 8,563 14,603 8,850 11,296 4,308 18,041 2016년 9,117 13,391 10,497 9,460 17,579 10,231 12,132 4,673 29,462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08년	15,934	22,176	18,753	11,519	17,175	13,491	17,151	5,299	11,416
2011년 10,559 18,800 14,809 9,289 13,633 10,001 12,811 4,120 7,977 2012년 11,238 20,476 15,955 9,048 16,891 10,117 13,284 4,745 6,935 2013년 12,446 19,625 16,241 10,791 16,911 10,990 13,265 5,485 9,772 2014년 10,503 15,554 12,972 9,108 15,338 9,620 12,252 4,901 11,732 2015년 8,636 12,306 10,456 8,563 14,603 8,850 11,296 4,308 18,041 2016년 9,117 13,391 10,497 9,460 17,579 10,231 12,132 4,673 29,462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09년	14,859	23,529	20,170	13,386	18,655	14,317	17,233	6,230	11,991
2012년 11,238 20,476 15,955 9,048 16,891 10,117 13,284 4,745 6,935 2013년 12,446 19,625 16,241 10,791 16,911 10,990 13,265 5,485 9,772 2014년 10,503 15,554 12,972 9,108 15,338 9,620 12,252 4,901 11,732 2015년 8,636 12,306 10,456 8,563 14,603 8,850 11,296 4,308 18,041 2016년 9,117 13,391 10,497 9,460 17,579 10,231 12,132 4,673 29,462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10년	11,330	18,399	15,523	10,321	13,982	11,417	13,105	4,839	8,989
2013년 12,446 19,625 16,241 10,791 16,911 10,990 13,265 5,485 9,772 2014년 10,503 15,554 12,972 9,108 15,338 9,620 12,252 4,901 11,732 2015년 8,636 12,306 10,456 8,563 14,603 8,850 11,296 4,308 18,041 2016년 9,117 13,391 10,497 9,460 17,579 10,231 12,132 4,673 29,462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11년	10,559	18,800	14,809	9,289	13,633	10,001	12,811	4,120	7,977
2014년 10,503 15,554 12,972 9,108 15,338 9,620 12,252 4,901 11,732 2015년 8,636 12,306 10,456 8,563 14,603 8,850 11,296 4,308 18,041 2016년 9,117 13,391 10,497 9,460 17,579 10,231 12,132 4,673 29,462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12년	11,238	20,476	15,955	9,048	16,891	10,117	13,284	4,745	6,935
2015년 8,636 12,306 10,456 8,563 14,603 8,850 11,296 4,308 18,041 2016년 9,117 13,391 10,497 9,460 17,579 10,231 12,132 4,673 29,462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13년	12,446	19,625	16,241	10,791	16,911	10,990	13,265	5,485	9,772
2016년 9,117 13,391 10,497 9,460 17,579 10,231 12,132 4,673 29,462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14년	10,503	15,554	12,972	9,108	15,338	9,620	12,252	4,901	11,732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15년	8,636	12,306	10,456	8,563	14,603	8,850	11,296	4,308	18,041
	2016년	9,117	13,391	10,497	9,460	17,579	10,231	12,132	4,673	29,462
2018년 9,757 13,362 10,534 9,217 15,301 11,826 11,630 4,336 30,861	2017년	9,941	14,163	11,737	10,160	22,197	12,250	14,453	4,924	35,234
	2018년	9,757	13,362	10,534	9,217	15,301	11,826	11,630	4,336	30,861

〈부표 4〉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합계	6,070,341	3,696,229	801,174	757,900	281,691	141,215
1998년	1,008	199	167	165	80	50
1999년	38,308	7,486	6,339	6,261	2,941	1,939
2000년	83,442	17,052	14,042	13,959	6,748	4,307
2001년	98,160	22,258	16,818	16,755	7,919	4,793
2002년	132,499	38,526	21,500	20,914	9,789	5,689
2003년	172,188	53,442	26,922	26,885	12,336	7,545
2004년	276,556	95,590	42,484	42,119	18,964	11,556
2005년	278,148	110,773	43,808	41,367	18,559	11,022
2006년	477,269	280,470	66,104	59,517	25,795	14,442
2007년	436,900	286,938	53,933	47,913	19,078	10,351
2008년	417,218	280,998	50,111	45,832	17,332	8,821
2009년	434,862	300,346	51,384	46,180	16,359	8,293
2010년	328,809	229,821	37,629	35,013	11,959	5,985
2011년	307,869	207,794	34,864	36,050	13,412	6,777
2012년	343,846	228,376	39,015	42,110	15,821	8,273
2013년	376,014	245,573	43,616	49,166	18,595	9,616
2014년	339,412	216,098	40,589	47,519	19,431	9,514
2015년	313,755	196,273	39,479	48,164	19,162	8,436
2016년	378,638	243,292	52,080	59,185	20,276	3,573
2017년	450,829	311,509	70,637	61,453	6,988	217
2018년	384,611	323,415	49,653	11,373	147	16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합계	82,399	53,277	36,564	25,617	47,660	146,615
1998년	29	23	18	17	40	220
1999년	1,367	1,109	845	657	1,735	7,629
2000년	3,005	2,262	1,797	1,512	3,941	14,817
2001년	3,355	2,661	2,080	1,601	4,226	15,694
2002년	3,935	2,908	2,303	1,869	4,349	20,717
2003년	5,170	3,908	3,072	2,448	6,006	24,454
2004년	8,065	5,985	4,567	3,607	8,307	35,312
2005년	7,432	5,354	4,085	3,124	6,271	26,353
2006년	9,261	6,480	4,810	3,377	5,664	1,349
2007년	6,298	4,286	3,106	2,083	2,868	46
2008년	5,053	3,373	2,328	1,617	1,747	6
2009년	4,734	3,040	1,954	1,308	1,259	5
2010년	3,370	2,205	1,368	812	644	3
2011년	3,956	2,451	1,403	775	385	2
2012년	5,041	2,850	1,578	608	172	2
2013년	5,509	2,743	995	167	33	1
2014년	4,556	1,429	239	26	9	2
2015년	2,029	196	10	4	1	1
2016년	210	11	4	4	3	_
2017년	17	3	2	1	-	2
2018년	7	-	-	-	_	-

〈부표 5〉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6,070,341	4,301,264	833,821	322,561	164,716	96,330
1998년	1,008	258	173	108	73	42
1999년	38,308	9,444	7,013	3,917	2,511	1,790
2000년	83,442	21,129	15,272	8,718	5,620	4,127
2001년	98,160	27,337	17,926	10,651	6,654	4,735
2002년	132,499	45,231	23,170	13,135	8,244	5,632
2003년	172,188	60,847	31,689	16,529	10,514	6,980
2004년	276,556	108,976	51,510	25,257	15,453	10,406
2005년	278,148	126,794	52,499	24,571	14,358	9,360
2006년	477,269	310,549	77,381	33,375	18,152	11,182
2007년	436,900	318,120	61,008	23,686	12,315	7,236
2008년	417,218	317,615	54,214	19,901	9,909	5,550
2009년	434,862	345,361	50,338	17,570	8,717	4,961
2010년	328,809	265,258	36,594	12,307	6,118	3,431
2011년	307,869	241,760	36,779	13,516	6,881	3,933
2012년	343,846	266,993	42,585	15,833	8,325	4,991
2013년	376,014	289,044	49,480	18,599	9,617	5,429
2014년	339,412	256,800	47,715	19,368	9,472	4,449
2015년	313,755	236,086	48,331	19,006	8,265	1,888
2016년	378,638	296,132	59,127	19,862	3,309	183
2017년	450,829	383,570	60,519	6,519	196	18
2018년	384,611	373,960	10,498	133	13	7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합계	61,945	42,136	30,127	21,528	49,298	146,615
1998년	26	22	20	15	51	220
1999년	1,318	1,085	864	737	2,000	7,629
2000년	3,080	2,354	1,892	1,460	4,973	14,817
2001년	3,452	2,673	2,179	1,680	5,179	15,694
2002년	3,909	3,022	2,392	1,784	5,263	20,717
2003년	5,144	3,782	3,005	2,369	6,875	24,454
2004년	7,439	5,544	4,260	3,354	9,045	35,312
2005년	6,499	4,797	3,626	2,872	6,419	26,353
2006년	7,633	5,459	4,080	2,941	5,168	1,349
2007년	4,852	3,418	2,359	1,620	2,240	46
2008년	3,678	2,466	1,743	1,043	1,093	6
2009년	3,132	2,020	1,349	794	615	5
2010년	2,225	1,387	828	407	251	3
2011년	2,462	1,408	744	284	100	2
2012년	2,827	1,536	600	137	17	2
2013년	2,715	951	151	24	3	1
2014년	1,372	199	26	5	4	2
2015년	165	8	4	-	1	1
2016년	15	3	4	2	1	
2017년	2	2	1	-	_	2
2018년	_	-	_	_	_	-

〈부표 6〉 연도별 성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명)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6,070,341	5,157,869	912,472
1998년	1,008	938	70
1999년	38,308	36,323	1,985
2000년	83,442	77,944	5,498
2001년	98,160	89,510	8,650
2002년	132,499	120,072	12,427
2003년	172,188	154,500	17,688
2004년	276,556	248,903	27,653
2005년	278,148	248,582	29,566
2006년	477,269	425,516	51,753
2007년	436,900	380,718	56,182
2008년	417,218	354,599	62,619
2009년	434,862	361,222	73,640
2010년	328,809	267,339	61,470
2011년	307,869	252,024	55,845
2012년	343,846	284,913	58,933
2013년	376,014	311,815	64,199
2014년	339,412	277,966	61,446
2015년	313,755	259,491	54,264
2016년	378,638	316,922	61,716
2017년	450,829	373,957	76,872
2018년	384,611	314,615	69,996

구분	전체	내국인	외국인
합계	6,070,341	5,486,737	583,604
1998년	1,008	1,008	-
1999년	38,308	38,308	-
2000년	83,442	83,442	-
2001년	98,160	98,160	-
2002년	132,499	132,495	4
2003년	172,188	172,187	1
2004년	276,556	272,575	3,981
2005년	278,148	275,344	2,804
2006년	477,269	453,660	23,609
2007년	436,900	404,864	32,036
2008년	417,218	368,949	48,269
2009년	434,862	394,643	40,219
2010년	328,809	306,361	22,448
2011년	307,869	280,990	26,879
2012년	343,846	312,227	31,619
2013년	376,014	335,377	40,637
2014년	339,412	291,642	47,770

313,755

378,638

450,829

384,611

268,686

313,882

367,549

314,388

〈부표 7〉 연도별 내외국인 신규 피공제자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5,069

64,756

83,280

70,223

〈부표 8〉 연도별 시도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14년	1,387,796	248,667	84,673	277,975	61,312	64,149	62,773	92,893	25,482
2015년	1,380,452	245,275	81,911	275,140	60,632	63,296	61,193	90,611	23,071
2016년	1,544,839	265,045	89,405	306,415	65,242	67,408	67,449	99,534	28,500
2017년	1,699,615	285,024	95,796	331,108	68,650	69,341	78,114	109,455	38,769
2018년	1,649,162	274,205	91,562	318,752	64,764	63,501	76,792	107,155	37,120

〈부표 9〉 연도별 적립금액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4년	1,387,796	409,671	199,066	292,917	156,699	102,062
2015년	1,380,452	394,613	199,207	297,955	162,515	103,731
2016년	1,544,839	486,009	235,393	334,427	173,925	101,436
2017년	1,699,615	593,739	287,346	359,636	163,825	93,239
2018년	1,649,162	646,264	291,397	306,742	139,551	81,163

〈부표 10〉 연도별 적립일수별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4년	1,387,796	583,352	293,744	155,998	102,171	70,693
2015년	1,380,452	573,832	299,050	161,280	103,246	68,038
2016년	1,544,839	704,643	335,580	172,550	100,760	64,218
2017년	1,699,615	867,278	360,009	162,605	92,496	59,503
2018년	1,649,162	927,266	305,629	138,677	80,472	52,722

PA
R
4
ᄣ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2014년	44,219	64,611	54,701	43,916	58,767	39,291	49,065	16,564	98,738
2015년	41,823	60,105	50,706	42,767	58,871	37,692	48,084	15,221	124,054
2016년	43,300	61,820	51,076	45,513	64,302	40,946	49,805	15,581	183,498
2017년	44,891	62,835	52,477	46,375	66,119	42,690	51,032	16,128	240,811
2018년	44,361	60,798	50,133	45,369	62,525	41,141	46,375	15,084	249,525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4년	70,544	49,441	35,154	24,996	47,246
2015년	68,781	47,734	34,302	24,626	46,988
2016년	64,992	45,250	32,863	23,960	46,584
2017년	60,207	42,194	30,972	22,922	45,535
2018년	53,473	37,999	28,158	21,139	43,276

(단위: 명)

					(LTI: 6)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4년	50,472	36,338	27,173	20,068	47,787
2015년	47,796	34,583	26,162	19,465	47,000
2016년	44,992	32,629	24,789	18,656	46,022
2017년	41,747	30,550	23,268	17,655	44,504
2018년	37,617	27,627	21,186	16,181	41,785

〈부표 11〉 연도별 성별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14년	1,387,796	1,237,687	150,109
2015년	1,380,452	1,233,125	147,327
2016년	1,544,839	1,379,621	165,218
2017년	1,699,615	1,507,819	191,796
2018년	1,649,162	1,458,290	190,872

전체

구분

40대

7	C	7	
_	Γ	j	
		H	
1	_		
1		Ι	
ı		Ш	

1 🗠	L	20-11		00-11	10-11
2014년	1,387,796	83,621		138,061	291,853
2015년	1,380,452	92,873	}	141,119	293,308
2016년	1,544,839	137,366	3	172,753	329,169
2017년	1,699,615	174,572	2	205,945	368,012
2018년	1,649,162	156,348	3	207,583	371,458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기타
구분 2014년	50대 472,737	60대 326,060	70대 67,748	80대이상 3,390	기타 4,326
2014년	472,737	326,060	67,748	3,390	4,326
2014년 2015년	472,737 471,496	326,060 314,540	67,748 56,837	3,390 2,468	4,326 7,811

20대

30대

〈부표 13〉 연령별 시도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2014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4,542,508	750,489	273,139	899,825	227,434	258,570	256,383	323,176	87,742
19세 이하	6,390	448	291	1,493	312	409	807	238	368
20~24세	12,780	1,256	714	2,323	542	844	916	925	369
25~29세	170,083	18,034	10,849	31,014	6,785	10,902	12,159	15,853	5,441
30~34세	255,864	33,991	16,602	45,405	13,411	15,730	16,753	22,210	6,563
35~39세	334,440	50,719	19,556	61,391	17,303	19,381	20,266	28,703	7,227
40~44세	354,981	57,602	20,273	70,897	17,861	19,734	19,984	25,883	6,653
45~49세	499,345	84,810	29,671	106,869	24,914	26,958	27,202	31,805	9,280
50~54세	587,110	102,397	36,745	128,700	29,543	30,845	31,763	35,926	10,604
55~59세	662,983	119,614	42,640	144,354	32,789	34,498	34,614	41,874	11,776
60~64세	616,187	111,809	37,998	127,337	30,566	33,678	33,010	42,852	11,735
65세	103,489	19,004	6,014	20,346	5,363	5,768	5,713	7,733	1,937
66~69세	338,501	61,373	19,227	62,231	18,034	20,294	18,890	26,088	6,249
70세 이상	599,126	89,172	32,470	97,129	29,938	39,496	34,250	43,014	9,506
기타	1,229	260	89	336	73	33	56	72	34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단위: 명) 기타
합계	154,920	249,863	210,348	141,341	196,441	152,209	187,869	57,803	114,956
19세 이하	91	183	107	133	289	193	205	11	812
20~24세	509	909	628	336	643	359	683	343	481
25~29세	6,194	11,534	8,086	4,918	8,220	5,094	7,230	3,362	4,408
30~34세	9,552	15,162	11,870	8,030	10,919	8,294	10,690	3,639	7,043
35~39세	13,563	18,810	15,548	11,229	13,870	10,507	12,944	4,620	8,803
40~44세	14,253	19,290	16,854	12,129	15,123	11,242	13,247	5,010	8,946
45~49세	19,086	25,098	22,379	16,224	21,097	15,599	18,595	7,257	12,501
50~54세	20,102	28,518	24,737	18,456	24,488	19,231	22,807	7,930	14,318
55~59세	20,670	31,871	27,658	20,744	27,673	21,397	26,633	7,969	16,209
60~64세	18,092	29,672	26,641	19,125	25,777	20,915	26,036	6,848	14,096
65세	2,906	5,078	4,712	3,262	4,357	3,445	4,393	1,052	2,406
66~69세	10,365	18,916	16,537	10,009	14,272	11,283	13,404	3,286	8,043
70세 이상	19,510	44,780	34,565	16,714	29,664	24,619	30,975	6,467	16,857
기타	27	42	26	32	49	31	27	9	33

〈부표 13〉 연령별 시도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2015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4,856,263	803,124	291,503	971,542	240,903	274,184	273,647	344,133	94,418
19세 이하	10,685	621	309	2,148	582	871	1,295	408	681
20~24세	28,238	2,871	1,559	5,420	1,202	1,658	1,913	2,128	766
25~29세	204,476	23,003	12,947	38,994	8,206	12,570	14,052	18,382	6,197
30~34세	277,699	38,039	18,007	50,922	14,259	16,716	17,761	23,499	7,018
35~39세	357,445	54,702	21,006	66,959	18,214	20,457	21,479	30,152	7,708
40~44세	380,020	61,889	21,737	76,820	18,883	20,915	21,320	27,444	7,153
45~49세	532,499	90,533	31,508	114,936	26,206	28,460	29,013	33,779	9,933
50~54세	624,132	109,010	38,927	137,835	31,000	32,650	33,673	38,052	11,344
55~59세	702,151	126,885	44,991	153,720	34,465	36,303	36,740	44,288	12,501
60~64세	652,098	118,264	40,189	135,407	32,235	35,508	34,904	45,468	12,435
65세	112,578	20,619	6,545	22,251	5,802	6,249	6,196	8,437	2,125
66~69세	358,120	64,839	20,338	66,058	19,006	21,398	19,961	27,687	6,693
70세 이상	614,815	91,564	33,349	99,713	30,770	40,393	35,281	44,334	9,828
기타	1,307	285	91	359	73	36	59	75	36

									(단위: 명)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63,556	262,169	220,804	149,904	211,044	161,059	199,165	62,111	132,997
19세 이하	135	265	143	246	560	379	294	74	1,674
20~24세	1,092	1,725	1,151	771	1,521	779	1,430	771	1,481
25~29세	7,159	12,882	9,177	5,923	9,972	6,039	8,671	3,975	6,327
30~34세	10,154	15,833	12,549	8,624	11,899	8,837	11,311	3,876	8,395
35~39세	14,281	19,691	16,256	11,815	14,877	11,065	13,662	4,927	10,194
40~44세	15,070	20,261	17,716	12,835	16,248	11,875	14,059	5,373	10,422
45~49세	20,034	26,388	23,519	17,106	22,729	16,554	19,675	7,719	14,407
50~54세	21,048	29,795	25,950	19,431	26,195	20,317	24,071	8,399	16,435
55~59세	21,614	33,263	28,795	21,801	29,477	22,440	28,037	8,448	18,383
60~64세	18,978	31,050	27,864	20,080	27,313	21,940	27,368	7,217	15,878
65세	3,139	5,437	5,049	3,532	4,735	3,728	4,781	1,131	2,822
66~69세	10,858	19,835	17,285	10,562	15,079	11,922	14,132	3,478	8,989
70세 이상	19,967	45,702	35,322	17,145	30,383	25,151	31,644	6,714	17,555
기타	27	42	28	33	56	33	30	9	35

〈부표 13〉 연령별 시도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2016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5,234,901	864,808	313,650	1,062,624	255,836	291,824	294,158	368,898	103,752
19세 이하	20,329	1,272	443	4,266	792	1,592	2,260	698	1,080
20~24세	53,270	5,805	3,011	11,161	2,176	2,816	3,283	3,916	1,372
25~29세	250,631	29,979	15,724	50,527	10,119	14,605	16,338	21,627	7,337
30~34세	305,370	43,132	19,633	58,388	15,245	17,825	19,127	25,100	7,717
35~39세	386,774	59,585	22,830	74,384	19,230	21,738	23,173	32,079	8,528
40~44세	410,137	66,792	23,439	84,135	20,089	22,287	23,056	29,398	7,913
45~49세	571,765	97,125	33,757	124,972	27,695	30,156	31,198	36,140	10,876
50~54세	666,962	116,487	41,523	148,761	32,624	34,533	35,884	40,512	12,357
55~59세	745,758	134,711	47,688	164,516	36,183	38,254	38,971	46,902	13,484
60~64세	695,568	125,783	42,775	145,236	34,125	37,680	37,082	48,646	13,467
65세	119,932	21,900	7,000	23,769	6,116	6,627	6,604	9,020	2,316
66~69세	377,259	68,140	21,489	69,831	19,886	22,460	20,940	29,256	7,152
70세 이상	629,641	93,793	34,245	102,208	31,483	41,211	36,174	45,527	10,114
기타	1,505	304	93	470	73	40	68	77	39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단위: 명) 기타
합계		275,560			228,623			66,784	162,459
19세 이하	176	364	304	305	1,280	761	561	123	4,052
20~24세	1,836	2,945	1,807	1,429	2,849	1,438	2,552	1,323	3,551
25~29세	8,314	14,378	10,346	7,180	12,398	7,225	10,204	4,749	9,581
30~34세	10,825	16,605	13,231	9,259	13,140	9,481	11,990	4,152	10,520
35~39세	15,037	20,653	17,023	12,506	16,104	11,811	14,409	5,267	12,417
40~44세	15,935	21,322	18,590	13,639	17,567	12,708	14,847	5,733	12,687
45~49세	21,042	27,761	24,606	18,063	24,489	17,586	20,797	8,182	17,320
50~54세	22,038	31,230	27,106	20,459	28,113	21,397	25,300	8,896	19,742
55~59세	22,473	34,712	29,965	22,849	31,482	23,605	29,374	8,928	21,661
60~64세	19,985	32,650	29,152	21,216	29,124	23,236	28,973	7,666	18,772
65세	3,292	5,735	5,258	3,744	5,037	3,936	5,061	1,205	3,312
66~69세	11,324	20,628	17,935	11,085	15,878	12,476	14,871	3,654	10,254
70세 이상	20,367	46,531	35,948	17,597	31,096	25,590	32,324	6,896	18,537
기타	29	46	30	33	66	40	34	10	53

〈부표 13〉 연령별 시도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2017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5,685,730	937,217	339,723	1,174,114	271,435	310,146	320,868	397,926	119,891
19세 이하	37,026	2,791	593	9,353	958	2,187	3,805	1,352	1,704
20~24세	95,308	11,017	5,393	21,230	3,548	4,598	5,358	6,788	2,700
25~29세	302,421	38,096	18,960	64,159	11,962	16,505	18,937	25,039	9,045
30~34세	337,453	48,742	21,632	67,129	16,184	18,976	20,967	27,030	8,908
35~39세	421,950	65,139	24,915	83,247	20,311	23,090	25,590	34,444	10,125
40~44세	446,949	72,394	25,468	93,044	21,304	23,778	25,786	31,914	9,571
45~49세	618,106	104,598	36,384	136,709	29,178	31,896	34,317	38,978	12,777
50~54세	716,797	125,057	44,401	161,426	34,453	36,448	38,806	43,429	14,267
55~59세	795,936	143,822	50,665	177,128	38,002	40,210	41,759	49,943	15,162
60~64세	745,828	134,684	45,964	156,649	36,176	40,062	39,689	52,136	15,049
65세	127,366	23,267	7,449	25,351	6,427	6,957	7,006	9,579	2,502
66~69세	396,251	71,518	22,672	73,571	20,754	23,468	21,944	30,714	7,660
70세 이상	642,647	95,776	35,128	104,539	32,104	41,924	36,830	46,501	10,380
기타	1,692	316	99	579	74	47	74	79	41

									(단위: 명)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82,614	289,723	243,038	169,524	250,820	183,540	225,750	71,708	197,693
19세 이하	226	537	443	453	2,086	1,359	1,329	171	7,679
20~24세	3,024	4,596	2,973	2,488	5,631	2,724	4,311	2,113	6,816
25~29세	9,493	15,723	11,671	8,473	15,416	8,651	11,793	5,361	13,137
30~34세	11,530	17,423	13,955	9,885	14,687	10,272	12,788	4,402	12,943
35~39세	15,852	21,729	17,864	13,264	17,771	12,694	15,253	5,592	15,070
40~44세	16,842	22,516	19,628	14,455	19,288	13,665	15,771	6,130	15,395
45~49세	22,063	29,255	25,889	19,145	26,661	18,810	22,086	8,715	20,645
50~54세	23,101	32,752	28,332	21,518	30,520	22,623	26,698	9,441	23,525
55~59세	23,500	36,247	31,215	23,905	33,751	24,931	30,917	9,414	25,365
60~64세	21,023	34,357	30,533	22,431	31,274	24,611	30,883	8,131	22,176
65세	3,463	5,996	5,492	3,920	5,324	4,145	5,362	1,274	3,852
66~69세	11,751	21,338	18,558	11,603	16,689	13,019	15,575	3,861	11,556
70세 이상	20,717	47,207	36,454	17,950	31,648	25,990	32,945	7,093	19,461
기타	29	47	31	34	74	46	39	10	73

〈부표 13〉 연령별 시도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2018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6,070,341	999,398	362,208	1,269,804	284,763	325,214	342,685	423,839	131,196
19세 이하	52,362	4,544	887	13,760	1,318	2,465	4,800	1,947	2,039
20~24세	132,990	15,662	7,487	30,108	4,777	6,212	7,398	9,689	3,724
25~29세	335,983	43,635	20,930	73,086	13,141	17,736	20,659	27,341	9,970
30~34세	362,868	53,276	23,241	74,115	16,940	19,839	22,303	28,585	9,687
35~39세	452,001	69,916	26,691	91,059	21,287	24,160	27,577	36,559	11,255
40~44세	478,710	77,099	27,289	100,978	22,408	25,090	28,089	34,174	10,703
45~49세	659,195	111,152	38,716	147,266	30,503	33,452	37,057	41,629	14,139
50~54세	760,590	132,572	47,009	172,631	35,877	38,186	41,332	46,147	15,577
55~59세	838,851	151,580	53,301	187,885	39,517	41,805	44,087	52,665	16,357
60~64세	795,301	143,434	49,192	168,074	38,233	42,183	42,000	55,678	16,382
65세	133,865	24,375	7,825	26,776	6,717	7,287	7,308	10,063	2,640
66~69세	412,553	74,387	23,663	77,021	21,447	24,244	22,694	31,956	8,124
70세 이상	653,364	97,448	35,878	106,461	32,524	42,507	37,307	47,326	10,557
기타	1,708	318	99	584	74	48	74	80	42

구분	광주								
	от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92,371	303,085	253,572	178,741	266,121	195,366	237,380	76,044	228,554
19세 이하	343	816	786	649	2,959	2,303	2,068	336	10,342
20~24세	4,441	6,356	4,114	3,490	7,253	4,037	5,693	2,673	9,876
25~29세	10,474	16,741	12,501	9,364	16,664	9,734	12,717	5,739	15,551
30~34세	12,201	18,138	14,524	10,437	15,626	10,983	13,399	4,662	14,912
35~39세	16,654	22,653	18,636	13,948	18,932	13,486	15,921	5,900	17,367
40~44세	17,726	23,615	20,457	15,223	20,524	14,541	16,576	6,515	17,703
45~49세	23,095	30,619	27,076	20,085	28,232	19,966	23,190	9,233	23,785
50~54세	24,065	34,208	29,531	22,527	32,259	23,827	27,925	9,949	26,968
55~59세	24,409	37,681	32,343	24,926	35,499	26,133	32,163	9,845	28,655
60~64세	22,098	36,131	31,928	23,642	33,145	26,099	32,599	8,604	25,879
65세	3,594	6,246	5,692	4,097	5,574	4,324	5,605	1,338	4,404
66~69세	12,162	22,012	19,072	12,048	17,277	13,511	16,140	4,027	12,768
70세 이상	21,080	47,822	36,881	18,271	32,103	26,375	33,345	7,213	20,266
기타	29	47	31	34	74	47	39	10	78

〈부표 14〉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4년	4,542,508	2,621,740	589,325	577,725	235,118	128,973
19세 이하	6,390	4,017	1,083	901	278	78
20~24세	12,780	10,940	1,093	614	105	21
25~29세	170,083	145,349	12,708	8,269	2,348	903
30~34세	255,864	206,434	20,697	16,434	5,604	2,648
35~39세	334,440	234,291	34,963	29,067	10,663	5,356
40~44세	354,981	209,640	46,351	42,185	17,304	9,148
45~49세	499,345	271,550	68,055	67,625	29,337	16,458
50~54세	587,110	306,481	78,844	81,262	37,362	22,160
55~59세	662,983	337,137	87,693	91,866	43,528	26,240
60~64세	616,187	314,830	82,032	88,187	39,831	23,647
65세	103,489	53,241	14,450	16,789	6,609	3,564
66~69세	338,501	174,812	50,063	57,415	20,775	10,486
70세 이상	599,126	351,847	91,279	77,100	21,373	8,264
기타	1,229	1,171	14	11	1	_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단위: 명) 기타
2014년	80,136	53,067	36,548	25,608	47,656	146,612
19세 이하	22	10	1	-	-	-
20~24세	5	1	-	-	-	1
25~29세	325	127	40	7	5	2
30~34세	1,270	579	236	106	89	1,767
35~39세	2,935	1,672	942	513	622	13,416
40~44세	5,347	3,344	2,117	1,348	2,109	16,088
45~49세	10,504	7,065	4,725	3,243	6,021	14,762
50~54세	14,482	10,139	7,104	5,099	10,231	13,946
55~59세	17,791	12,586	9,388	6,993	14,103	15,658
60~64세	15,864	11,022	8,124	5,912	10,844	15,894
65세	2,183	1,337	906	602	937	2,871
66~69세	5,724	3,338	2,022	1,225	1,959	10,682
70세 이상	3,684	1,846	943	560	736	41,494
기타	_	1	-	_	-	31

〈부표 14〉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5년	4,856,263	2,818,013	628,804	625,889	254,280	137,409
19세 이하	10,685	6,341	2,129	1,641	437	104
20~24세	28,238	24,552	2,292	1,153	193	36
25~29세	204,476	173,102	15,876	10,610	3,139	1,187
30~34세	277,699	220,514	23,437	19,534	6,882	3,162
35~39세	357,445	248,467	38,040	32,485	12,181	5,990
40~44세	380,020	224,764	49,579	46,031	19,087	9,973
45~49세	532,499	291,125	72,366	72,835	31,863	17,649
50~54세	624,132	327,971	83,626	87,301	40,289	23,543
55~59세	702,151	359,969	92,742	98,383	46,492	27,647
60~64세	652,098	335,057	86,739	95,446	42,301	24,644
65세	112,578	57,411	15,785	19,124	7,402	3,933
66~69세	358,120	185,331	52,876	61,805	22,003	11,042
70세 이상	614,815	362,169	93,299	79,526	22,010	8,499
기타	1,307	1,240	18	15	1	_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난위: 명) 기타
2015년	82,165	53,263	36,558	25,612	47,657	146,613
19세 이하	22	10	1	_	_	-
20~24세	10	1	-	-	-	1
25~29세	372	135	41	7	5	2
30~34세	1,374	595	238	107	89	1,767
35~39세	3,105	1,682	944	513	622	13,416
40~44세	5,555	3,365	2,120	1,348	2,110	16,088
45~49세	10,815	7,094	4,725	3,244	6,021	14,762
50~54세	14,842	10,179	7,104	5,100	10,231	13,946
55~59세	18,154	12,621	9,389	6,993	14,103	15,658
60~64세	16,093	11,042	8,125	5,913	10,844	15,894
65세	2,264	1,343	906	602	937	2,871
66~69세	5,829	3,346	2,022	1,225	1,959	10,682
70세 이상	3,730	1,849	943	560	736	41,494
기타	_	1	_	-	_	32

〈부표 14〉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6년	5,234,901	3,061,305	680,884	685,074	274,556	140,982
19세 이하	20,329	12,446	4,314	2,835	590	111
20~24세	53,270	46,901	4,029	1,921	349	56
25~29세	250,631	209,585	20,620	14,233	4,270	1,350
30~34세	305,370	237,917	27,375	24,075	8,411	3,403
35~39세	386,774	266,204	42,280	37,607	14,071	6,305
40~44세	410,137	242,856	53,893	51,281	21,153	10,339
45~49세	571,765	314,297	77,972	79,917	34,718	18,166
50~54세	666,962	353,313	89,689	94,906	43,454	24,155
55~59세	745,758	386,186	98,960	105,944	49,500	28,214
60~64세	695,568	359,583	93,574	104,391	44,953	25,137
65세	119,932	61,616	16,923	20,657	7,803	4,008
66~69세	377,259	196,537	55,852	65,759	22,862	11,180
70세 이상	629,641	372,456	95,358	81,530	22,421	8,558
기타	1,505	1,408	45	18	1	_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난위: 명) 기타
2016년	82,375	53,274	36,562	25,616	47,660	146,613
19세 이하	22	10	1	-	_	-
20~24세	11	2	-	-	_	1
25~29세	381	136	42	7	5	2
30~34세	1,391	597	238	107	89	1,767
35~39세	3,128	1,682	945	514	622	13,416
40~44세	5,581	3,368	2,120	1,348	2,110	16,088
45~49세	10,846	7,095	4,726	3,245	6,021	14,762
50~54세	14,881	10,180	7,105	5,101	10,232	13,946
55~59세	18,188	12,622	9,389	6,993	14,104	15,658
60~64세	16,111	11,042	8,125	5,914	10,844	15,894
65세	2,266	1,343	906	602	937	2,871
66~69세	5,835	3,346	2,022	1,225	1,959	10,682
70세 이상	3,734	1,850	943	560	737	41,494
기타	_	1	-	-	-	32

〈부표 14〉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7년	5,685,730	751,521	746,527	281,544	141,199	82,392
19세 이하	37,026	6,861	3,687	627	112	22
20~24세	95,308	6,912	3,136	471	58	11
25~29세	302,421	26,290	18,500	4,749	1,358	382
30~34세	337,453	32,758	28,636	8,931	3,424	1,393
35~39세	421,950	48,500	43,228	14,759	6,333	3,130
40~44세	446,949	60,529	57,290	21,844	10,361	5,585
45~49세	618,106	86,113	87,656	35,755	18,208	10,850
50~54세	716,797	98,522	103,271	44,617	24,190	14,882
55~59세	795,936	107,573	114,217	50,576	28,243	18,189
60~64세	745,828	102,902	113,409	45,731	25,153	16,112
65세	127,366	18,274	22,041	7,893	4,009	2,266
66~69세	396,251	59,211	68,650	23,082	11,189	5,836
70세 이상	642,647	97,026	82,787	22,508	8,561	3,734
기타	1,692	50	19	1	-	_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단위: 명) 기타
2017년	3,372,814	53,277	36,564	25,617	47,660	146,615
19세 이하	25,706	10	1	-	-	-
20~24세	84,717	2	-	-	-	1
25~29세	250,949	137	42	7	5	2
30~34세	259,513	597	238	107	89	1,767
35~39세	288,821	1,682	945	514	622	13,416
40~44세	266,305	3,368	2,120	1,349	2,110	16,088
45~49세	343,674	7,095	4,727	3,245	6,021	14,762
50~54세	384,750	10,181	7,105	5,101	10,232	13,946
55~59세	418,372	12,622	9,389	6,993	14,104	15,658
60~64세	390,702	11,042	8,125	5,914	10,844	15,894
65세	66,224	1,343	906	602	937	2,871
66~69세	209,048	3,346	2,023	1,225	1,959	10,682
70세 이상	382,446	1,851	943	560	737	41,494
기타	1,587	1	-	-	-	34

〈부표 14〉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8년	6,070,341	801,174	757,900	281,691	141,215	82,399
19세 이하	52,362	8,344	3,915	628	112	22
20~24세	132,990	8,631	3,408	474	58	11
25~29세	335,983	29,552	19,216	4,764	1,359	382
30~34세	362,868	36,316	29,487	8,938	3,427	1,393
35~39세	452,001	52,843	44,344	14,775	6,335	3,130
40~44세	478,710	65,254	58,416	21,869	10,362	5,585
45~49세	659,195	92,016	89,138	35,777	18,210	10,851
50~54세	760,590	104,860	104,892	44,633	24,192	14,882
55~59세	838,851	113,594	115,517	50,590	28,243	18,191
60~64세	795,301	110,910	115,189	45,744	25,155	16,114
65세	133,865	19,286	22,249	7,895	4,009	2,266
66~69세	412,553	61,473	69,124	23,086	11,191	5,836
70세 이상	653,364	98,045	82,986	22,517	8,562	3,736
기타	1,708	50	19	1	-	-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8년	3,696,229	53,277	36,564	25,617	47,660	146,615
19세 이하	39,330	10	1	-	-	-
20~24세	120,405	2	-	-	-	1
25~29세	280,517	137	42	7	5	2
30~34세	280,509	597	238	107	89	1,767
35~39세	313,395	1,682	945	514	622	13,416
40~44세	292,189	3,368	2,120	1,349	2,110	16,088
45~49세	377,353	7,095	4,727	3,245	6,021	14,762
50~54세	420,566	10,181	7,105	5,101	10,232	13,946
55~59세	453,950	12,622	9,389	6,993	14,104	15,658
60~64세	430,370	11,042	8,125	5,914	10,844	15,894
65세	71,501	1,343	906	602	937	2,871
66~69세	222,608	3,346	2,023	1,225	1,959	10,682
70세 이상	391,933	1,851	943	560	737	41,494
기타	1,603	1	-	-	-	34

〈부표 15〉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4년	4,542,508	3,011,516	655,346	277,041	152,933	94,234
19세 이하	6,390	5,111	887	283	76	22
20~24세	12,780	12,033	617	104	19	5
25~29세	170,083	158,006	8,326	2,354	898	322
30~34세	255,864	225,338	17,769	5,899	2,756	1,291
35~39세	334,440	261,043	34,508	12,140	5,933	3,223
40~44세	354,981	242,620	48,870	20,221	10,545	6,152
45~49세	499,345	319,709	75,294	33,818	18,921	11,946
50~54세	587,110	362,463	89,249	41,927	24,859	16,110
55~59세	662,983	399,015	99,933	48,592	29,121	19,334
60~64세	616,187	369,047	97,246	44,491	26,686	17,561
65세	103,489	62,093	18,795	7,381	4,226	2,642
66~69세	338,501	203,841	64,420	24,753	13,117	7,829
70세 이상	599,126	390,017	99,420	35,073	15,776	7,797
기타	1,229	1,180	12	5	-	-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4년	61,763	42,123	30,118	21,526	49,296	146,612
19세 이하	10	1	-	_	-	-
20~24세	1	-	-	-	-	1
25~29세	126	38	6	3	2	2
30~34세	597	241	107	58	41	1,767
35~39세	1,772	995	596	330	484	13,416
40~44세	3,682	2,389	1,520	966	1,928	16,088
45~49세	7,791	5,152	3,669	2,538	5,745	14,762
50~54세	11,039	7,690	5,711	4,112	10,004	13,946
55~59세	13,834	10,083	7,532	5,664	14,217	15,658
60~64세	12,374	9,085	6,788	5,083	11,932	15,894
65세	1,660	1,157	877	581	1,206	2,871
66~69세	4,766	3,016	2,044	1,405	2,628	10,682
70세 이상	4,110	2,276	1,268	786	1,109	41,494
기타	1	-	-	-	-	31

〈부표 15〉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5년	4,856,263	3,247,602	703,677	296,047	161,198	96,122
19세 이하	10,685	8,492	1,621	439	100	22
20~24세	28,238	26,861	1,142	189	34	10
25~29세	204,476	188,946	10,667	3,137	1,173	368
30~34세	277,699	242,182	20,874	7,172	3,259	1,383
35~39세	357,445	278,333	37,944	13,625	6,563	3,377
40~44세	380,020	261,007	52,728	21,993	11,355	6,344
45~49세	532,499	343,629	80,538	36,324	20,081	12,244
50~54세	624,132	388,789	95,316	44,820	26,223	16,445
55~59세	702,151	426,959	106,467	51,540	30,500	19,669
60~64세	652,098	393,993	104,543	46,953	27,664	17,770
65세	112,578	67,602	21,148	8,167	4,584	2,720
66~69세	358,120	217,190	68,817	25,982	13,655	7,930
70세 이상	614,815	402,366	101,856	35,701	16,007	7,840
기타	1,307	1,253	16	5	-	-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5년	61,928	42,131	30,122	21,526	49,297	146,613
19세 이하	10	1	-	-	-	-
20~24세	1	-	-	-	-	1
25~29세	133	39	6	3	2	2
30~34세	613	242	108	58	41	1,767
35~39세	1,780	997	596	330	484	13,416
40~44세	3,698	2,392	1,520	966	1,929	16,088
45~49세	7,816	5,152	3,670	2,538	5,745	14,762
50~54세	11,075	7,690	5,712	4,112	10,004	13,946
55~59세	13,861	10,084	7,532	5,664	14,217	15,658
60~64세	12,392	9,085	6,789	5,083	11,932	15,894
65세	1,665	1,157	877	581	1,206	2,871
66~69세	4,771	3,016	2,044	1,405	2,628	10,682
70세 이상	4,112	2,276	1,268	786	1,109	41,494
기타	1	-	-	-	_	32

〈부표 15〉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6년	5,234,901	3,543,734	762,804	315,909	164,507	96,305
19세 이하	20,329	16,802	2,798	589	107	22
20~24세	53,270	50,960	1,903	343	50	11
25~29세	250,631	230,236	14,257	4,260	1,314	377
30~34세	305,370	263,578	25,404	8,674	3,483	1,400
35~39세	386,774	300,370	43,078	15,459	6,865	3,397
40~44세	410,137	283,490	57,986	24,007	11,692	6,365
45~49세	571,765	372,487	87,641	39,122	20,559	12,270
50~54세	666,962	420,302	102,927	47,916	26,794	16,480
55~59세	745,758	459,501	114,030	54,488	31,022	19,699
60~64세	695,568	425,454	113,466	49,558	28,128	17,785
65세	119,932	72,963	22,675	8,565	4,650	2,722
66~69세	377,259	231,409	72,759	26,830	13,780	7,935
70세 이상	629,641	414,734	103,861	36,093	16,063	7,842
기타	1,505	1,448	19	5	-	-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6년	61,943	42,134	30,126	21,528	49,298	146,613
19세 이하	10	1	-	-	-	_
20~24세	2	-	-	-	-	1
25~29세	134	40	6	3	2	2
30~34세	615	242	108	58	41	1,767
35~39세	1,780	998	597	330	484	13,416
40~44세	3,702	2,392	1,520	966	1,929	16,088
45~49세	7,818	5,152	3,671	2,538	5,745	14,762
50~54세	11,076	7,691	5,713	4,113	10,004	13,946
55~59세	13,862	10,084	7,532	5,665	14,217	15,658
60~64세	12,393	9,085	6,790	5,083	11,932	15,894
65세	1,665	1,157	877	581	1,206	2,871
66~69세	4,771	3,016	2,044	1,405	2,628	10,682
70세 이상	4,114	2,276	1,268	786	1,110	41,494
기타	1	-	-	-	-	32

〈부표 15〉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7년	5,685,730	3,927,304	823,323	322,428	164,703	96,323
19세 이하	37,026	32,624	3,637	624	108	22
20~24세	95,308	91,684	3,098	460	52	11
25~29세	302,421	277,377	18,453	4,703	1,322	378
30~34세	337,453	290,656	29,896	9,165	3,503	1,402
35~39세	421,950	329,342	48,612	16,102	6,890	3,399
40~44세	446,949	313,734	63,892	24,644	11,712	6,369
45~49세	618,106	410,163	95,310	40,075	20,597	12,274
50~54세	716,797	460,758	111,177	49,013	26,824	16,482
55~59세	795,936	500,501	122,174	55,495	31,048	19,700
60~64세	745,828	466,099	122,337	50,285	28,144	17,786
65세	127,366	78,957	24,031	8,648	4,651	2,722
66~69세	396,251	247,355	75,590	27,037	13,786	7,936
70세 이상	642,647	426,422	105,096	36,172	16,066	7,842
기타	1,692	1,632	20	5	-	-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7년	61,945	42,136	30,127	21,528	49,298	146,615
19세 이하	10	1	_	_	-	_
20~24세	2	-	-	-	-	1
25~29세	135	40	6	3	2	2
30~34세	615	242	108	58	41	1,767
35~39세	1,780	998	597	330	484	13,416
40~44세	3,702	2,392	1,521	966	1,929	16,088
45~49세	7,818	5,153	3,671	2,538	5,745	14,762
50~54세	11,076	7,691	5,713	4,113	10,004	13,946
55~59세	13,862	10,084	7,532	5,665	14,217	15,658
60~64세	12,393	9,085	6,790	5,083	11,932	15,894
65세	1,665	1,157	877	581	1,206	2,871
66~69세	4,771	3,017	2,044	1,405	2,628	10,682
70세 이상	4,115	2,276	1,268	786	1,110	41,494
기타	1	-	-	-	_	34

〈부표 15〉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8년	6,070,341	4,301,264	833,821	322,561	164,716	96,330
19세 이하	52,362	47,748	3,848	625	108	22
20~24세	132,990	129,115	3,346	463	52	11
25~29세	335,983	310,252	19,124	4,718	1,323	378
30~34세	362,868	315,255	30,703	9,172	3,505	1,402
35~39세	452,001	358,334	49,658	16,114	6,891	3,399
40~44세	478,710	344,437	64,928	24,665	11,713	6,369
45~49세	659,195	449,863	96,677	40,094	20,599	12,275
50~54세	760,590	503,034	112,676	49,029	26,826	16,482
55~59세	838,851	542,200	123,374	55,509	31,048	19,702
60~64세	795,301	513,942	123,952	50,297	28,145	17,788
65세	133,865	85,263	24,222	8,650	4,651	2,722
66~69세	412,553	263,224	76,018	27,040	13,788	7,936
70세 이상	653,364	436,949	105,275	36,180	16,067	7,844
기타	1,708	1,648	20	5	-	-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단위: 명 기타
2018년	61,945	42,136	30,127	21,528	49,298	146,615
19세 이하	10	1	-	-	-	_
20~24세	2	-	-	-	-	1
25~29세	135	40	6	3	2	2
30~34세	615	242	108	58	41	1,767
35~39세	1,780	998	597	330	484	13,416
40~44세	3,702	2,392	1,521	966	1,929	16,088
45~49세	7,818	5,153	3,671	2,538	5,745	14,762
50~54세	11,076	7,691	5,713	4,113	10,004	13,946
55~59세	13,862	10,084	7,532	5,665	14,217	15,658
60~64세	12,393	9,085	6,790	5,083	11,932	15,894
65세	1,665	1,157	877	581	1,206	2,871
66~69세	4,771	3,017	2,044	1,405	2,628	10,682
70세 이상	4,115	2,276	1,268	786	1,110	41,494
기타	1	-	-	-	-	34

〈부표 16〉 연령별 성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2014년	남성	여성	2015년	남성	여성	2016년	남성	여성
합계	4,542,508	3,892,884	649,624	4,856,263	4,152,375	703,888	5,234,901	4,469,297	765,604
19세 이하	6,390	5,642	748	10,685	9,810	875	20,329	19,219	1,110
20~24세	12,780	12,392	388	28,238	27,141	1,097	53,270	50,876	2,394
25~29세	170,083	163,546	6,537	204,476	195,915	8,561	250,631	239,510	11,121
30~34세	255,864	243,065	12,799	277,699	262,500	15,199	305,370	286,949	18,421
35~39세	334,440	306,579	27,861	357,445	325,251	32,194	386,774	349,519	37,255
40~44세	354,981	308,997	45,984	380,020	328,656	51,364	410,137	352,839	57,298
45~49세	499,345	427,960	71,385	532,499	454,046	78,453	571,765	485,112	86,653
50~54세	587,110	504,769	82,341	624,132	533,707	90,425	666,962	566,749	100,213
55~59세	662,983	563,149	99,834	702,151	593,307	108,844	745,758	626,499	119,259
60~64세	616,187	514,665	101,522	652,098	543,012	109,086	695,568	578,351	117,217
65세	103,489	86,033	17,456	112,578	93,975	18,603	119,932	100,215	19,717
66~69세	338,501	281,094	57,407	358,120	297,474	60,646	377,259	313,681	63,578
70세 이상	599,126	474,043	125,083	614,815	486,578	128,237	629,641	498,638	131,003
기타	1,229	950	279	1,307	1,003	304	1,505	1,140	365

구분	2017년	남성	여성	2018년	남성	(단위: 명) 여성
합계	5,685,730	4,843,254	842,476	6,070,341	5,157,869	912,472
19세 이하	37,026	35,494	1,532	52,362	50,199	2,163
20~24세	95,308	90,358	4,950	132,990	125,328	7,662
25~29세	302,421	287,866	14,555	335,983	318,193	17,790
30~34세	337,453	314,618	22,835	362,868	335,733	27,135
35~39세	421,950	378,447	43,503	452,001	402,527	49,474
40~44세	446,949	382,294	64,655	478,710	406,981	71,729
45~49세	618,106	521,122	96,984	659,195	552,566	106,629
50~54세	716,797	604,235	112,562	760,590	636,951	123,639
55~59세	795,936	663,850	132,086	838,851	695,842	143,009
60~64세	745,828	618,911	126,917	795,301	659,784	135,517
65세	127,366	106,326	21,040	133,865	111,766	22,099
66~69세	396,251	329,436	66,815	412,553	343,185	69,368
70세 이상	642,647	509,037	133,610	653,364	517,542	135,822
기타	1,692	1,260	432	1,708	1,272	436

〈부표 17〉 연령별 내외국인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2014년	내국인	외국인	2015년	내국인	외국인	2016년	내국인	외국인
합계	4,542,508	4,222,202	320,306	4,856,263	4,490,887	365,376	5,234,901	4,804,769	430,132
19세 이하	6,390	285	6,105	10,685	294	10,391	20,329	332	19,997
20~24세	12,780	12,631	149	28,238	27,947	291	53,270	52,393	877
25~29세	170,083	166,719	3,364	204,476	199,020	5,456	250,631	241,101	9,530
30~34세	255,864	240,118	15,746	277,699	256,229	21,470	305,370	275,113	30,257
35~39세	334,440	312,324	22,116	357,445	330,669	26,776	386,774	353,220	33,554
40~44세	354,981	326,659	28,322	380,020	347,645	32,375	410,137	372,078	38,059
45~49세	499,345	457,866	41,479	532,499	486,232	46,267	571,765	518,848	52,917
50~54세	587,110	537,907	49,203	624,132	569,425	54,707	666,962	605,445	61,517
55~59세	662,983	609,700	53,283	702,151	643,298	58,853	745,758	680,121	65,637
60~64세	616,187	569,100	47,087	652,098	600,425	51,673	695,568	638,767	56,801
65세	103,489	95,417	8,072	112,578	103,570	9,008	119,932	110,035	9,897
66~69세	338,501	314,158	24,343	358,120	331,770	26,350	377,259	348,776	28,483
70세 이상	599,126	578,583	20,543	614,815	593,626	21,189	629,641	607,802	21,839
기타	1,229	735	494	1,307	737	570	1,505	738	767

						(단위: 명)
구분	2017년	내국인	외국인	2018년	내국인	외국인
합계	5,685,730	5,172,316	513,414	6,070,341	5,486,704	583,637
19세 이하	37,026	510	36,516	52,362	1,423	50,939
20~24세	95,308	92,826	2,482	132,990	128,783	4,207
25~29세	302,421	287,105	15,316	335,983	315,805	20,178
30~34세	337,453	297,411	40,042	362,868	314,888	47,980
35~39세	421,950	380,493	41,457	452,001	403,982	48,019
40~44세	446,949	402,293	44,656	478,710	428,517	50,193
45~49세	618,106	557,497	60,609	659,195	591,961	67,234
50~54세	716,797	646,910	69,887	760,590	683,642	76,948
55~59세	795,936	721,555	74,381	838,851	757,722	81,129
60~64세	745,828	682,483	63,345	795,301	726,082	69,219
65세	127,366	116,528	10,838	133,865	122,288	11,577
66~69세	396,251	365,755	30,496	412,553	380,372	32,181
70세 이상	642,647	620,211	22,436	653,364	630,499	22,865
기타	1,692	739	953	1,708	740	968

〈부표 18〉 시도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4년	4,542,508	2,621,740	589,325	577,725	235,118	128,973
서울	750,489	400,265	96,517	106,709	47,761	26,762
인천	273,139	155,214	34,219	35,057	14,633	8,472
경기	899,825	506,217	113,268	117,903	50,496	28,672
대구	227,434	130,139	31,324	29,409	11,194	6,079
경북	258,570	154,943	34,096	31,084	11,757	6,265
경남	256,383	163,638	32,434	28,493	10,117	4,904
부산	323,176	187,833	41,902	41,375	15,814	8,598
울산	87,742	54,148	11,005	10,454	4,201	2,258
광주	154,920	88,056	22,176	20,571	7,841	4,115
전남	249,863	148,247	32,259	29,378	11,684	6,391
전북	210,348	122,769	29,886	27,131	9,807	5,028
대전	141,341	75,306	19,463	19,287	7,901	4,517
충남	196,441	115,322	25,059	24,083	9,714	5,334
충북	152,209	88,827	20,563	18,873	7,578	3,972
강원	187,869	113,818	24,313	22,294	8,514	4,455
제주	57,803	36,698	7,934	6,954	2,471	1,164
기타	114,956	80,300	12,907	8,670	3,635	1,987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단위: 명) 기타
2014년	80,136	53,067	36,548	25,608	47,656	146,612
서울	16,664	11,209	7,801	5,490	9,553	21,758
인천	5,530	3,699	2,669	1,980	3,900	7,766
경기	18,011	12,228	8,561	6,127	11,798	26,544
대구	3,903	2,610	1,786	1,373	2,893	6,724
경북	3,710	2,403	1,619	1,127	2,111	9,455
경남	2,726	1,738	1,145	747	1,447	8,994
부산	5,427	3,701	2,574	1,819	3,427	10,706
울산	1,302	742	354	229	348	2,701
광주	2,531	1,668	1,147	819	1,600	4,396
전남	4,170	2,825	1,929	1,210	2,411	9,359
전북	2,946	1,775	1,246	805	1,314	7,641
대전	2,990	2,102	1,464	972	1,986	5,353
충남	3,322	2,184	1,388	943	1,426	7,666
충북	2,311	1,452	979	701	1,261	5,692
강원	2,757	1,626	1,136	740	1,240	6,976
제주	610	301	181	105	154	1,231
기타	1,226	804	569	421	787	3,650

〈부표 18〉 시도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5년	4,856,263	2,818,013	628,804	625,889	254,280	137,409
서울	803,124	429,873	102,974	116,418	52,216	28,688
인천	291,503	166,401	36,468	37,996	15,888	9,040
경기	971,542	548,571	122,247	129,754	55,835	31,179
대구	240,903	138,615	33,052	31,528	11,931	6,400
경북	274,184	165,368	36,207	33,115	12,453	6,532
경남	273,647	175,696	34,432	30,701	10,811	5,141
부산	344,133	200,762	44,544	44,894	16,986	9,159
울산	94,418	58,746	11,827	11,299	4,483	2,373
광주	163,556	93,720	23,350	21,745	8,235	4,301
전남	262,169	156,677	33,724	30,934	12,220	6,627
전북	220,804	129,897	31,163	28,520	10,255	5,205
대전	149,904	80,534	20,647	20,681	8,392	4,731
충남	211,044	124,874	26,916	26,141	10,464	5,641
충북	161,059	94,512	21,685	20,178	8,054	4,181
강원	199,165	121,346	25,773	23,908	8,983	4,640
제주	62,111	40,029	8,410	7,340	2,559	1,187
기타	132,997	92,392	15,385	10,737	4,515	2,384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5년	82,165	53,263	36,558	25,612	47,657	146,613
서울	17,101	11,250	7,803	5,490	9,553	21,758
인천	5,686	3,707	2,670	1,981	3,900	7,766
경기	18,625	12,297	8,565	6,127	11,798	26,544
대구	3,982	2,619	1,786	1,373	2,893	6,724
경북	3,790	2,406	1,620	1,127	2,111	9,455
경남	2,789	1,743	1,146	747	1,447	8,994
부산	5,544	3,716	2,574	1,820	3,428	10,706
울산	1,316	742	354	229	348	2,701
광주	2,571	1,672	1,147	819	1,600	4,396
전남	4,242	2,835	1,929	1,211	2,411	9,359
전북	2,980	1,778	1,246	805	1,314	7,641
대전	3,037	2,106	1,464	973	1,986	5,353
충남	3,395	2,190	1,388	943	1,426	7,666
충북	2,360	1,456	979	701	1,261	5,692
강원	2,793	1,630	1,136	740	1,240	6,976
제주	614	301	181	105	154	1,231
기타 	1,340	815	570	421	787	3,651

〈부표 18〉 시도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6년	5,234,901	3,061,305	680,884	685,074	274,556	140,982
서울	864,808	465,865	111,595	128,297	56,551	29,487
인천	313,650	180,215	39,491	41,770	17,198	9,259
경기	1,062,624	604,044	134,836	145,429	61,964	32,324
대구	255,836	148,459	35,098	33,781	12,592	6,526
경북	291,824	177,398	38,669	35,471	13,153	6,619
경남	294,158	189,739	37,158	33,558	11,578	5,251
부산	368,898	216,294	47,998	49,096	18,363	9,342
울산	103,752	64,832	13,188	12,728	4,883	2,429
광주	172,673	99,861	24,606	22,983	8,643	4,373
전남	275,560	166,128	35,387	32,610	12,732	6,709
전북	231,301	136,851	32,697	30,065	10,647	5,273
대전	159,364	86,621	22,007	22,165	8,837	4,808
충남	228,623	136,668	29,399	28,475	11,287	5,777
충북	171,290	101,163	23,159	21,760	8,486	4,266
강원	211,297	129,751	27,450	25,486	9,388	4,704
제주	66,784	43,785	8,888	7,712	2,621	1,192
기타	162,459	113,631	19,258	13,688	5,633	2,643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단위: 명) 기타
2016년	82,375	53,274	36,562	25,616	47,660	146,613
서울	17,154	11,252	7,805	5,490	9,554	21,758
인천	5,693	3,707	2,670	1,981	3,900	7,766
경기	18,692	12,300	8,566	6,127	11,798	26,544
대구	3,985	2,619	1,786	1,373	2,893	6,724
경북	3,795	2,406	1,620	1,127	2,111	9,455
경남	2,796	1,744	1,146	747	1,447	8,994
부산	5,554	3,717	2,574	1,824	3,430	10,706
울산	1,318	742	354	229	348	2,701
광주	2,573	1,672	1,147	819	1,600	4,396
전남	4,248	2,836	1,929	1,211	2,411	9,359
전북	2,984	1,778	1,246	805	1,314	7,641
대전	3,043	2,107	1,464	973	1,986	5,353
충남	3,403	2,190	1,389	943	1,426	7,666
충북	2,367	1,456	979	701	1,261	5,692
강원	2,795	1,631	1,136	740	1,240	6,976
제주	614	301	181	105	154	1,231
기타 	1,361	816	570	421	787	3,651

〈부표 18〉 시도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7년	5,685,730	3,372,814	751,521	746,527	281,544	141,199
서울	937,217	512,339	123,973	140,509	57,859	29,521
인천	339,723	198,214	43,442	45,484	17,597	9,269
경기	1,174,114	678,671	152,639	162,165	64,213	32,392
대구	271,435	159,529	37,480	35,714	12,803	6,529
경북	310,146	190,812	41,383	37,459	13,353	6,624
경남	320,868	208,765	41,244	36,823	11,901	5,258
부산	397,926	235,697	52,739	53,561	18,757	9,360
울산	119,891	76,000	15,944	14,790	5,032	2,433
광주	182,614	106,997	26,054	24,193	8,781	4,382
전남	289,723	176,353	37,441	34,272	12,943	6,719
전북	243,038	145,324	34,509	31,389	10,773	5,275
대전	169,524	93,630	23,691	23,490	8,974	4,812
충남	250,820	152,746	32,567	31,082	11,613	5,795
충북	183,540	109,703	25,070	23,384	8,656	4,271
강원	225,750	140,764	29,405	26,814	9,542	4,707
제주	71,708	47,970	9,363	7,958	2,639	1,192
기타	197,693	139,300	24,577	17,440	6,108	2,660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7년	82,392	53,277	36,564	25,617	47,660	146,615
서울	17,157	11,252	7,805	5,490	9,554	21,758
인천	5,693	3,707	2,670	1,981	3,900	7,766
경기	18,698	12,301	8,566	6,127	11,798	26,544
대구	3,985	2,619	1,786	1,373	2,893	6,724
경북	3,796	2,406	1,620	1,127	2,111	9,455
경남	2,798	1,745	1,146	747	1,447	8,994
부산	5,557	3,718	2,576	1,825	3,430	10,706
울산	1,318	742	354	229	348	2,701
광주	2,573	1,672	1,147	819	1,600	4,396
전남	4,249	2,836	1,929	1,211	2,411	9,359
전북	2,984	1,778	1,246	805	1,314	7,641
대전	3,044	2,107	1,464	973	1,986	5,353
충남	3,403	2,190	1,389	943	1,426	7,666
충북	2,367	1,456	979	701	1,261	5,692
강원	2,795	1,631	1,136	740	1,240	6,976
제주	614	301	181	105	154	1,231
기타	1,361	816	570	421	787	3,653

〈부표 18〉 시도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8년	6,070,341	3,696,229	801,174	757,900	281,691	141,215
서울	999,398	563,670	132,812	142,498	57,878	29,524
인천	362,208	217,097	46,373	46,149	17,602	9,270
경기	1,269,804	757,957	165,744	165,409	64,264	32,396
대구	284,763	170,764	39,223	36,061	12,805	6,530
경북	325,214	203,771	43,120	37,823	13,359	6,626
경남	342,685	227,172	43,984	37,483	11,911	5,258
부산	423,839	257,321	56,226	54,348	18,765	9,360
울산	131,196	85,673	17,286	15,076	5,036	2,433
광주	192,371	115,398	27,172	24,430	8,782	4,382
전남	303,085	187,848	38,932	34,640	12,949	6,721
전북	253,572	154,429	35,703	31,620	10,776	5,276
대전	178,741	101,381	24,885	23,759	8,977	4,812
충남	266,121	165,679	34,463	31,546	11,620	5,796
충북	195,366	119,640	26,579	23,757	8,662	4,272
강원	237,380	150,956	30,584	27,069	9,546	4,707
제주	76,044	51,915	9,711	8,000	2,640	1,192
기타	228,554	165,558	28,377	18,232	6,119	2,660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단위: 명) 기타
2018년	82,399	53,277	36,564	25,617	47,660	146,615
서울	17,157	11,252	7,805	5,490	9,554	21,758
인천	5,693	3,707	2,670	1,981	3,900	7,766
경기	18,698	12,301	8,566	6,127	11,798	26,544
대구	3,985	2,619	1,786	1,373	2,893	6,724
경북	3,796	2,406	1,620	1,127	2,111	9,455
경남	2,798	1,745	1,146	747	1,447	8,994
부산	5,564	3,718	2,576	1,825	3,430	10,706
울산	1,318	742	354	229	348	2,701
광주	2,573	1,672	1,147	819	1,600	4,396
전남	4,249	2,836	1,929	1,211	2,411	9,359
전북	2,984	1,778	1,246	805	1,314	7,641
대전	3,044	2,107	1,464	973	1,986	5,353
충남	3,403	2,190	1,389	943	1,426	7,666
충북	2,367	1,456	979	701	1,261	5,692
강원	2,795	1,631	1,136	740	1,240	6,976
제주	614	301	181	105	154	1,231
기타 	1,361	816	570	421	787	3,653

〈부표 19〉 시도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4년	4,542,508	3,011,516	655,346	277,041	152,933	94,234
서울	750,489	465,628	118,688	54,423	30,570	18,738
인천	273,139	178,275	39,181	16,985	9,662	6,323
경기	899,825	583,088	131,458	58,045	33,270	20,475
대구	227,434	148,680	34,451	13,804	7,617	4,844
경북	258,570	177,193	35,944	14,075	7,635	4,643
경남	256,383	185,143	33,264	12,489	6,165	3,486
부산	323,176	213,261	48,430	19,190	10,399	6,477
울산	87,742	62,396	11,726	4,810	2,585	1,489
광주	154,920	102,074	23,401	9,567	5,266	3,212
전남	249,863	168,755	33,525	14,322	7,958	5,105
전북	210,348	141,403	31,541	12,269	6,344	3,843
대전	141,341	87,900	21,676	9,218	5,317	3,480
충남	196,441	131,929	27,413	11,536	6,384	3,875
충북	152,209	102,117	21,559	9,093	4,814	2,910
강원	187,869	129,981	25,763	10,211	5,304	3,192
제주	57,803	42,894	7,587	2,884	1,396	747
기타 	114,956	90,799	9,739	4,120	2,247	1,395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4년	61,763	42,123	30,118	21,526	49,296	146,612
서울	12,532	8,518	6,197	4,380	9,057	21,758
인천	4,250	2,893	2,209	1,654	3,941	7,766
경기	13,778	9,455	6,899	5,000	11,813	26,544
대구	3,112	2,232	1,512	1,241	3,217	6,724
경북	2,917	1,978	1,386	997	2,347	9,455
경남	2,145	1,450	957	707	1,583	8,994
부산	4,203	3,071	2,145	1,591	3,703	10,706
울산	823	418	282	169	343	2,701
광주	2,103	1,363	1,027	731	1,780	4,396
전남	3,436	2,322	1,563	1,085	2,433	9,359
전북	2,359	1,549	1,082	746	1,571	7,641
대전	2,392	1,666	1,296	867	2,176	5,353
충남	2,565	1,650	1,172	690	1,561	7,666
충북	1,846	1,256	874	589	1,459	5,692
강원	2,038	1,439	931	652	1,382	6,976
제주	403	244	149	103	165	1,231
기타	861	619	437	324	765	3,650

〈부표 19〉 시도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5년	4,856,263	3,247,602	703,677	296,047	161,198	96,122
서울	803,124	501,748	128,465	58,828	32,465	19,141
인천	291,503	191,726	42,135	18,228	10,228	6,465
경기	971,542	634,502	143,352	63,373	35,709	21,053
대구	240,903	158,898	36,575	14,536	7,937	4,911
경북	274,184	189,747	37,977	14,763	7,895	4,720
경남	273,647	199,209	35,487	13,165	6,401	3,543
부산	344,133	228,844	51,969	20,351	10,946	6,589
울산	94,418	67,818	12,581	5,091	2,690	1,502
광주	163,556	108,922	24,568	9,965	5,446	3,251
전남	262,169	178,658	35,083	14,862	8,188	5,170
전북	220,804	149,810	32,939	12,707	6,519	3,878
대전	149,904	94,331	23,067	9,700	5,530	3,521
충남	211,044	143,362	29,474	12,274	6,682	3,943
충북	161,059	108,944	22,858	9,562	5,025	2,951
강원	199,165	138,972	27,383	10,679	5,482	3,228
제주	62,111	46,708	7,972	2,967	1,419	750
기타 	132,997	105,403	11,792	4,996	2,636	1,506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5년	61,928	42,131	30,122	21,526	49,297	146,613
서울	12,565	8,520	6,197	4,380	9,057	21,758
인천	4,257	2,893	2,210	1,654	3,941	7,766
경기	13,839	9,458	6,899	5,000	11,813	26,544
대구	3,120	2,232	1,512	1,241	3,217	6,724
경북	2,918	1,979	1,386	997	2,347	9,455
경남	2,150	1,451	957	707	1,583	8,994
부산	4,216	3,071	2,146	1,591	3,704	10,706
울산	823	418	282	169	343	2,701
광주	2,107	1,363	1,027	731	1,780	4,396
전남	3,445	2,322	1,564	1,085	2,433	9,359
전북	2,362	1,549	1,082	746	1,571	7,641
대전	2,396	1,666	1,297	867	2,176	5,353
충남	2,570	1,650	1,172	690	1,561	7,666
충북	1,849	1,256	874	589	1,459	5,692
강원	2,041	1,439	931	652	1,382	6,976
제주	403	244	149	103	165	1,231
기타	867	620	437	324	765	3,651

〈부표 19〉 시도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6년	5,234,901	3,543,734	762,804	315,909	164,507	96,305
서울	864,808	546,511	140,341	63,071	33,212	19,189
인천	313,650	208,599	45,909	19,526	10,424	6,471
경기	1,062,624	702,745	159,038	69,399	36,774	21,110
대구	255,836	170,824	38,816	15,193	8,043	4,914
경북	291,824	204,274	40,328	15,439	7,976	4,725
경남	294,158	216,010	38,342	13,908	6,505	3,550
부산	368,898	247,881	56,159	21,699	11,121	6,597
울산	103,752	75,288	14,004	5,478	2,743	1,503
광주	172,673	116,338	25,801	10,361	5,516	3,253
전남	275,560	189,800	36,754	15,359	8,264	5,174
전북	231,301	158,304	34,487	13,093	6,584	3,882
대전	159,364	101,792	24,555	10,139	5,595	3,527
충남	228,623	157,674	31,812	13,069	6,808	3,950
충북	171,290	117,085	24,449	9,975	5,104	2,958
강원	211,297	149,079	28,948	11,083	5,535	3,230
제주	66,784	50,953	8,340	3,023	1,423	750
기타 	162,459	130,577	14,721	6,094	2,880	1,522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6년	61,943	42,134	30,126	21,528	49,298	146,613
서울	12,569	8,522	6,197	4,380	9,058	21,758
인천	4,257	2,893	2,210	1,654	3,941	7,766
경기	13,844	9,458	6,899	5,000	11,813	26,544
대구	3,120	2,232	1,512	1,241	3,217	6,724
경북	2,918	1,979	1,386	997	2,347	9,455
경남	2,151	1,451	957	707	1,583	8,994
부산	4,217	3,071	2,150	1,593	3,704	10,706
울산	823	418	282	169	343	2,701
광주	2,107	1,363	1,027	731	1,780	4,396
전남	3,446	2,322	1,564	1,085	2,433	9,359
전북	2,362	1,549	1,082	746	1,571	7,641
대전	2,397	1,666	1,297	867	2,176	5,353
충남	2,570	1,651	1,172	690	1,561	7,666
충북	1,849	1,256	874	589	1,459	5,692
강원	2,042	1,439	931	652	1,382	6,976
제주	403	244	149	103	165	1,231
기타	868	620	437	324	765	3,651

〈부표 19〉 시도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7년	5,685,730	3,927,304	823,323	322,428	164,703	96,323
서울	937,217	605,645	152,353	64,299	33,244	19,192
인천	339,723	230,639	49,562	19,898	10,432	6,471
경기	1,174,114	795,523	175,576	71,501	36,839	21,117
대구	271,435	184,332	40,708	15,391	8,044	4,914
경북	310,146	220,457	42,272	15,628	7,981	4,726
경남	320,868	239,188	41,565	14,207	6,512	3,552
부산	397,926	272,121	60,558	22,064	11,138	6,600
울산	119,891	89,263	16,030	5,612	2,747	1,503
광주	182,614	124,950	26,998	10,486	5,523	3,253
전남	289,723	202,110	38,401	15,555	8,273	5,175
전북	243,038	168,624	35,787	13,210	6,584	3,882
대전	169,524	110,528	25,841	10,273	5,598	3,528
충남	250,820	176,982	34,380	13,374	6,824	3,950
충북	183,540	127,571	26,051	10,133	5,108	2,958
강원	225,750	162,081	30,249	11,230	5,538	3,230
제주	71,708	55,620	8,580	3,040	1,423	750
기타	197,693	161,670	18,412	6,527	2,895	1,522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7년	61,945	42,136	30,127	21,528	49,298	146,615
서울	12,569	8,522	6,197	4,380	9,058	21,758
인천	4,257	2,893	2,210	1,654	3,941	7,766
경기	13,844	9,458	6,899	5,000	11,813	26,544
대구	3,120	2,232	1,512	1,241	3,217	6,724
경북	2,918	1,979	1,386	997	2,347	9,455
경남	2,152	1,451	957	707	1,583	8,994
부산	4,218	3,073	2,151	1,593	3,704	10,706
울산	823	418	282	169	343	2,701
광주	2,107	1,363	1,027	731	1,780	4,396
전남	3,446	2,322	1,564	1,085	2,433	9,359
전북	2,362	1,549	1,082	746	1,571	7,641
대전	2,397	1,666	1,297	867	2,176	5,353
충남	2,570	1,651	1,172	690	1,561	7,666
충북	1,849	1,256	874	589	1,459	5,692
강원	2,042	1,439	931	652	1,382	6,976
제주	403	244	149	103	165	1,231
기타	868	620	437	324	765	3,653

〈부표 19〉 시도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8년	6,070,341	4,301,264	833,821	322,561	164,716	96,330
서울	999,398	665,959	154,199	64,317	33,247	19,192
인천	362,208	252,507	50,173	19,904	10,432	6,471
경기	1,269,804	888,131	178,608	71,549	36,841	21,117
대구	284,763	197,344	41,021	15,393	8,045	4,914
경북	325,214	235,190	42,600	15,633	7,983	4,726
경남	342,685	260,383	42,178	14,216	6,512	3,552
부산	423,839	297,295	61,284	22,070	11,138	6,607
울산	131,196	100,304	16,291	5,615	2,747	1,503
광주	192,371	134,491	27,214	10,486	5,523	3,253
전남	303,085	215,132	38,733	15,561	8,275	5,175
전북	253,572	178,939	36,003	13,212	6,585	3,882
대전	178,741	119,491	26,093	10,275	5,598	3,528
충남	266,121	191,855	34,800	13,381	6,825	3,950
충북	195,366	139,037	26,405	10,138	5,109	2,958
강원	237,380	173,488	30,468	11,234	5,538	3,230
제주	76,044	59,920	8,615	3,041	1,423	750
기타 	228,554	191,798	19,136	6,536	2,895	1,522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8년	61,945	42,136	30,127	21,528	49,298	146,615
서울	12,569	8,522	6,197	4,380	9,058	21,758
인천	4,257	2,893	2,210	1,654	3,941	7,766
경기	13,844	9,458	6,899	5,000	11,813	26,544
대구	3,120	2,232	1,512	1,241	3,217	6,724
경북	2,918	1,979	1,386	997	2,347	9,455
경남	2,152	1,451	957	707	1,583	8,994
부산	4,218	3,073	2,151	1,593	3,704	10,706
울산	823	418	282	169	343	2,701
광주	2,107	1,363	1,027	731	1,780	4,396
전남	3,446	2,322	1,564	1,085	2,433	9,359
전북	2,362	1,549	1,082	746	1,571	7,641
대전	2,397	1,666	1,297	867	2,176	5,353
충남	2,570	1,651	1,172	690	1,561	7,666
충북	1,849	1,256	874	589	1,459	5,692
강원	2,042	1,439	931	652	1,382	6,976
제주	403	244	149	103	165	1,231
기타	868	620	437	324	765	3,653

〈부표 20〉 시도별 성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2014년	남성	여성	2015년	남성	여성	2016년	남성	여성
합계	4,542,508	3,892,884	649,624	4,856,263	4,152,375	703,888	5,234,901	4,469,297	765,604
서울	750,489	668,580	81,909	803,124	713,734	89,390	864,808	766,727	98,081
인천	273,139	234,703	38,436	291,503	249,965	41,538	313,650	268,536	45,114
경기	899,825	781,414	118,411	971,542	841,855	129,687	1,062,624	918,775	143,849
대구	227,434	194,514	32,920	240,903	205,236	35,667	255,836	217,383	38,453
경북	258,570	221,663	36,907	274,184	234,450	39,734	291,824	249,112	42,712
경남	256,383	217,041	39,342	273,647	231,022	42,625	294,158	248,258	45,900
부산	323,176	280,523	42,653	344,133	297,649	46,484	368,898	318,522	50,376
울산	87,742	74,885	12,857	94,418	80,229	14,189	103,752	88,076	15,676
광주	154,920	120,380	34,540	163,556	126,756	36,800	172,673	133,594	39,079
전남	249,863	200,008	49,855	262,169	209,534	52,635	275,560	220,157	55,403
전북	210,348	172,642	37,706	220,804	180,947	39,857	231,301	189,440	41,861
대전	141,341	120,259	21,082	149,904	127,186	22,718	159,364	134,995	24,369
충남	196,441	170,518	25,923	211,044	182,700	28,344	228,623	197,322	31,301
충북	152,209	130,428	21,781	161,059	137,867	23,192	171,290	146,500	24,790
강원	187,869	160,703	27,166	199,165	170,339	28,826	211,297	180,696	30,601
제주	57,803	48,084	9,719	62,111	51,477	10,634	66,784	55,155	11,629
기타	114,956	96,539	18,417	132,997	111,429	21,568	162,459	136,049	26,410

						(단위: 명)
구분	2017년	남성	여성	2018년	남성	여성
합계	5,685,730	4,843,254	842,476	6,070,341	5,157,869	912,472
서울	937,217	828,448	108,769	999,398	880,719	118,679
인천	339,723	290,048	49,675	362,208	308,291	53,917
경기	1,174,114	1,011,530	162,584	1,269,804	1,089,825	179,979
대구	271,435	229,889	41,546	284,763	240,722	44,041
경북	310,146	264,139	46,007	325,214	276,406	48,808
경남	320,868	270,834	50,034	342,685	288,903	53,782
부산	397,926	343,138	54,788	423,839	364,586	59,253
울산	119,891	101,287	18,604	131,196	110,493	20,703
광주	182,614	141,096	41,518	192,371	148,425	43,946
전남	289,723	231,508	58,215	303,085	242,074	61,011
전북	243,038	198,872	44,166	253,572	207,242	46,330
대전	169,524	143,383	26,141	178,741	150,847	27,894
충남	250,820	215,130	35,690	266,121	227,686	38,435
충북	183,540	156,625	26,915	195,366	166,158	29,208
강원	225,750	192,893	32,857	237,380	202,528	34,852
제주	71,708	58,988	12,720	76,044	62,259	13,785
기타	197,693	165,446	32,247	228,554	190,705	37,849

〈부표 21〉 성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4년	4,542,508	2,621,740	589,325	577,725	235,118	128,973
남성	3,892,884	2,198,231	500,657	508,761	213,004	118,925
여성	649,624	423,509	88,668	68,964	22,114	10,048
2015년	4,856,263	2,818,013	628,804	625,889	254,280	137,409
남성	4,152,375	2,356,363	533,243	550,916	230,111	126,467
여성	703,888	461,650	95,561	74,973	24,169	10,942
2016년	5,234,901	3,061,305	680,884	685,074	274,556	140,982
남성	4,469,297	2,557,052	576,907	602,502	247,861	129,526
여성	765,604	504,253	103,977	82,572	26,695	11,456
2017년	5,685,730	3,372,814	751,521	746,527	281,544	141,199
남성	4,843,254	2,813,048	636,155	655,220	253,706	129,662
여성	842,476	559,766	115,366	91,307	27,838	11,537
2018년	6,070,341	3,696,229	801,174	757,900	281,691	141,215
남성	5,157,869	3,076,435	677,826	664,687	253,786	129,669
여성	912,472	619,794	123,348	93,213	27,905	11,546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2014년	80,136	53,067	36,548	25,608	47,656	146,612
남성	74,718	49,811	34,429	24,348	45,815	124,185
여성	5,418	3,256	2,119	1,260	1,841	22,427
2015년	82,165	53,263	36,558	25,612	47,657	146,613
남성	76,523	49,966	34,435	24,350	45,816	124,185
여성	5,642	3,297	2,123	1,262	1,841	22,428
2016년	82,375	53,274	36,562	25,616	47,660	146,613
남성	76,684	49,973	34,437	24,353	45,817	124,185
여성	5,691	3,301	2,125	1,263	1,843	22,428
2017년	82,392	53,277	36,564	25,617	47,660	146,615
남성	76,693	49,975	34,439	24,354	45,817	124,185
여성	5,699	3,302	2,125	1,263	1,843	22,430
2018년	82,399	53,277	36,564	25,617	47,660	146,615
남성	76,696	49,975	34,439	24,354	45,817	124,185
여성	5,703	3,302	2,125	1,263	1,843	22,430

〈부표 22〉 성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4년	4,542,508	3,011,516	655,346	277,041	152,933	94,234
남성	3,892,884	2,531,833	571,018	247,446	138,621	86,727
여성	649,624	479,683	84,328	29,595	14,312	7,507
2015년	4,856,263	3,247,602	703,677	296,047	161,198	96,122
남성	4,152,375	2,722,818	613,352	264,407	146,015	88,409
여성	703,888	524,784	90,325	31,640	15,183	7,713
2016년	5,234,901	3,543,734	762,804	315,909	164,507	96,305
남성	4,469,297	2,967,824	664,881	281,816	148,841	88,547
여성	765,604	575,910	97,923	34,093	15,666	7,758
2017년	5,685,730	3,927,304	823,323	322,428	164,703	96,323
남성	4,843,254	3,284,304	716,793	287,246	148,962	88,556
여성	842,476	643,000	106,530	35,182	15,741	7,767
2018년	6,070,341	4,301,264	833,821	322,561	164,716	96,330
남성	5,157,869	3,590,125	725,507	287,317	148,968	88,559
여성	912,472	711,139	108,314	35,244	15,748	7,771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2014년	61,763	42,123	30,118	21,526	49,296	146,612
남성	57,445	39,442	28,359	20,398	47,410	124,185
여성	4,318	2,681	1,759	1,128	1,886	22,427
2015년	61,928	42,131	30,122	21,526	49,297	146,613
남성	57,572	39,447	28,361	20,398	47,411	124,185
여성	4,356	2,684	1,761	1,128	1,886	22,428
2016년	61,943	42,134	30,126	21,528	49,298	146,613
남성	57,580	39,449	28,364	20,399	47,411	124,185
여성	4,363	2,685	1,762	1,129	1,887	22,428
2017년	61,945	42,136	30,127	21,528	49,298	146,615
남성	57,582	39,451	28,365	20,399	47,411	124,185
여성	4,363	2,685	1,762	1,129	1,887	22,430
2018년	61,945	42,136	30,127	21,528	49,298	146,615
남성	57,582	39,451	28,365	20,399	47,411	124,185
여성	4,363	2,685	1,762	1,129	1,887	22,430

〈부표 23〉 월별 연도별 피공제자수

(단위: 명)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6,596,765	6,718,922	7,675,654	8,593,949	8,316,594
1월	461,196	485,442	522,186	613,077	650,560
2월	474,512	458,553	523,614	641,656	627,635
3월	551,146	543,947	614,242	705,477	717,610
4월	569,785	556,532	628,374	715,095	731,372
5월	579,667	567,389	644,202	732,088	729,369
6월	573,844	578,972	662,368	741,789	720,658
7월	567,937	573,619	654,330	728,847	707,058
8월	553,719	580,980	665,213	741,819	690,177
9월	555,669	569,476	657,963	750,176	671,103
10월	589,151	613,933	699,279	737,079	721,080
11월	583,972	603,223	714,124	773,809	713,388
12월	536,167	586,856	689,759	713,037	636,584

					(단위: 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107,203,392	109,694,282	127,091,342	143,655,804	134,319,811
1월	7,419,825	8,227,720	8,403,781	9,708,728	10,802,174
2월	7,256,585	6,510,037	7,540,145	10,568,592	9,209,545
3월	9,208,485	9,170,519	10,537,629	12,456,795	12,292,300
4월	9,493,321	9,128,634	10,458,679	12,106,164	12,165,662
5월	9,610,395	9,290,899	10,762,648	12,593,578	12,146,716
6월	9,254,131	9,589,213	11,143,148	12,583,055	11,958,198
7월	9,299,672	9,398,106	10,655,426	11,880,940	11,438,980
8월	8,796,929	9,304,396	11,067,877	12,198,660	10,671,795
9월	8,297,236	8,877,893	10,123,528	12,893,707	9,813,687
10월	10,015,327	10,550,313	12,012,925	11,380,566	12,102,563
11월	9,659,158	9,779,649	12,475,838	13,391,073	11,717,696
12월	8,892,328	9,866,903	11,909,718	11,893,946	10,000,495

〈부표 25〉 연도별 연령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합계	583,604	50,939	4,207	20,178	47,980	48,019	50,193
1998년	_	-	_	-	_	_	-
1999년	_	-	-	-	-	-	-
2000년	_	-	-	-	-	-	-
2001년	_	-	-	-	_	_	-
2002년	4	-	-	-	-	-	-
2003년	1	-	-	-	_	-	-
2004년	3,981	-	-	-	2	78	283
2005년	2,804	-	-	-	5	50	162
2006년	23,609	52	_	_	84	469	1,605
2007년	32,036	85	4	4	305	1,022	2,477
2008년	48,269	79	6	27	738	2,068	4,033
2009년	40,219	156	8	69	1,040	2,466	3,637
2010년	22,448	54	4	94	967	1,735	2,279
2011년	26,879	236	2	264	1,435	2,261	2,369
2012년	31,619	975	14	441	1,802	2,559	2,914
2013년	40,637	1,717	44	970	3,912	4,543	4,191
2014년	47,770	2,751	67	1,495	5,456	4,865	4,372
2015년	45,069	4,286	142	2,092	5,724	4,660	4,053
2016년	64,756	9,606	586	4,074	8,787	6,778	5,684
2017년	83,280	16,519	1,605	5,786	9,785	7,903	6,597
2018년	70,223	14,423	1,725	4,862	7,938	6,562	5,537

								(단위: 명)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기타
합계	67,234	76,948	81,129	69,219	11,577	32,181	22,827	973
1998년	_	-	-	-	-	_	-	_
1999년	_	-	-	-	-	_	-	_
2000년	_	-	-	-	-	-	-	-
2001년	_	-	-	_	_	-	-	
2002년	_	-	1	1	2	-	-	-
2003년	_	-	-	-	-	-	1	-
2004년	681	781	683	490	74	350	557	2
2005년	347	479	556	485	99	297	323	1
2006년	3,251	4,193	4,795	4,332	716	2,416	1,620	76
2007년	4,345	5,583	6,080	5,387	984	2,931	2,782	47
2008년	6,465	7,639	8,446	8,015	1,418	4,067	5,219	49
2009년	5,455	6,415	7,044	6,423	1,084	3,309	3,073	40
2010년	2,997	3,466	3,600	3,489	581	1,738	1,437	7
2011년	3,265	3,837	4,669	4,438	749	1,888	1,429	37
2012년	3,921	4,526	5,071	4,494	804	2,226	1,804	68
2013년	5,123	5,590	5,702	4,473	747	2,259	1,264	102
2014년	5,629	6,694	6,636	5,060	814	2,862	996	73
2015년	4,788	5,504	5,570	4,586	936	2,007	646	75
2016년	6,650	6,810	6,784	5,128	889	2,133	650	197
2017년	7,692	8,370	8,744	6,544	941	2,013	597	184
2018년	6,625	7,061	6,748	5,874	739	1,685	429	15

〈부표 26〉 연도별 시도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583,604	194,817	29,272	196,333	6,179	11,554	17,442	9,727	10,250
1998년	_	-	-	-	-	-	-	-	_
1999년	_	-	-	-	-	-	-	-	-
2000년	_	-	-	-	-	-	-	_	-
2001년	_	-	_	-	-	-	_	_	_
2002년	4	1	-	-	1	-	-	1	-
2003년	1	1	-	-	-	-	-	_	-
2004년	3,981	1,699	182	1,282	49	148	93	50	52
2005년	2,804	1,269	141	957	21	44	48	30	13
2006년	23,609	11,401	1,043	7,159	322	362	331	284	223
2007년	32,036	15,266	1,581	9,849	399	575	443	366	320
2008년	48,269	21,490	2,427	16,523	508	708	634	550	532
2009년	40,219	16,869	2,231	14,002	389	563	733	553	431
2010년	22,448	9,088	1,684	7,569	180	315	367	277	247
2011년	26,879	10,897	1,759	9,207	186	449	432	367	262
2012년	31,619	12,462	1,777	10,433	213	451	789	594	622
2013년	40,637	14,774	2,086	13,314	390	695	1,224	739	896
2014년	47,770	16,042	2,141	16,068	562	1,018	1,562	718	949
2015년	45,069	12,750	2,131	14,776	777	1,377	1,702	848	1,023
2016년	64,756	15,393	2,881	21,368	765	1,868	2,868	1,241	1,414
2017년	83,280	19,107	3,761	29,022	657	1,845	3,829	1,707	1,935
2018년	70,223	16,308	3,447	24,804	760	1,136	2,387	1,402	1,331

									(단위: 명)
구분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4,422	20,212	12,491	4,380	6,417	5,858	8,760	1,907	43,583
1998년	-	-	_	-	-	-	-	-	_
1999년	-	_	_	-	-	_	-	_	_
2000년	-	-	-	-	-	-	-	_	-
2001년	_	-	-	-	-	-	-	-	-
2002년	1	_	-	-	-	-	-	_	-
2003년	-	_	_	-	_	_	_	_	_
2004년	33	90	38	9	34	50	79	3	90
2005년	29	64	37	12	22	29	44	3	41
2006년	177	526	314	140	260	183	290	39	555
2007년	204	754	407	204	328	228	340	30	742
2008년	306	1,209	587	272	501	390	456	56	1,120
2009년	325	1,132	583	230	419	389	367	71	932
2010년	156	580	323	107	257	217	258	42	781
2011년	201	789	416	152	292	271	361	66	772
2012년	208	1,070	568	174	342	368	344	80	1,124
2013년	224	1,467	802	414	476	514	432	169	2,021
2014년	379	1,818	950	433	570	465	778	144	3,173
2015년	401	1,913	1,085	334	505	391	550	218	4,288
2016년	438	2,829	1,664	473	692	714	1,002	255	8,891
2017년	666	3,216	2,358	657	836	761	1,875	331	10,717
2018년	674	2,755	2,359	769	883	888	1,584	400	8,336

〈부표 27〉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합계	583,604	329,151	81,440	98,389	41,112	16,618
1998년	_	_	-	-	-	_
1999년	_	-	-	-	-	-
2000년	_	-	-	-	_	_
2001년	_	_	_	_	_	_
2002년	4	2	-	-	-	-
2003년	1	_	-	-	-	-
2004년	3,981	1,240	534	646	304	173
2005년	2,804	989	386	481	268	143
2006년	23,609	10,012	3,160	4,342	2,433	1,300
2007년	32,036	15,393	4,172	5,725	2,772	1,465
2008년	48,269	25,549	6,118	8,635	3,815	1,766
2009년	40,219	24,780	4,273	5,950	2,584	1,178
2010년	22,448	14,413	2,109	3,202	1,346	633
2011년	26,879	15,001	2,636	4,689	2,335	1,079
2012년	31,619	17,092	3,110	5,476	2,913	1,533
2013년	40,637	19,879	4,646	7,861	4,397	2,217
2014년	47,770	21,731	5,854	10,414	5,996	2,592
2015년	45,069	20,851	6,522	10,172	5,365	1,832
2016년	64,756	33,880	10,643	14,331	5,190	679
2017년	83,280	50,475	16,859	14,537	1,382	27
2018년	70,223	57,864	10,418	1,928	12	1

						(단위: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기타
합계	7,321	3,790	2,138	1,299	1,207	1,139
1998년	_	_	_	-	-	_
1999년	_	_	-	-	-	-
2000년	_	_	_	-	-	-
2001년	-	_	-	_	-	_
2002년	_	_	_	_	-	2
2003년	_	-	-	-	-	1
2004년	112	67	41	31	43	790
2005년	69	48	38	14	34	334
2006년	780	494	402	303	371	12
2007년	862	604	441	290	312	-
2008년	892	566	395	296	237	-
2009년	592	418	218	125	101	-
2010년	327	205	106	65	42	-
2011년	537	324	154	84	40	-
2012년	815	400	204	59	17	-
2013년	1,066	425	110	27	9	-
2014년	941	210	26	5	1	-
2015년	296	28	3	-	-	-
2016년	32	1	-	-	-	_
2017년	_	-	-	-	-	-
2018년	_	_	-	-	-	_

〈부표 28〉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583,604	402,499	101,530	43,336	17,906	7,874
1998년	_	-	_	_	_	_
1999년	_	-	-	-	_	_
2000년	_	-	_	_	_	_
2001년	_	_	_	_	_	_
2002년	4	2	-	-	_	_
2003년	1	-	-	-	_	_
2004년	3,981	1,379	783	420	212	154
2005년	2,804	1,096	575	336	180	102
2006년	23,609	10,921	4,872	3,026	1,783	1,028
2007년	32,036	17,263	6,597	3,429	1,830	1,010
2008년	48,269	29,332	9,654	4,501	2,125	1,036
2009년	40,219	28,208	6,339	2,852	1,296	613
2010년	22,448	16,328	3,332	1,389	648	330
2011년	26,879	17,518	4,774	2,363	1,099	524
2012년	31,619	20,174	5,508	2,932	1,546	788
2013년	40,637	24,523	7,893	4,417	2,193	1,066
2014년	47,770	27,609	10,451	6,005	2,562	918
2015년	45,069	27,434	10,257	5,308	1,769	275
2016년	64,756	44,683	14,333	5,072	637	30
2017년	83,280	67,631	14,350	1,273	26	-
2018년	70,223	68,398	1,812	13	-	-

						(단위: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기타
합계	4,097	2,204	1,479	825	715	1,139
1998년	_	-	-	-	-	-
1999년	-	-	-	-	-	-
2000년	-	-	-	-	_	-
2001년	-	-	-	-	-	-
2002년	-	-	-	-	_	2
2003년	-	-	-	-	_	1
2004년	93	53	34	27	36	790
2005년	60	46	29	14	32	334
2006년	634	439	358	253	283	12
2007년	697	444	366	218	182	-
2008년	610	397	331	170	113	-
2009년	437	237	129	69	39	-
2010년	204	116	59	26	16	-
2011년	327	151	84	26	13	-
2012년	407	192	58	14		-
2013년	407	104	26	7	1	-
2014년	197	22	5	1	-	-
2015년	23	3	-	-	_	-
2016년	1	-	-	-	-	_
2017년	-	-	-	-	-	-
2018년	-	-	-	-	_	-

〈부표 29〉 연도별 성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583,604	520,683	62,921
2002년	4	2	2
2003년	1	1	-
2004년	3,981	3,708	273
2005년	2,804	2,579	225
2006년	23,609	21,685	1,924
2007년	32,036	29,360	2,676
2008년	48,269	44,385	3,884
2009년	40,219	36,189	4,030
2010년	22,448	19,990	2,458
2011년	26,879	24,271	2,608
2012년	31,619	28,720	2,899
2013년	40,637	36,586	4,051
2014년	47,770	42,284	5,486
2015년	45,069	39,753	5,316
2016년	64,756	57,861	6,895
2017년	83,280	73,120	10,160
2018년	70,223	60,189	10,034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2013년	110,466	50,091	5,197	35,208	743	1,296	2,122	1,422	1,622
2014년	128,322	54,551	5,993	41,925	1,119	1,813	2,829	1,576	1,878
2015년	142,888	56,579	6,859	46,890	1,501	2,505	3,488	1,873	2,231
2016년	184,468	64,478	8,565	61,855	1,764	3,477	5,301	2,630	3,130
2017년	228,188	73,277	10,659	78,969	1,805	4,057	7,465	3,754	4,337
2018년	170,173	58,837	8,296	59,378	1,398	2,539	4,256	2,641	2,852
구분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기타
구분 2013년	광주 686	전남 861	전북 997	대전 566	충남 2,899	충북 1,563	강원 811	제주 316	기타 4,066
2013년	686	861	997	566	2,899	1,563	811	316	4,066
2013년 2014년	686 835	861 1,056 1,070	997 981 990	566 791	2,899 3,696 4,571	1,563 1,891 2,463	811 1,202 1,273	316 333 445	4,066 5,853
2013년 2014년 2015년	686 835 857	861 1,056 1,070 1,443	997 981 990 1,470	566 791 939	2,899 3,696 4,571 6,289	1,563 1,891 2,463 3,580	811 1,202 1,273 1,981	316 333 445	4,066 5,853 8,354

〈부표 31〉 연도별 연령별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명)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단위: 명) 기타
2013년	110,466	3,493	14,313	24,179	37,427	27,104	3,774	63	113
2014년	128,322	5,889	20,070	27,929	42,514	28,591	3,179	66	84
2015년	142,888	9,646	24,184	30,711	45,754	29,953	2,512	43	85
2016년	184,468	20,945	34,595	38,772	54,066	33,425	2,406	40	219
2017년	228,188	36,428	44,425	46,353	62,622	35,917	2,167	36	240
2018년	170,173	19,070	34,168	37,821	51,295	26,453	1,339	8	19

PΑ
콥
4
ᄣ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피공제자수	퇴직공제금 지급액
합계	706,053	1,601,897
 1999년	3	2
2000년	638	513
2001년	3,836	3,600
2002년	5,046	5,271
2003년	6,621	7,332
2004년	11,419	12,829
2005년	15,044	17,177
2006년	14,700	18,109
2007년	11,495	14,398
2008년	12,703	16,933
2009년	20,328	28,999
2010년	22,935	38,375
2011년	25,290	48,755
2012년	45,257	89,279
2013년	57,968	124,100
2014년	68,113	154,438
2015년	73,775	187,791
2016년	86,457	220,743
2017년	100,541	265,011
2018년	123,884	348,243

〈부표 33〉 연도별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합계	759,829	190	4,840	18,567	30,607	44,661	61,718
1999년	3	-	1	-	1	_	1
2000년	638	5	38	77	73	85	86
2001년	3,836	18	184	428	389	370	433
2002년	5,046	22	238	543	456	449	480
2003년	6,631	16	305	650	737	600	631
2004년	11,430	21	409	905	1,115	988	1,042
2005년	15,091	27	420	1,036	1,334	1,293	1,379
2006년	15,966	10	261	842	1,302	1,453	1,505
2007년	11,949	4	139	579	882	1,069	1,048
2008년	12,775	-	85	505	810	1,237	1,175
2009년	20,795	-	70	492	992	1,665	1,893
2010년	23,366	1	69	468	1,067	1,707	2,086
2011년	27,462	2	83	481	1,091	1,924	2,578
2012년	63,566	6	111	766	2,149	3,762	5,755
2013년	66,780	5	164	968	2,181	3,819	6,177
2014년	76,122	7	240	1,131	2,122	3,340	6,026
2015년	80,099	6	329	1,482	2,715	4,105	6,432
2016년	92,727	8	334	1,614	3,006	4,504	6,722
2017년	100,774	11	490	2,048	3,514	5,375	7,500
2018년	124,773	21	870	3,552	4,671	6,916	8,769

^{*} 위 통계자료는 퇴직공제금 추가지급자 수가 포함되었습니다.

230 | 2018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단위: 명)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이상
합계	77,458	86,636	86,737	224,797	26,688	62,818	34,112
1999년	_	_	_	_	-	_	_
2000년	54	67	91	45	7	7	3
2001년	362	446	554	472	58	97	25
2002년	472	538	654	801	97	236	60
2003년	615	631	692	1,141	144	364	105
2004년	1,075	1,001	1,248	2,305	320	779	222
2005년	1,547	1,489	1,819	3,104	399	974	270
2006년	1,645	1,646	2,033	3,243	489	1,150	387
2007년	1,282	1,176	1,512	2,679	440	850	289
2008년	1,406	1,304	1,467	2,939	497	1,058	292
2009년	2,059	2,100	2,416	5,522	853	2,114	619
2010년	2,255	2,462	2,868	6,282	818	2,409	874
2011년	2,696	3,075	3,496	7,447	928	2,633	1,028
2012년	6,661	7,406	6,789	19,371	2,392	5,497	2,901
2013년	7,377	8,858	7,605	20,135	2,478	4,564	2,449
2014년	7,214	8,369	7,426	23,476	3,345	7,651	5,775
2015년	8,148	9,359	8,670	27,101	2,725	5,799	3,228
2016년	8,748	9,997	9,500	28,702	3,438	9,792	6,362
2017년	10,973	12,474	12,698	31,703	3,252	7,181	3,555
2018년	12,869	14,238	15,199	38,329	4,008	9,663	5,668

〈부표 34〉 연도별 시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759,829	148,422	47,635	151,449	43,410	38,991	33,024	63,220	10,674
1999년	3	-	2	-	-	-	-	-	_
2000년	638	172	73	143	56	22	11	22	3
2001년	3,836	718	226	700	249	185	173	220	69
2002년	5,046	594	228	852	259	334	256	338	75
2003년	6,631	758	309	1,171	486	487	398	355	121
2004년	11,430	1,276	496	1,955	730	778	661	943	193
2005년	15,091	1,635	754	2,503	898	952	909	1,534	246
2006년	15,966	1,793	759	2,559	1,043	1,013	896	1,436	200
2007년	11,949	1,313	585	1,867	809	867	711	1,204	128
2008년	12,775	1,685	619	1,847	1,385	840	657	1,352	152
2009년	20,795	3,089	1,036	3,280	2,476	1,200	887	2,439	155
2010년	23,366	3,997	1,289	3,955	2,248	1,241	898	2,378	216
2011년	27,462	5,330	1,791	5,115	2,199	1,398	1,050	2,494	313
2012년	63,566	14,667	4,054	12,993	4,320	3,031	2,139	5,169	521
2013년	66,780	16,529	4,612	13,896	3,324	2,729	2,364	4,795	629
2014년	76,122	15,602	4,688	14,399	4,095	4,088	3,319	6,701	1,120
2015년	80,099	16,673	5,261	15,849	3,990	3,908	3,172	6,958	1,134
2016년	92,727	17,897	5,955	18,385	4,472	4,891	4,133	7,454	1,496
2017년	100,774	20,651	6,442	21,109	4,691	5,002	4,467	7,374	1,447
2018년	124,773	24,043	8,456	28,871	5,680	6,025	5,923	10,054	2,456

^{*} 위 통계자료는 퇴직공제금 추가지급자 수가 포함되었습니다.

									(단위: 명)
구분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26,912	33,426	23,136	26,072	36,469	34,253	26,858	5,671	10,207
1999년	_	-	-	-	1	-	-	_	-
2000년	51	15	12	7	15	13	17	3	3
2001년	189	239	146	178	136	223	149	30	6
2002년	242	243	255	244	333	413	267	109	4
2003년	296	308	344	395	421	428	307	43	4
2004년	552	546	527	595	840	792	453	57	36
2005년	800	698	571	726	1,011	906	626	99	223
2006년	857	736	688	969	1,110	1,178	541	96	92
2007년	625	517	542	676	807	773	429	44	52
2008년	503	466	455	697	737	819	490	47	24
2009년	763	700	547	1,099	1,159	1,142	677	76	70
2010년	849	831	746	1,187	1,242	1,203	828	141	117
2011년	1,022	859	726	1,322	1,400	1,184	926	207	126
2012년	2,227	1,975	1,670	2,431	2,658	2,643	2,155	388	525
2013년	2,299	2,567	1,819	2,152	3,000	2,894	2,151	435	585
2014년	2,753	3,270	2,193	2,528	4,070	3,477	2,627	536	656
2015년	2,887	3,619	2,437	2,460	3,800	3,731	2,782	554	884
2016년	3,021	4,600	2,749	2,628	4,670	4,082	3,583	794	1,917
2017년	3,233	4,940	2,945	2,612	4,320	3,694	3,601	850	3,396
2018년	3,743	6,297	3,764	3,166	4,739	4,658	4,249	1,162	1,487

〈부표 35〉 연도별 지급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합계	759,829	135,493	344,427	132,468	62,740
1999년	3	3	-	-	-
2000년	638	497	139	2	-
2001년	3,836	2,442	1,315	78	1
2002년	5,046	2,738	2,081	216	11
2003년	6,631	3,481	2,612	476	57
2004년	11,430	6,017	4,345	896	139
2005년	15,091	7,891	5,669	1,189	268
2006년	15,966	8,230	5,950	1,326	331
2007년	11,949	6,103	4,422	1,011	302
2008년	12,775	5,755	5,113	1,336	406
2009년	20,795	8,321	8,931	2,463	744
2010년	23,366	6,244	11,384	3,716	1,309
2011년	27,462	6,104	12,599	5,283	2,146
2012년	63,566	23,695	23,733	9,431	3,968
2013년	66,780	13,390	29,814	12,664	5,929
2014년	76,122	12,755	34,789	13,759	6,911
2015년	80,099	8,664	35,943	15,466	8,187
2016년	92,727	8,704	43,620	17,750	8,928
2017년	100,774	2,437	50,484	20,656	10,335
2018년	124,773	2,022	61,484	24,750	12,768

^{*} 위 통계자료는 퇴직공제금 추가지급자 수가 포함되었습니다.

234 | 2018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단위: 명) 800만 원 이상
합계	33,337	19,554	11,120	6,930	13,760
1999년	-	-	-	-	_
2000년	_	-	-	-	_
2001년	-	-	-	-	-
2002년	-	-	-	-	-
2003년	5	-	-	-	-
2004년	30	3	-	-	-
2005년	59	13	2	-	-
2006년	95	25	8	1	_
2007년	88	19	2	2	-
2008년	114	37	10	2	2
2009년	237	70	20	7	2
2010년	435	187	60	24	7
2011년	852	285	127	42	24
2012년	1,618	699	268	92	62
2013년	2,779	1,274	542	217	171
2014년	3,725	2,062	1,124	536	461
2015년	4,825	2,984	1,529	1,138	1,363
2016년	5,087	3,285	1,869	1,304	2,180
2017년	5,812	3,662	2,298	1,583	3,507
2018년 	7,576	4,949	3,261	1,982	5,981

〈부표 36〉 연도별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759,829	53,346	384,670	149,101	72,805	39,380
1999년	3	-	3	-	-	_
2000년	638	-	586	47	4	1
2001년	3,836	-	2,988	673	162	11
2002년	5,046	-	3,368	1,279	307	81
2003년	6,631	9	4,013	1,705	594	219
2004년	11,430	7	7,145	2,472	1,152	442
2005년	15,091	25	9,416	3,157	1,466	589
2006년	15,966	1,205	8,458	3,463	1,596	684
2007년	11,949	425	6,572	2,790	1,184	543
2008년	12,775	53	7,145	3,066	1,370	637
2009년	20,795	415	11,157	4,994	2,226	1,094
2010년	23,366	413	12,864	5,296	2,529	1,158
2011년	27,462	2,138	13,143	6,117	3,055	1,511
2012년	63,566	18,260	24,616	10,451	5,013	2,579
2013년	66,780	8,777	30,536	13,171	6,631	3,576
2014년	76,122	7,987	37,252	14,033	7,071	4,076
2015년	80,099	6,303	37,934	15,161	7,863	4,809
2016년	92,727	6,241	46,875	17,283	8,585	4,871
2017년	100,774	216	54,118	20,184	9,987	5,442
2018년	124,773	872	66,481	23,759	12,010	7,057

^{*} 위 통계자료는 퇴직공제금 추가지급자 수가 포함되었습니다.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합계	22,997	14,053	9,092	5,605	8,780
1999년	-	-	-	-	-
2000년	-	-	-	-	-
2001년	2	-	-	-	_
2002년	10	1	-	-	-
2003년	69	20	2	-	_
2004년	122	62	24	4	_
2005년	266	103	47	17	5
2006년	304	162	55	25	14
2007년	234	117	63	13	8
2008년	290	117	58	27	12
2009년	492	236	101	52	28
2010년	588	273	136	67	42
2011년	793	389	168	83	65
2012년	1,332	659	345	174	137
2013년	1,897	1,057	581	266	288
2014년	2,368	1,483	867	467	518
2015년	3,048	1,975	1,270	773	963
2016년	3,180	2,017	1,451	894	1,330
2017년	3,439	2,402	1,722	1,177	2,087
2018년	4,563	2,980	2,202	1,566	3,283

〈부표 37〉 연도별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성	(단위: 명) 여성
합계	759,829	676,392	83,437
1999년	3	3	
2000년	638	530	108
2001년	3,836	2,945	891
2002년	5,046	3,448	1,598
2003년	6,631	4,479	2,152
2004년	11,430	7,758	3,672
2005년	15,091	10,715	4,376
2006년	15,966	11,548	4,418
2007년	11,949	9,157	2,792
2008년	12,775	10,401	2,374
2009년	20,795	17,349	3,446
2010년	23,366	20,199	3,167
2011년	27,462	24,004	3,458
2012년	63,566	57,461	6,105
2013년	66,780	61,341	5,439
2014년	76,122	69,372	6,750
2015년	80,099	73,674	6,425
2016년	92,727	85,341	7,386
2017년	100,774	92,269	8,505
2018년	124,773	114,398	10,375

^{*} 위 통계자료는 퇴직공제금 추가지급자 수가 포함되었습니다.

고령

320,751

85

부상질병

98,149

1

30

사망

12,651

4

상용근로자

21,403

1

38

자영업

19

타업종취업

29,491 112,379 165,005

118

구분

합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759,829

3

638

1

344

기타

^{*} 위 통계자료는 퇴직공제금 추가지급자 수가 포함되었습니다.

〈부표 39〉 연령별 시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759,829	148,422	47,635	151,449	43,410	38,991	33,024	63,220	10,674
19세 이하	190	16	10	33	11	12	12	14	1
20~24세	4,840	535	350	992	291	281	275	405	63
25~29세	18,567	2,535	1,632	3,678	987	1,037	942	1,380	328
30~34세	30,607	4,977	2,092	6,409	1,601	1,573	1,381	2,280	438
35~39세	44,661	7,804	2,840	9,461	2,505	2,349	1,994	3,358	632
40~44세	61,718	11,854	3,878	13,043	3,331	3,139	2,651	4,649	794
45~49세	77,458	16,802	4,974	16,780	4,054	3,615	3,133	5,620	954
50~54세	86,636	19,742	5,593	18,672	4,605	3,757	3,269	6,692	1,005
55~59세	86,737	18,758	5,498	18,269	4,796	3,879	3,538	7,193	1,083
60~64세	224,797	43,194	14,003	43,805	13,526	12,064	9,944	20,086	3,570
65세	26,688	5,344	1,540	4,745	1,570	1,425	1,137	2,545	405
66~69세	62,818	11,573	3,452	10,602	3,941	3,502	2,963	5,873	952
70세 이상	34,112	5,288	1,773	4,960	2,192	2,358	1,785	3,125	449

^{*} 위 통계자료는 퇴직공제금 추가지급자 수가 포함되었습니다.

구분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단위: 명) 기타
합계	26,912	33,426	23,136	26,072	36,469	34,253	26,858	5,671	10,207
19세 이하	9	11	11	8	16	12	12	1	1
20~24세	197	238	168	219	256	263	207	35	65
25~29세	675	950	508	750	980	883	568	183	551
30~34세	1,124	1,392	858	1,364	1,729	1,408	948	241	792
35~39세	1,670	2,134	1,287	1,943	2,208	1,980	1,377	356	763
40~44세	2,222	2,887	1,869	2,308	2,849	2,777	1,999	464	1,004
45~49세	2,593	3,520	2,184	2,372	3,250	3,175	2,678	530	1,224
50~54세	3,033	3,948	2,276	2,528	3,401	3,329	2,915	552	1,319
55~59세	3,205	3,861	2,323	2,709	3,573	3,519	2,926	468	1,139
60~64세	7,776	9,339	7,100	7,177	10,910	10,072	8,241	1,697	2,293
65세	925	1,071	889	943	1,358	1,399	933	188	271
66~69세	2,283	2,504	2,102	2,391	3,680	3,467	2,456	531	546
70세 이상	1,200	1,571	1,561	1,360	2,259	1,969	1,598	425	239

〈부표 40〉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합계	759,829	177,498	343,160	121,079	54,379	28,012	15,628	8,984	5,095
19세 이하	190	108	73	8	1	-	-	-	_
20~24세	4,840	1,704	2,694	378	54	9	1	-	-
25~29세	18,567	4,924	10,291	2,481	652	157	48	10	3
30~34세	30,607	7,755	16,043	4,478	1,504	525	183	79	26
35~39세	44,661	10,926	21,671	7,220	2,761	1,107	484	268	127
40~44세	61,718	14,297	28,128	10,712	4,388	2,080	1,056	511	263
45~49세	77,458	16,648	34,157	13,793	6,183	3,035	1,721	920	482
50~54세	86,636	18,164	37,517	15,687	7,124	3,738	1,978	1,108	599
55~59세	86,737	18,779	36,913	15,192	7,094	3,859	2,093	1,257	743
60~64세	224,797	48,679	97,987	34,831	17,789	10,159	6,355	3,872	2,280
65세	26,688	6,921	12,256	3,845	1,782	886	408	270	148
66~69세	62,818	17,647	29,364	8,436	3,459	1,736	913	522	320
70세 이상	34,112	10,946	16,066	4,018	1,588	721	388	167	104

^{*} 위 통계자료는 퇴직공제금 추가지급자 수가 포함되었습니다.

구분	9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1,100만 원 미만	1,200만 원 미만	1,300만 원 미만	1,400만 원 미만	1,500만 원 미만	(단위: 명) 1,600만 원 미만
합계	2,995	1,659	821	346	114	41	15	3
19세 이하	_	-	-	-	-	-	_	-
20~24세	-	-	-	-	-	-	-	-
25~29세	1	-	-	-	-	-	-	-
30~34세	10	4	-	-	-	-	-	-
35~39세	60	22	10	4	-	1	-	-
40~44세	134	87	39	17	6	-	-	-
45~49세	250	154	68	35	9	2	1	-
50~54세	366	207	94	37	10	5	1	1
55~59세	409	224	114	36	18	5	1	-
60~64세	1,407	770	395	183	54	26	9	1
65세	81	54	28	4	5	-	-	-
66~69세	225	106	52	22	11	2	2	1
70세 이상	52	31	21	8	1	-	1	_

2018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발 행 일 2019년 6월

발 행 인 송인회

총 기 획 건설근로자공제회 기획관리팀

발 행 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14층

전 화 1666-1122

인 쇄 처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함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